

생활·취업 가이드북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분들에게~



출입국 체류관리청 감수

제 7 판

인사말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24년 6월 말 현재 약 358만 명이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체류 외국인수는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 일본인과 외국인이 더불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본인이 외국인에 대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이 일본의 규범과 관습 등에 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 및 취업 가이드북”은 2018년 12월에 ‘외국 인재의 수용·공생에 관한 관계각료회의’에서 ‘외국 인재의 수용·공생을 위한 종합적 대응책’에 따라 각 부성청이 하나가 되어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생활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정보를 정리하여 게재한 것입니다.

이 가이드북은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에 개설한 ‘외국인 생활지원 포털사이트’에서 다언어판(18개 언어)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계 부성청의 협력하에 2024년 10월 1일 시점에서의 제도의 신설 및 개폐 등을 바탕으로 제6판을 갱신한 제7판을 작성하여 ‘외국인 생활지원 포털사이트’에 게재하였습니다.

외국인 여러분들이 이 가이드북에 게재된 정보를 활용함으로 본 가이드북이 일본에서의 원활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025년 3월

출입국재류관리청

본 가이드북은 부성청, 도쿄외국어대학교의 협력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부성청 일람

내각관방	총무성	경제산업성
내각부	법무성	국토교통성
경찰청	외무성	환경성
금융청	재무성	
소비자청	문부과학성	
어린이가정청	후생노동성	
디지털청	농림수산성	

차 례

인사말

제 1 장

입국 체류수속

1	체류카드.....	1
1-1	체류카드 발급.....	2
1-2	거주지신고 (전입신고)	2
1-3	체류카드의 분실.....	2
1-4	체류카드의 반납.....	3
2	체류자격에 관한 신고 절차	4
2-1	체류기간 연장 (간신)	4
2-2	체류자격의 변경 (일본에서의 체류목적을 변경할 경우)	4
2-3	영주허가.....	5
2-4	체류자격의 취득 (자녀가 출생했을 경우)	5
2-5	자격외 활동허가.....	6
2-6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대한 신고 절차	6
	(1) 활동기관에 관한 신고 절차	
	(2) 계약기관에 관한 신고 절차	
	(3) 배우자에 관한 신고 절차	
3	재입국허가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으로 일본에 다시 입국한다)	8
	(1) 임시재입국허가 (1 년 이내에 일본에 돌아올 경우)	
	(2) 재입국허가 (1 년 이상 일본을 떠날 경우)	
4	난민등 인정 절차	9
4-1	‘난민’ 이란.....	9
4-2	‘보완적 보호대상자’ 란.....	9
4-3	난민등 인정 신청에 대하여	9
4-4	심사청구.....	10
5	강제퇴거 절차 등	10
5-1	강제퇴거의 주된 사유.....	10
5-2	강제퇴거가 됐을 경우.....	10
5-3	출국명령제도	10
5-4	체류특별허가.....	11
6	출입국과 체류 등의 신고 절차에 관한 문의처	12

7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부터의 정보 전달	13
7-1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식 홈페이지.....	13
7-2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식 SNS 등.....	13
7-3	외국인 생활 지원 포털 사이트	14
7-4	생활 오리엔테이션 동영상.....	14

제 2 장 시구정촌에서의 신고 절차

1	필요한 신고 수속	15
1-1	주소 (거주지) 의 신고 절차.....	15
(1)	신규 상록허가를 받고 일본에 입국한 경우	
(2)	이사를 할 경우	
1-2	혼인신고.....	16
(1)	혼인신고시 구비서류	
(2)	본국에서의 유효성	
1-3	이혼신고.....	17
(1)	본국에서의 유효성	
(2)	마음대로 이혼신고서가 제출되는 것이 우려되는 경우	
1-4	사망신고.....	17
(1)	사망신고에 필요한 서류	
(2)	체류카드의 반납	
1-5	인감등록.....	18
(1)	인감등록의 절차	
(2)	인감등록증명서	
2	개인 번호 제도	19
2-1	개인 번호 제도란	19
2-2	개인 번호 카드	19
(1)	기재 사항	
(2)	언제 사용하는가	
(3)	신청 방법	
(4)	수령 방법	
2-3	개인 번호 카드 사용상의 주의점	21
2-4	기타	21

제 3 장 고용 · 노동

1	근무 전 기초지식	22
1-1	체류자격.....	22

1-2	일을 찾는 방법	22
(1)	헬로워크	
(2)	소개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1-3	근무 형태	23
(1)	파견근로자(파견사원)	
(2)	계약사원(유기간(기간약정)근로계약직사원)	
(3)	파트타임 근로자	
(4)	업무위탁(하청)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사람	
1-4	근로계약.....	25
(1)	'근로자'의 범위	
(2)	근로조건의 명시	
1-5	임금	26
(1)	최저임금이란	
(2)	최저임금의 특징	
(3)	휴업수당	
2	근무 규정	27
2-1	임금의 지급방법.....	27
2-2	근로시간·휴식·휴일	28
(1)	근로시간	
(2)	휴식	
(3)	휴일	
(4)	파견사원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의무	
2-3	시간외근로휴일근로	29
(1)	시간외근로휴일근로	
(2)	할증임금	
2-4	모성(임산부) 건강관리·산전산후휴직·육아휴직·간병휴직.....	30
(1)	임신한 경우	
(2)	산전산후휴직	
(3)	육아휴직	
(4)	간병휴직	
2-5	퇴직·해고 등.....	32
(1)	퇴직	
(2)	해고	
(3)	회사의 도산	
(4)	고용보험(기본수당)	
(5)	구직활동	

3	건강과 안전.....	36
3-1	안전 · 괘적한 직장환경	36
(1)	노동안전위생법의 내용	
(2)	건강검진 등	
(3)	의사의 면접지도	
3-2	업무중 부상 · 병 등의 보상 (노재보험 (산재보험))	37
(1)	산재보험 적용 절차	
(2)	그 외의 유의사항	
3-3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	38
(1)	구직시	
(2)	입사 후	
3-4	허래스먼트 (직장내 괴롭힘) 방지조치	38
3-5	외국인 고용관리 지침.....	39
4	사회보험 · 노동보험	40
4-1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40
4-2	국민연금후생연금보험	40
4-3	간병 (개호) 보험	40
4-4	고용보험.....	40
(1)	적용대상	
(2)	보험료 부담	
4-5	산재 (노재) 보험	41

제 4 장

출산 · 육아

1	임신의 신고 절차	42
1-1	임신의 신고와 모자건강수첩의 발급 등.....	42
1-2	임부건강검진.....	42
1-3	보건사 · 조산사 등에 의한 방문 지도	43
1-4	부모 학교 (엄마 학교 · 아빠 학교).....	43
2	출산 후 절차	44
2-1	출생신고서.....	44
(1)	출생신고에 필요한 것	
(2)	기타 수속	
2-2	출생한 아이의 본국으로의 신고.....	44
3	출산비용과 각종 수당.....	45
3-1	출산육아일시금	45
3-2	출산수당금	45

3-3 육아휴업급부금 (육아휴직급여).....	46
(1) 육아휴업급부금	
(2) 출생시육아휴업급부금	
3-4 아동수당.....	47
(1) 수급할 수 있는 사람	
(2) 수급방법	
(3) 수급가능 금액	
(4) 수급시기	
4 육아.....	48
4-1 산후 케어 사업	48
4-2 영유아 건강검진.....	48
4-3 예방접종.....	49
4-4 어린이의 의료비.....	49
4-5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설	49
(1) 보육소 (어린이집)	
(2) 유치원	
(3) 인정 어린이원	
4-6 방과후 아동 클럽 (학동보육)	50
4-7 패밀리 서포트 센터	50
5 임신, 출산 및 육아 관련 상담 창구.....	51
5-1 어린이 가정센터 등	51
5-2 지역 육아 지원 센터	51

제 5 장 교육

1 일본의 교육제도.....	52
1-1 초등학교 · 중학교	53
1-2 고등학교.....	53
1-3 외국인 학교	53
1-4 야간 중학	54
1-5 중학교 졸업정도 인정시험 (중학교 검정고시)	54
1-6 고등학교 졸업정도 인정시험 (고등학교 검정고시)	54
1-7 고등교육기관 (대학 등)	55
1-8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시험	56
2 교육비의 경제적 지원.....	57
2-1 취학 지원	57
2-2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	57

2-3 고등학생 등 장학급부금.....	58
2-4 고등교육 단계의 장학금.....	58
3 일본어에 대하여.....	59
3-1 일본어 학습의 개요	59
3-2 일본어 학습 기준	59
3-3 일본어 학습 장소	60
(1) 일본어 학교	
(2) 지역 일본어 교실	
(3) 통신 · 온라인교육	
3-4 일본어 학습 웹사이트 ‘이어지고 넓어지는 일본어 생활’ (통칭 : 쓰나히로)	61
3-5 일본어 교육 참조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일본어 능력 자기 평가 도구 ‘일본어 체크 !’에 대해	62

제 6 장 의료

1 의료기관.....	63
1-1 의료기관의 종류.....	63
1-2 의료기관 찾기.....	64
2 의료보험.....	65
2-1 건강보험.....	65
(1) 가입요건	
(2) 보험료	
(3) 수급내용	
2-2 국민건강보험.....	67
(1) 가입요건	
(2) 가입 및 탈퇴 수속	
(3) 보험료	
(4) 수급내용	
2-3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69
(1) 가입요건	
(2) 가입 및 탈퇴 수속	
(3) 보험료	
(4) 수급내용	
3 약	71
3-1 약국	71
3-2 드럭스토어.....	71

제 7 장**의료**

1	연금.....	72
1-1	국민연금.....	73
(1)	피보험자(가입자) 및 가입수속	
(2)	보험료	
(3)	급부	
1-2	후생연금보험.....	75
(1)	피보험자(가입자)	
(2)	보험료	
(3)	보험 급부	
1-3	탈퇴 일시금	78
2	간병(개호)보험	80
2-1	가입대상자.....	80
2-2	보험료.....	80
2-3	간병서비스의 이용.....	80
3	아동복지.....	81
3-1	아동수당.....	81
3-2	아동부양수당.....	81
3-3	특별아동부양수당.....	82
3-4	장애인아복지수당.....	82
4	장애인복지.....	83
4-1	수첩	83
4-2	장애인·장애인아에 대한 행정 서비스.....	83
5	생활보호.....	84
5-1	생활보호 수급 요건 등	84
(1)	자산의 활용	
(2)	능력의 활용	
(3)	기타 급여 등의 활용	
(4)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	
5-2	보호의 종류와 내용	85
6	생활곤란자 지원지원제도	86

제 8 장**세금**

1	소득세.....	87
---	----------	----

1-1	납세의무자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	88
	(1) 거주자	
	(2) 비영주자	
	(3) 비거주자	
1-2	소득세 확정신고와 납세.....	89
	(1) 확정신고가 필요한 사람	
	(2) 확정신고를 하면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람	
	(3) 확정신고 및 납세 기한	
	(4) 일본에서 출국하는 경우	
1-3	주된 소득공제.....	90
	(1) 친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있는 경우	
	(3)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4) 생명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	
	(5)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	
1-4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91
1-5	조세조약에 따른 특례.....	91
2	주민세.....	92
2-1	주민세란.....	92
2-2	주민세의 납부.....	92
2-3	기타	92
3	소비세.....	93
4	자동차 소유자가 납부하는 세금.....	93
4-1	자동차세 / 경자동차세	93
	(1) 자동차세 / 경자동차세 환경성능할	
	(2) 자동차세 / 경자동차세종별할	
4-2	자동차 중량세.....	93
5	고정자산세.....	94
6	세금에 관한 문의처	94
6-1	국세에 관한 문의	94
	(1) 전화상담센터	
	(2) 택스앤서 (tax answer)(자주 있는 세금에 대한 질문)	
	(3) 국세청 홈페이지의 안내	
6-2	지방세에 관한 문의	95

1	교통규칙.....	96
1-1	보행시 유의할 점	96
(1)	통행시	
(2)	횡단 방법	
(3)	야간에 도로를 걸을 경우	
1-2	자전거를 탈 때의 유의점	97
(1)	자전거의 통행 규칙 ‘자전거 안전이용 5 대 규칙’ 의 준수	
(2)	교차로 통행법	
1-3	특정 소형 원동기 자전거 (전동 스쿠터 / 킥보드 등) 를 운전하는 경우....	99
1-4	자동차 (오토바이를 포함) 를 운전할 경우	100
2	운전면허.....	101
2-1	일본의 운전면허 취득.....	101
2-2	일본의 운전면허증 갱신 등	101
2-3	운전면허 점수제도.....	102
3	자동차 (오토바이 포함) 의 보유	102
3-1	자동차의 등록.....	102
(1)	등록신청이 필요할 때와 등록신청 명의	
(2)	등록신청을 받는 장소와 문의처	
3-2	차고지증명	103
3-3	자동차 (일부의 오토바이를 포함) 검사	103
3-4	자동차보험	104
(1)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공제)	
(2)	임의보험 (공제)	
4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대응.....	106
4-1	차량의 운전을 정지	106
4-2	구급 · 경찰에 통보.....	106
4-3	의사의 진단	106
4-4	교통사고 증명서의 신청.....	106

1	긴급시의 전화.....	107
1-1	응급환자 (질병 부상), 화재 등 (119 번)	107
1-2	교통사고 · 범죄 피해 등 (110 번)	108

2	재해.....	109
2-1	태풍과 집중호우.....	109
	(1) 하천의 범람	
	(2) 토사재해	
2-2	지진	110
2-3	지진해일 (쓰나미)	112
2-4	화산 분화	113
3	대피 (피난).....	114
3-1	피난장소.....	114
3-2	피난정보.....	114
3-3	대피방법.....	116
3-4	재해 발생 시 도움이 되는 기상정보의 수집	118

제 11 장 주거

1	일본의 주거에 대하여.....	120
1-1	소유 주택	120
1-2	공영 주택	120
1-3	UR 임대주택	120
1-4	민간 임대주택.....	120
2	임주에 관하여.....	121
2-1	공영 주택	121
2-2	UR 임대주택	121
2-3	민간 임대주택.....	121

제 12 장 일상생활 속의 규칙 · 습관

1	생활의 규칙.....	124
1-1	쓰레기.....	124
	(1) 쓰레기 배출시 기본 규칙	
	(2) 불법 무단 투기 등 (위법적인 쓰레기 배출)	
1-2	소음	126
1-3	화장실.....	126
1-4	휴대전화의 사용.....	126
1-5	전철이나 버스 안	126
1-6	온천과 대중 목욕탕	127
1-7	금지를 알리는 표지	127

2	감염증 예방.....	128
2-1	손 씻기	128
2-2	기침 에티켓	129
2-3	습도	129
2-4	휴양과 영양 섭취	129
2-5	외출	129
3	생활에 필요한 사항	130
3-1	지역 생활	130
	(1) 커뮤니티 단체 (자치회 · 마을 자치회)	
	(2) 이웃간 주민 교류	
3-2	방범	130
3-3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131
	(1) 전기	
	(2) 가스	
	(3) 수도	
3-4	휴대전화.....	133
	(1) 휴대전화의 계약	
	(2) 계약과 이용시 주의점	
3-5	은행계좌.....	134
	(1) 은행계좌 개설하기	
	(2) 주소나 체류기간이 변경되면 즉시 은행에 신고하기	
	(3) 사용하지 않는 은행계좌를 해지하기	
	(4) 불법 은행을 사용하지 않는다	
	(5) 기타	
3-6	우체국.....	136
4	대중교통.....	137
4-1	IC 카드	137
	(1) 기본적인 기능	
	(2) 기명카드	
	(3) 무기명카드	
	(4) 예치금 (보증금)	
4-2	철도	138
	(1) 철도의 이용	
	(2) 승차권의 종류	
	(3) 그 밖의 표	
4-3	버스	139
	(1) 장거리를 이동하는 버스 (장거리버스)	
	(2) 살고 있는 지역의 정해진 경로를 이동하는 버스 (노선버스)	



1

체류카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신분증입니다. 소지자의 인적사항과 체류기간, 체류자격 등이 적혀 있습니다.



- 16 세 이상은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 시구정촌에서의 각종 수속, 신청, 계약 등을 할 때 신분증으로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 발급대상자

체류카드는 3 개월 이상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체류카드 발급대상자를 ‘중장기체류자’ 라 합니다).

[체류카드 발급이 되지 않는 6 가지 경우]

- ① 체류기간이 ‘3 개월’ 이하인 자
- ② 체류자격이 ‘단기체재’ 인 자
- ③ 체류자격이 ‘외교’ 또는 ‘공용’ 인 자
- ④ 체류자격이 이하의 ‘특정활동’ 인 사람으로 ,
 - 대만일본관계협회의 일본 사무소(台北(타이페이)주일경 제문화대표처 등)의 직원 또는 그 가족
 - 주일팔레스티나총대표부의 직원 또는 그 가족
 - 디지털 노마드(국제적인 원격 근무 등을 목적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자녀
- ⑤ 특별영주권자
- ⑥ 체류자격이 없는 자

1-1 → 체류카드 발급

체류카드가 발급되는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신규 상륙허가를 받고 나리타공항, 하네다공항, 주부공항, 간사이공항, 신치토세공항, 하로시마공항, 후쿠오카공항으로 입국했을 때
→ 공항에서 체류카드를 발급받습니다.
- ② 신규 상륙허가를 받고 ① 이외의 공항이나 항구로 입국했을 때
→ 일본 입국 후 거주지 시구정촌에 ‘거주지 등록 (전입신고) 서’를 제출합니다. 그 후에 체류카드가 자택으로 우송됩니다.
- ③ 체류기간 연장 (갱신) 허가를 받았을 때
→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체류기간 연장신청 (2-1 참조) 을 한 후 허가를 받으면 새로운 체류 카드가 발급됩니다.
- ④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을 때
→ 일본에서의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신청 (2-2 참조) 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허가를 받으면 새로운 체류카드가 발급됩니다.
- ⑤ 체류자격 취득허가를 받았을 때
→ 일본에서 출생한 자녀가 일본 국적 없이 생후 60 일을 초과하여 계속 일본에 체재하고 싶다면, 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체류자격취득신청 (2-4 참조) 을 하여 허가받으면 체류카드가 발급됩니다.

1-2 → 거주지신고(전입신고)

체류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거주지(주소)가 확정된 후 14 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시구정촌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시 체류카드(1-1 의 ①의 경우) 또는 여권(1-1 의 ②의 경우)이 필요하니 잊지 마시고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제 2 장 1-1 거주지 신고를 참조

1-3 → 체류카드의 분실

체류카드를 분실한 것을 안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체류카드 재발급신청을 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여권
- 사진 1 장(세로 4cm×가로 3cm, 6 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16 세 미만은 필요 없음)

- 체류카드 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유실물신고증명서, 도난신고증명서, 재해증명서 등)
- 체류카드 재발급신청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nyuukokukanri10_00010.html



1-4 체류카드의 반납

다음과 같은 경우 체류카드를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반납해야 합니다.

단순출국

(일본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출국할 때)

- 출국시 공항이나 항구에서 입국심사관에게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이나 동거인이 사망했을 때
- (임시)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임시)재입국허가 기간내에 재입국(하지) 않았을 때
- 일본국적을 취득했을 때

다음 방법 중 하나를 택해 14 일 이내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가까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가지고 간다.
-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한다.

보내는 곳 :〒135-0064 東京都江東区青海2-7-11

東京港湾合同庁舎9階

東京出入国在留管理局オンライン審査部門おだいば分室

(봉투겉면에 ‘在留カード返納 (체류카드 반납)’ 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nyuukokukanri10_00020.html



2

체류자격에 관한 신고 절차

2-1

체류기간 연장(갱신)

현재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일본에 체류하려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여권
- 체류카드(발급받았을 경우)
- 사진 1 장(세로 4cm×가로 3cm, 6 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16 세 미만은 필요 없음)
- 체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및 활동 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16-3.html>



2-2

체류자격의 변경(일본에서의 체류목적을 변경할 경우)

현재 체류목적을 변경하여 체류하려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여권
- 체류카드(발급받았을 경우)
- 사진 1 장(세로 4cm×가로 3cm, 6 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16 세 미만은 필요 없음)
- 체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및 활동 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16-2.html>



○체류자격에서 찾기○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tatus/index.html>



2-3 영주허가

일본에서의 영주를 희망하는 자는 영주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영주허가를 받으면 일본에서의 활동이나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체류기간 연장신청이나 체류자격 변경수속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여권
- 체류카드
- 사진 1 장(세로 4cm×가로 3cm, 6 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16 세 미만은 필요 없음)
- 영주허가 신청서
- 기타 필요한 서류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16-4.html>



2-4 체류자격의 취득(자녀가 출생했을 경우)

일본에서 출생한 자녀가 일본국적이 없는 상태로 생후 60 일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일본에 체류하려면 출생 후 30 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서 체류자격 취득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아래에서 설명하는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므로 먼저 시구정촌에 출생신고를 끝마친 후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이 신청 (체류자격 취득신청) 을 하십시오.

제 4 장 2 2-1 출생신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여권(발급받은 경우)
- 체류자격 취득허가 신청서
-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증명서(시구정촌에서 발급합니다)등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 활동 예정을 증명하는 자료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16-10.html>
- 주민표 사본 또는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
(시구정촌에서 발급합니다)



2-5 자격외 활동허가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유학, 가족체재 등)이나 취업범위가 정해진 체류자격의 범위 외의 일로 수입 또는 보수가 발생하는 활동을 하려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신청하여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본인의 체류자격으로 가능한 취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 3장 1 1-1 체류자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여권
- 체류카드
- 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서
- 수입과 보수를 얻는 활동임을 증명하는 자료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16-8.html>



2-6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대한 신고 절차

체류카드 소지자 중 다음과 같은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소속기관 등에 변경이 있을 때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1) 활동기관에 관한 신고 절차

대상이 되는 체류자격	교수, 고도전문직 1 호 ⑧(하), 고도전문직 2 호(2 호 ⑧(하)에 제시한 활동에 종사할 경우), 경영·관리, 법률·회계업무, 의료, 교육, 기업내 전근, 기능실습, 유학, 연수
대상이 되는 신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기관의 명칭이 변경됐을 때 • 활동기관의 소재지가 변경됐을 때 • 활동기관이 없어졌을 때 • 활동기관에서 이탈했을 때 • 활동기관에서 이적했을 때
신고서류 제출기간	14 일 이내에 신고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nyuukokukanri10_00014.html



(2) 계약기관에 관한 신고 절차

대상이 되는 체류자격	고도전문직 1 호 1(이), 고도전문직 1 호 2(로), 고도전문직 2 호 (2 호 1(이) 또는 2(로)에 제시한 활동에 종사할 경우), 연구,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 간병, 흥행(일본의 공적 및 사적 기관과 계약한 활동에 종사할 경우에 한정됨), 기능, 특정기능
대상이 되는 신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기관의 명칭이 변경됐을 때 • 계약기관의 소재지가 변경됐을 때 • 계약기관이 없어졌을 때 • 계약기관과의 계약이 종료됐을 때 • 계약기관과 새로이 계약을 맺었을 때
신고서류 제출기간	14 일 이내에 신고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nyuukokukanri10_00015.html



(3) 배우자에 관한 신고 절차

대상이 되는 체류자격	'가족체재', '일본인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중에서 배우자로서의 신분을 갖춘 경우
대상이 되는 신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와 이혼 • 배우자와 사별
신고서류 제출기간	14 일 이내에 신고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nyuukokukanri10_00016.html



이 신고들은 창구에 지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 외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전자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j.go.jp/isa/publications/materials/i-ens_index.html



원 포인트:

고도외국인재에 대한 우대제도

일본의 경제성장 등에 공헌이 기대되는 고도의 능력과 자질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일본에서의 활동 내용이나 체류기간에 우대조치가 주어집니다.

활동의 특성에 따라 ‘학력’, ‘경력’, ‘연수입’ 등 각 항목마다 포인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신청하여 포인트 합계가 70 점 이상이 되어 ‘고도외국인재’로 인정된 사람은 아래와 같은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복합적인 체류활동의 허용
- 최장 체류기간인 ‘5년’의 부여
- 영주허가요건 중 일본에서의 체류력에 관한 요건의 완화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j.go.jp/isa/publications/materials/newimmiact_3_index.html



2023년 4월부터 ‘특별고도인재 제도’(J-Skip)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자가 특정 학력, 경력 요건을 충족하고 일정 수준의 연수입을 초과하면, ‘특별고도인재’로 인정되어 추가적인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된 포인트제 기반의 고도외국인재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j.go.jp/isa/publications/materials/nyuukokukanri01_00009.html



3

재입국허가(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으로 일본에 다시 입국 한다)

일본에서 출국할 때 재입국 제도를 이용하면, 인정된 기한 안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 · 체류기간으로 일본에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1) 임시재입국허가(1년 이내에 일본에 돌아올 경우)

체류카드 소유자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본을 출국하여 1년 이내(체류기한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체류기한까지)에 일본에 돌아올 때에는 출국 전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서 재입국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국 시 재입국용 ED 카드를 기재한 후, 여권 및 체류 카드와 함께 입국 심사관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재입국허가(1년 이상 일본을 떠날 경우)

사전에 가까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신고해서 재입국허가를 취득하면 현재의 체류자격 · 체류기간으로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최장 5년. 체류기한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체류기한까지). 출국 시 재입국용 ED 카드를 기재한 후 여권과 함께 입국 심사관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16-5.html>



4

난민등 인정 절차

일본은 난민조약 등(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되어 있어 이 조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난민이나 출입국관리법에서 정의된 보완적 보호 대상자를 인정하며 난민등(난민 또는 보완적 보호대상자)의 신속하고 확실한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1

‘난민’ 이란

난민조약 제 1 조 또는 난민의정서 제 1 조의 규정에 따라 난민조약이 적용되는 난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히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 밖에 있는 사람으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또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 등

4-2

‘보완적 보호대상자’ 란

보완적 보호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난민(4-1 참조) 이외의 사람으로, 난민의 요건 중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유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사실 또는 정치적 견해'라는 난민 조약에 규정된 5 가지 사유 이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4-3

난민등 인정 신청에 대하여

- 난민등 인정 신청이란 본국에서 도망쳐 온 난민(4-1 참조) 등 이 일본에 보호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신청은 일본에 있는 외국인이 할 수 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에게는 난민인정증명서가 발급되고 보완적 보호 대상자로 인정된 외국인에게는 완전 보호 대상자 인정 증명서가 발급되며, 모든 경우에 원칙적으로 ‘정주자’ 등의 체류자격이 허가 됩니다.
-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은 신청에 근거하여 여권 대신 도항문서로서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난민 또는 보완적 보호대상자로 인정된 외국인과 그 가족은 일본어교육과 생활 가이던스, 직업소개 등 ‘정 주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16-6.html>



4-4 심사청구

난민등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그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법무대신에게 이의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대신이 심사청구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법률과 국제정세 등에 식견이 있는 난민심사참여원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청구에 대해서

https://www.moj.go.jp/isa/refugee/procedures/nanmin_00001.html#midashi04



5 강제퇴거 절차 등

5-1 강제퇴거의 주된 사유

- 체류기간이 경과했는데 일본에 체류하는 것(하루라도 경과하면 불법체류가 되고 강제퇴거 절차 대상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은 채 본인의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을 하면서 수입 또는 보수를 얻고 있는 것
-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5-2 강제퇴거가 됐을 경우

강제퇴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년 또는 10년간 일본에 입국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본에 영구적으로 입국하지 못합니다.

또한, 퇴거 강제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자비 출국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에 따라 상륙 거부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5-3 출국명령제도

불법체류 중 아래의 모든 요건을 채울 경우에는 수용되지 않고 간단한 절차로 출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국명령제도에 의해 출국할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일본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출국명령제도의 요건

출국명령제도가 적용되려면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가 또는 나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

가 위반조사 개시전에 일본에서 출국할 의사를 가지고 본인 스스로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출두한 것

나 위반 조사 시작 후,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인정 통지서를 받기 전에 입국 심사관 또는 입국 경비관에게 신속히 출국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한 것

(2) 불법체류 외에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3) 일본에서 절도 등의 일정한 범죄로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 적이 없을 것

(4) 과거에 강제퇴거된 적이 없을 것 또는 출국명령을 받아 출국한 적이 없을 것

(5) 일본에서 지체없이 출국하는 것이 확실할 것



5-4 체류특별허가

강제 철거 대상이 되었어도 일본에서 생활해 온 내용(품행), 가족상황등을 고려하여 법무대신이 특별히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출입국과 체류 등의 신고 절차에 관한 문의처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

札幌(삿포로)출입국재류관리국	〒 060-0042 北海道札幌市中央区大通西 12 丁目 札幌(삿포로)제 3 합동청사	전화 0570-003259 (IP전화 · 해외에서: 011-211-5701)
仙台(센다이)출입국재류관리국	〒 983-0842 宮城県仙台市宮城野区五輪 1-3-20 仙台(센다이)제 2 법무합동청사	전화 0570-022259 (IP전화 · 해외에서: 022-256-7025)
東京(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 108-8255 東京都港区港南 5-5-30	전화 0570-034259 (IP전화 · 해외에서: 03-5796-7234)
東京(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요쓰야분청사	〒 160-0004 東京都新宿区四谷 1-6-1 四谷Tower 13 階 · 14 階 재류 조사 부문 소속기관 등에 관한 신고, 소속기관을 통한 신고 온라인 심사 부문 체류 온라인 신청 수속 정보 관리 부문 심사 기록 관리	전화 0570-011000 전화 03-5363-3032 전화 03-5363-3030 전화 03-5363-3039
成田(나리타)공항지국	〒 282-0004 千葉県成田市古込字古込 1-1 第 2 旅客Terminal bldg. 6 階	전화 0476-34-2222(대표) 전화 0476-34-2211
羽田(하네다)공항지국	〒 144-0041 東京都大田区羽田空港 2-6-4 羽田空港CIQ棟	전화 03-5708-3202(대표)
横浜(요코하마)지국	〒 236-0002 神奈川県横浜市金沢区鳥浜町 10-7	전화 0570-045259 (IP전화 · 해외에서: 045-769-1729)
名古屋(나고야)출입국재류관리국	〒 455-8601 愛知県名古屋市港区正保町 5-18	전화 0570-052259 (IP전화 · 해외에서: 052-217-8944)
中部(주부)공항지국	〒 479-0881 愛知県常滑市CENTRAIR 1-1CIQ棟 3 階	전화 0569-38-7410(대표)
大阪(오사카)출입국재류관리국	〒 559-0034 大阪府大阪市住之江区南港北 1-29-53	전화 0570-064259 (IP전화 · 해외에서: 06-4703-2050)
関西(간사이)공항지국	〒 549-0011 大阪府泉南郡田尻町泉州空港中 1	전화 072-455-1453(대표)
神戸(고베)지국	〒 650-0024 兵庫県神戸市中央区海岸通 29 神戸(고베) 지방합동청사	전화 078-391-6377(대표)
広島(히로시마)출입국재류관리국	〒 730-0012 広島県広島市中区上八丁堀 2-31 広島(히로시마) 법무종합청사내	전화 082-221-4411(대표)
高松(다카마쓰)출입국재류관리국	〒 760-0033 香川県高松市丸の内 1-1 高松(다카마쓰) 법무종합청사(총무과, 경비부문)	전화 087-822-5852(대표)
	〒 760-0011 香川県高松市浜ノ町 72-9 浜ノ町(하마노초) 분청사(심사부문)	전화 087-822-5851(대표)
福岡(후쿠오카)출입국재류관리국	〒 810-0073 福岡県福岡市中央区舞鶴 3-5-25 福岡(후쿠오카) 제 1 법무종합청사	전화 092-717-5420(대표)
那霸(나하)지국	〒 900-0022 沖縄県那霸市樋川 1-15-15 那霸(나하) 제 1 지방합동청사	전화 098-832-4185(대표)
東日本(히가시 니혼)입국관리센터	〒 300-1288 茨城県牛久市久野町 1766-1	전화 029-875-1291(대표)
大村(오무라)입국관리센터	〒 856-0817 長崎県大村市古賀島町 644-3	전화 0957-52-2121(대표)

외국인재류지원센터 (FRESC / 프레스크)

외국인재류지원센터	〒 160-0004 東京都新宿区四谷 1-6-1 四谷 Tower 13 階	전화 0570-011000 (IP 전화 · 해외에서: 03-5363-3013)
-----------	---	---

외국인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 등(외국인재류 종합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창구)

방문상담	상기의 각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 (동경 출입국 재류관리국 요쓰야 분청사, 각 공항지국 및 입국관리센터 제외.)
전화상담	전화 0570-013904 (IP 전화 · 해외에서 : 03-5796-7112)

7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부터의 정보 전달

7-1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식 홈페이지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재류수속 등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이외에도, 자동 번역을 통해 100 개 이상의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oj.go.jp/isa/index.html>

※ 2025년 4월 1일부터 체류 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가 개정됩니다.

https://www.moj.go.jp/isa/01_00518.html



7-2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식 SNS 등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각종 SNS 등을 개설하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안내나 재류외국인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X (예전 트위터) 계정

https://x.com/MOJ_IMMI

출입국재류관리청 Facebook 계정

<https://www.facebook.com/ImmigrationServicesAgency.MOJ/>

출입국재류관리청 인스타그램 계정

https://www.instagram.com/isa_japan/

메일 전달 서비스

<https://www.moj.go.jp/isa/publications/publications/mail-service.html>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 X(예전 트위터)계정에서는 창구 혼잡 상황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 계정 모음

https://www.moj.go.jp/isa/publications/publications/nyuukokukanri01_00184.html



7-3**외국인 생활 지원 포털 사이트**

일본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중요한 사항을 알려주는 웹사이트입니다.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정부 공지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생활 지원 포털 사이트

<https://www.moj.go.jp/isa/support/portal/index.html>

**7-4****생활 오리엔테이션 동영상**

일본에서 생활을 고려 중인 외국인이나 일본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더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일본의 생활 규칙 등을 소개하는 생활 오리엔테이션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생활상의 규칙, 직장, 세금 등 일본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와 규칙을 다국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활 오리엔테이션 동영상

https://www.moj.go.jp/isa/support/coexistence/04_00078.html



시구정촌에서의 신고 절차



1

필요한 신고 수속

1-1

주소(거주지)의 신고 절차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구정촌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가 필요한 사람

- 체류카드 소지자(중장기체류자)
- 특별영주자
- 일시적으로 신변보호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임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 출생 또는 일본국적상실에 따른 경과체재증인 사람

(1) 신규 상록허가를 받고 일본에 입국한 경우

- 거주지가 정해진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시구정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할 때는 체류카드(후일에 발급받는 사람은 여권)를 반드시 가져가십시오.
- 가족과 함께 생활할 경우에는 혼인증명서나 출생증명서 등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인 문서도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 후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입신고를 하면 체류카드에 등록하는 주소도 동시에 등록이 완료됩니다.

② 주민표가 작성됩니다.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이 기재됩니다.

- 거주상황 등을 증명할 때 필요로 하는 주민표 사본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료)

※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등을 하지 않고 체류 기한이 만료된 경우 등 체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주민표가 말소됩니다. 체류 자격 관련 절차를 잊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시구정촌에서 개인 번호를 알려줍니다.

※ 개인 번호: 일본에서의 사회보장, 세금, 재해대책 수속을 할 때 본인의 신분확인을 곧바로 할 수 있는 12 자리 번호

자세한 사항은 2 개인 번호 제도를 참조하십시오.

④ 개인 번호 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개인 번호 안내와 함께 송부되는 발급신청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이사를 할 경우

①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할 경우

- 이사 전 → 살고 있던 시구정촌에 전출신고서를 제출
- 이사 후 → 이사 후 14 일 이내에 새 주거지 관할 시구정촌에 전입신고서를 제출



② 동일한 시구정촌으로 이사할 경우

이사 후 14 일 이내에 관할 시구정촌에 전입신고서를 제출

③ 해외로 이주할 경우

이사하기 전에 현 거주지 관할 시구정촌에 전출신고서 제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c-gyousei/zairyu/english/move-in_move-out.html



1-2

혼인신고

일본에서 결혼을 할 경우

- 시구정촌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결혼하려는 당사자들에게 혼인의 요건이 갖춰졌다고 인정되면 혼인신고서가 받아들여져 혼인이 성립됩니다.



(1) 혼인신고시 구비서류

일본인

특별히 없음

※ 혼인신고서의 양식이나 제출 시 필요한 서류(본인 확인 서류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는 시구정촌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 혼인요건 구비증명서

※ 본국 주일대사관·(총)영사관에서 절차를 밟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주 1).

- 혼인요건 구비증명서 등 외국어로 작성된 문건 제출시 전부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주 2).

(주 1) 국가에 따라서는 이 증명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 2)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을 기입해야 합니다. 번역자는 본인이어야 됩니다.

(2) 본국에서의 유효성

일본에서 성립된 혼인은 일본에서는 유효하지만 그 혼인이 본국에서도 유효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성립된 혼인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주일대사관·(총)영사관에 문의하십시오.

1-3 이혼신고

일본에서 이혼할 경우

- 이혼하고자 하는 양자가 이혼에 동의한 경우에는 시구정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거주지나 국적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구정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을 진행합니다.

(1) 본국에서의 유효성

일본에서 성립된 이혼은 일본에서는 유효하지만 그 이혼이 본국에서도 유효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성립된 이혼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주일대사관·(총)영사관으로 문의하십시오.

(2) 마음대로 이혼신고서가 제출되는 것이 우려되는 경우

상대방(일본인)이 마음대로 이혼신고서를 시구정촌에 제출하는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일본인)의 본적지 또는 당신의 주소지 시구정촌에 가서 이혼신고서 불수리 신청서를 제출해 두면 이혼 성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4 사망신고

일본에서 사망했을 경우

- 친족이나 동거인 등이 사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서 제출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이 신고는 사망한 곳 또는 신고하는 사람의 거주지가 있는 시구정촌에 제출하십시오.

(1) 사망신고에 필요한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이 외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고하는 시구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체류카드의 반납

사망한 외국인의 체류카드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14 일 이내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가까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가지고 간다.
-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한다.

보내는 곳:〒 135-0064 東京都江東区青海 2-7-11
 東京港湾合同庁舎 9階
 東京出入国在留管理局オンライン審査部門おだいば分室
 (봉투 곁면에 '在留カード返納 (체류카드 반납)'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1-5 인감등록

인감등록이란

- 시구정촌에 인감(도장)을 등록(신고)하는 수속을 인감등록이라고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같은 중요한 절차에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1) 인감등록의 절차

등록신고에 필요한 것

- 인감등록신청서
 - 인감(도장)
 - 본인확인서류(개인 번호, 체류카드, 운전면허증 중에서 한 가지)
- ※ 등록이 끝난 후 인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 인감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구정촌에 문의하십시오.



(2) 인감등록증명서

- 인감등록된 인감(도장)임을 증명하는 것
 → 인감등록증 등을 관할 시구정촌에 제시하고 신청하십시오.
- 시구정촌에 따르서는 개인 번호 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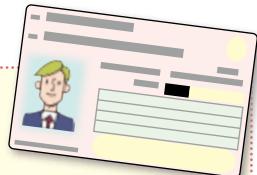
개인 번호 제도

2-1

개인 번호 제도란

- 개인 번호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연금육아수당,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 해외에 송금할 때 또는 해외에서 송금받을 때
- 은행 계좌를 만들 때



- 개인 번호를 사용할 때에는

- 그 번호가 명백히 당사자 본인의 마이넘버인지
- 당사자 본인이 여권 등과 같이 얼굴사진을 첨부한 증명서의 사람과 동일한 인물인지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마이넘버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2-2

개인 번호 카드

개인 번호 카드는 일본에서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IC칩이 내장된 카드입니다.

(1) 기재 사항

앞면: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얼굴사진

뒷면: 개인 번호



앞면



뒷면

(2) 언제 사용하는가

- 공적인 본인 확인 서류로 사용
- 소득세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 사용
- 자녀에 대한 수당이나 보육원(어린이집) 입소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사용
- 편의점에서 주민표 사본 등 각종 증명서 발급시 사용(휴일에도 가능. 시구정촌에 따라서는 취득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증으로 사용(의료 기관 및 약국에서 개인 번호 카드를 사용하면 건강 및 의료 정보를 의료 제공자와 공유하여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은 다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hlw.go.jp/stf/index_16743.html



(3) 신청 방법

일본에서의 거주지가 정해지고 시구정촌에 전입신고를 할 때 개인 번호 카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일부 제외).

처음 신청할 때에는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얼마 후에 개인 번호 카드 발급신청서가 자택으로 송부됩니다. 발급신청서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스마트폰으로 신청

스마트폰으로 얼굴 사진을 찍고 발급신청서의 QR 코드로 신청용 WEB 사이트에 접속한다

② PC로 신청

디지털카메라로 얼굴 사진을 찍고 신청용 WEB 사이트에 접속한다

③ 우편으로 신청

발급신청서에 얼굴 사진을 붙이고 송부용 봉투에 넣어 우체통에 넣는다

④ 증명사진용 촬영기로 신청 (대응 기종만)

터치 패널을 조작하여 요금을 넣고 발급신청서 QR 코드를 바코드 판독기에 대고 읽힌다. 필요사항을 입력한 후 사진을 찍어 송신한다.

⑤ 거주지의 시구정촌 창구에서 신청 (일부 제외)

발급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거주지 관할 시구정촌에 제출한다.

※ 시구정촌 창구에서 발급에 필요한 본인 확인을 받은 후에 신청하면 개인 번호 카드를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jinbango-card.go.jp/ko-kofushinse/>



(4) 수령 방법

신청 1 개월 후에 시구정촌에서 엽서가 배달됩니다.

이 엽서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고 개인 번호 카드를 수령하러 가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jinbango-card.go.jp/ko-uketori/>



2-3

개인 번호 카드 사용상의 주의점

- 성명이나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관할 시구정촌에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 번호 카드의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만료일과 동일합니다.
 - 체류기간을 연장(갱신)한 후에는 개인 번호 카드의 유효기간 내에 거주지의 시구정촌에서 개인 번호 카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십시오.
- ※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개인 번호 카드의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개인 번호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발급에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 체류 신청 시 발생하는 특례기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 번호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체류기간 갱신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 개월간(특례기간) 개인 번호 카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새로운 체류카드를 수령한 후 다시 개인 번호 카드의 유효기간을 새로운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c-gyousei/zairyu/english/basic_resident_registration_card.html



2-4

기타

이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번호 제도

<https://www.digital.go.jp/policies/mynumber/>



개인 번호 카드

<https://www.kojinbango-card.go.jp/ko/>



전화문의도 받습니다.



콜센터

(월~금 9:30-20:00, 토·일·경축일 9:30-17:30)

◎일본어

전화 0120-95-0178

◎영어 · 중국어 · 한국어 · 스페인어 · 포르투갈어 · 베트남어 ·
태국어 · 인도네시아어 · 타갈로그어 · 네팔어

전화 0120-0178-26



1

근무 전 기초지식

1-1

체류자격

외국인은 허가된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일본에서의 활동이 인정됩니다.

취업의 가능 여부는 크게 다음의 3 종류로 분류됩니다.

체류자격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교, 공용, 교수, 예술, 종교, 보도, 고도전문직, 경영·관리, 법률·회계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내 전근, 간병(개호), 흥행, 기능, 특정기능, 기능실습, 특정활동(워킹홀리데이, EPA에 의거한 외국인 간호사·간병(개호)복지사 등)

원칙적으로 취업이 인정되지 않는 체류자격

문화활동, 단기체재, 유학, 연수, 가족체재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는 체류자격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

1-2

일을 찾는 방법

(1) 헬로워크

-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에서는 무료로 일을 소개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워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 장 2-5(5) 를 참조하십시오.

(2) 소개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 유료의 직업 소개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는 일을 찾을 때의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 적정한 회사를 선택해 주십시오.

일을 소개 받을 때 돈을 요구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소개 받기 위해 또는 일하기 위해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불했을 경우 증거는 보관해 둡시다.

허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회사입니까?

일의 소개(직업 소개)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번호를 확인하고 메모해 둡니다.

일하는 조건을 제대로 설명해 주었습니까?

일의 내용이나 급료, 일하는 장소 등 구인 조건은 서면 등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보관해 둡니다.

- 허가 · 신고에 대해서는 ‘인재서비스 종합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jinzai.hellowork.mhlw.go.jp/JinzaiWeb/GICB101010.do?action=initDisp&screenId=GICB101010>



1-3 근무 형태

(1) 파견근로자(파견사원)

- 파견이란 다음과 같은 근무형태를 말합니다.

- ① 근로자는 파견회사(파견원)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파견회사가 고용주가 되어 임금을 지불합니다).
- ② 근로자는 파견회사가 근로자 파견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파견처)에 파견됩니다.
- ③ 근로자는 파견처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합니다.

- 노동자파견법에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파견회사와 파견처가 지켜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 파견으로 일하는 중에 트러블이 생기면 파견회사와 파견처에 각각 상담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으므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 파견으로 일할 경우 근로기준이나 안전위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파견회사와 파견처는 책임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2) 계약사원(유기간(기간약정) 근로계약직 사원)

- 계약사원이란 사업주와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 사전에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계약 자체도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단,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여(갱신)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1회당 계약 기간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장 3년입니다.

(3) 파트타임 근로자

- 파트타임 근로자란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통상 근로자(이른바 ‘정사원’)와 비교해 1 주 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계약사원’, ‘임시사원’, ‘준사원’과 같이 호칭은 다르더라도 이 조건을 갖추는 근로자는 파트타임 근로자입니다.

(※) 1 주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란 취업규정 등에 정해진 근무시작 시각부터 근무종료 시각까지의 시간에서 휴식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가리킵니다.

-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각종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요건을 갖추면

- ①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이 적용됩니다.

-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 ① 근로조건을 명시할 것.

② 특히 중요한 조건 6 건에 대해서는 문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4(2) 참조).

위와 더불어 파트타임 근로자나 계약사원(유기간(기간약정) 근로계약직 사원)의 경우 ‘승급의 유무’, ‘상여(보너스)의 유무’, ‘퇴직수당의 유무’, ‘고용관리개선 등에 관한 상담창구’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서면을 교부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도부현 노동국 고용환경·균등부(실)에 문의하십시오.

<https://www.mhlw.go.jp/content/000177581.pdf>



(4) 업무위탁(하청)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사람

원칙

- ‘업무위탁’이나 ‘하청’이라는 명칭으로 일할 때에는, 주문자에게서 받은 업무수행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으로, 주문자의 지휘 명령을 받지 않는 ‘사업주’ 자격으로 취급되어, 기본적으로는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

- 단, ‘업무위탁’이나 ‘하청’이라는 명칭으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주문자의 지시를 받고 있어 ‘근로자’라고 판단되면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노동기준감독서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업무 위탁(하청)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시는 분은 2024년 11월 이후 ‘프리랜서 및 사업자 간 거래 적정화 등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koyoukintou/zaitaku/index_00002.html



1-4

근로계약

(1) '근로자'의 범위

-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명령 밑에서 근무하여 그 보수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근로(노동)기준법 등 일부 근로법(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직종과 상관없습니다. 정사원뿐 아니라 파견사원, 계약사원,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도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입니다.

(2)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자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채 근무를 시작하여, 후에 회사와 트러블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일본의 노동기준법(일하는 것에 관한 법률의 하나)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정확히 명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특히 중요한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 교부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FAX나 전자메일 등(출력하여 서면으로 작성 가능한 것에 한함)에 의한 명시도 가능합니다).

① 계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계약기간에 관한 것)

※ 근로계약을 맺을 때에는 계약기간을 규정할 때와 계약기간을 규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사원, 계약사원,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등 근무형태의 명칭만으로는 계약기간의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근무형태의 명칭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자체에 대해서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기간 약정이 있는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 연장에 대한 규정 (연장이 있는지 없는지, 갱신회수에 상한이 있는지, 연장시의 판단 방법 등)
- ③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일을 하는 장소, 업무 내용)
- ④ 업무 시간과 휴식에 대한 규정 (업무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 임업의 유무, 휴식시간, 휴일·휴가, 교대제 근무의 경우는 로테이션 등)
- ⑤ 임금은 얼마이고, 언제,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 (임금의 결정, 산정방법, 지급방법, 산정기간과 지급시기)
- ⑥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규정 (해고 사유를 포함)

- 또한, 기간이 정해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기한 전환 신청권'이 발생하는 계약 갱신에서는 무기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무기한 전환 후의 근로 조건을 각각 명시해야 합니다.
- 상기 외의 노동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노동계약법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가능한 한 서면 확인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 포인트:

근로계약에서의 금지사항

노동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사항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 지불이나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해두는 일.

이는 위약금을 정하거나 사전에 손해배상액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액을 약속하지 않고, 근로자의 고의나 부주의로 의해 현실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 회사가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금전을 가불하게 한 후, 매월 월급에서 일방적 공제방식으로 상환하게 하는 행위

- 근로자에게 강제로 회사에 돈을 적립시키는 행위

적립 이유와 상관없이 사원여행 등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도 강제적으로 적립시키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노동계약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저축금 관리를 회사에 위탁하는 것은 일정 조건하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원 포인트:

근로조건이 계약 당시의 약속과 다르다면 . . .

- 실제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조건이 계약 당시의 약속과 다른 것을 알았다면 근로자는 그것을 이유로 바로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맺은 노동계약과 회사의 취업 규정 등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최저 기준은 노동기준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노동기준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못 미치는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무효 처리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노동기준법에 규정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 사실상 근무를 시작한 후에 회사가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변경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1-5

임금

(1) 최저임금이란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임금의 최저액을 말하며, 최저임금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최저임금의 특징

- 근무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을 밑도는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만일, 회사의 요청으로 계약했다고 해도 그 계약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과의 차액] × [근무한 시간분]을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휴업수당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를 쉬게 한 경우

근로자의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는 평균임금의 6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일정한 수당은 보장됩니다.

2

근무 규정

2-1

임금의 지급방법

임금이 전액 정확히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4 가지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통화 지급의 원칙	원칙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예외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은행계좌 송금 등도 가능.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협약이 있었을 시 현물(회사의 상품 등)로 지급 가능.
② 직접 지급의 원칙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③ 전액 지급의 원칙	원칙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한다.
	예외	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등 법령으로 정해진 부분의 공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과 협정을 맺은 경우의 일부 공제.
④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의 원칙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 예를 들어 2개월분의 임금을 한번에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외 '매월 20일부터 25일'과 같이 지급일이 명확하지 않거나 '매월 제4 금요일'과 같이 7일 범위에서 변동하는 지급일을 설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외	임시의 임금이나 상여금(보너스)

2-2 근로시간 · 휴식 · 휴일

(1) 근로시간

- 근무 시간의 상한은 법률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노동기준법(근로기준법)으로는 원칙적으로 1 일 8 시간 이내, 1 주간 40 시간 이내(법정노동시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간외 노동을 시킨 경우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식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1 일 근로시간이 6 시간을 초과했을 때에는 적어도 45 분, 8 시간을 초과했을 때에는 적어도 60 분의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3) 휴일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주 적어도 1 회, 또는 4 주간을 통산하여 4 일 이상의 휴일(법정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4) 파견사원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의무

파견사원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가 책임을 지지만, 근로시간, 휴식, 휴일의 준수는 파견처에 책임이 있습니다.

원 포인트: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란 소정의 근로일에 일을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에 쉴 수 있어 사용목적은 자유입니다. 근로자는 6 개월 연속하여 근무했고, 전 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10 일간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80% 이상의 출근 조건 충족 시 1 년마다 휴가일수가 가산됩니다(상한 20 일). 그리고 회사는 10 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근로자에 대해 매년 5 일을 적절한 시기를 정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파견사원이나 파트타임 근로자와 같이 정사원이 아닌 근무형태의 근로자라도

- 6 개월간의 연속근무(※)
- 전 근로일의 80% 이상 출근
- 주 5 일 이상 또는 연 217 일 이상의 근무

라는 3 가지 조건을 갖춘다면 유급휴가는 정사원과 같은 일수가 부여됩니다(주 4 일 이하 또는 연 216 일 이하의 근무라 하더라도,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0 시간 이상이라면, 정사원과 같은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 일 이하이며 1 년간의 소정근로일수가 216 일 이하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0 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수에 따른 일수만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유기한 계약사원(기간약정사원)이 계약을 연장했을 때에는, 계약연장이 계속고용과 변함이 없을 때 연장 전 근무기간도 포함됩니다.

2-3

시간외근로휴일근로

(1) 시간외근로휴일근로

- 회사는 다음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조합이 없는 경우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과 서면협정(이하 '36 협정'이라 합니다)을 맺어야 합니다.

- ① 근로자에게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경우
- ② 법정 휴일에 근무를 시킬 경우

- 시간외근로의 상한은 법률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노동기준법(근로기준법)에 상한을 원칙적으로 월 45 시간, 연 360 시간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임시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연 720 시간, 단월(1 개월) 100 시간 미만(휴일근로 포함), 복수월 평균 80 시간이 한도이며 시간외근로가 45 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달은 연 6 회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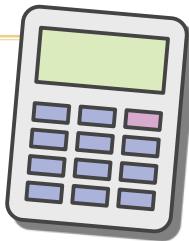
(2) 할증임금

회사는 36 협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키거나 법정 휴일에 일을 시킬 경우에는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 포인트:

할증임금의 계산방법

- 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켰을 경우에는 25% 이상 가산
※ 한 달에 60 시간을 초과하는 법정시간외 노동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② 법정 휴일에 근무를 시켰을 경우 (휴일 근로)에는 35% 이상 가산
- ③ 오후 10 시부터 오전 5 시까지의 심야 근무를 하게 한 경우 (심야 근로)는 25% 이상 가산 예를 들어, 법정근로시간외의 근로로 더욱이 심야근로인 경우(①+③)에는 임금은 50% 이상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할증임금도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파견사원, 계약사원, 파트타임 근로자, 아르바이트도 지급해야 합니다.

2-4

모성(임산부) 건강관리 · 산전산후휴직 · 육아휴직 · 간 병휴직

(1) 임신한 경우

- 임신중의 여성 근로자(일부,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그 경우 이하 “임산부”라고 합니다.)는 다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다른 가벼운 업무로 전환한다 (임신기간만)
- ② 1주간 또는 1일 근로시간이 법정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변형근로시간제의 경우도 포함) (임산부)
- ③ 시간외근로, 휴일근로 또는 심야업무를 하지 않는다 (임산부)



※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①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를 위한 산전관리 또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시간을 마련한다
- ② 여성 근로자가 건강검진 등으로 의사나 조산사에게서 지도를 받은 경우 여성 근로자가 받은 지도사항을 지킬 수 있게 근무시간의 변경이나 근무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의사나 조산사의 지도를 받은 경우 모성 건강관리 지도사항 연락 카드를 회사에 제출하십시오.

모성 건강관리 지도사항 연락 카드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영어, 중국어, 포르투갈어로 제공됩니다.

여성 근로자를 위한 모성 건강 관리에 대하여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koyoukintou/seisaku05/index.html



- 다음은 회사 금지사항입니다.

- ① 여성 근로자의 퇴직의 이유를 결혼, 임신, 출산으로 미리 규정해 놓는 것
- ② 여성 근로자를 혼인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
- ③ 여성 근로자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일 또는 산전산후휴직을 청구한 것을 이유로 여성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기타 불이익을 주는 일.

※ 임산부의 해고는 무효입니다. 단, 회사가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에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처우의 확보를 위해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koyoukintou/danjokintou/index.html



(2) 산전산후휴직

- 회사는 다음과 같은 기간의 여성 근로자를 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① 여성 근로자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출산예정일 전 6 주간 (다태아임신의 경우는 14 주간)
- ② 출산 후 8 주간 (단, 산후 6 주간 경과 후에 본인의 신청으로 의사가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

- 아이가 만 1 세(일정한 경우는 최장 만 2 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남녀 근로자가 휴직을 취득하는 것을 육아휴직이라고 합니다. 2 회 분할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아이의 출생 후 8 주 이내에 4 주간, 남녀 근로자가 휴직을 취득하는 것을 ‘산후아빠육아휴직’라고 합니다. 육아휴업과는 별도로 2 회 분할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회사(파견처에도 적용)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① 육아휴직 · 산후아빠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하는 행위
- ② 육아휴직 · 산후아빠육아휴직 신청 및 취득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간병휴직

- 근로자는 다음의 휴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육아 · 간병(개호) 휴직법)

- ① 간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을 간병하기 위한 휴직
- ② 기간은 대상 가족 1 인에 대해 통산 93 일로 합계 3 회까지 분할 가능

- 회사(파견처에도 적용)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① 간병휴직 신청을 거절하는 행위
- ② 간병휴직 신청이나 취득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세한 사항은 도도부현 노동국 고용환경 · 균등부(실)에 문의하십시오.

- 방문 상담 시에는 13 개 언어로 대응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시에는 일본어로만 대응합니다.)

<https://www.mhlw.go.jp/content/000177581.pdf>



원 포인트:

각종 수당금

- 산전산후휴직 중에 요건을 갖춘 사람은 출산수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4 장 3-2 를 참조하십시오.
- 육아휴직을 취득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은 육아휴직급여(급부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4 장 3-3 (1) 및 (2) 를 참조하십시오.
- 간병휴직을 취득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은 간병휴직급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휴직급부금의 지급액은 휴직 전 임금의 6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대상 가족 1 인에 대해 3 회, 통산 93 일이 한도입니다.

2-5 퇴직 · 해고 등

(1) 퇴직

- 회사를 퇴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지만 그만둘 때에는 다음과 같이 사회인으로서의 예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 ① 사전에 퇴직 의사를 상사에게 전할 것
- ② 서면으로 의사를 밝혀 제출
- ③ 업무인수인계를 할 것



- 퇴직을 결정했다면 먼저 본인이 일하는 회사의 퇴직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알아 둘 필요도 있습니다.
- 회사의 취업 규정에 퇴직수속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그에 맞춰 절차를 밟습니다.
- 또한 퇴직을 신청할 때에는 계약기간의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법률에 각기 다른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규정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 퇴직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2 주 후에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계약기간의 규정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에 퇴직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 1 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퇴직을 신청하면 언제라도 퇴직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직장에서 일하려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연장 할) 필요가 있습니다(1-3 (2) 참조).
- 러한 계약의 연장에는 회사와 근로자 상호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해고

해고

- 회사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를 말합니다.
- 해고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하고 사회통념상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해고는 무효입니다. 즉 해고는 회사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또한 회사는 취업 규정에 해고사유(해고의 이유가 되는 내용)를 사전에 명기해 두어야 합니다.
-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의 지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해고의 이유가 근로자측의 귀책사유일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 30 일 전에 예고하거나 30 일분의 평균임금(이를테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계약해지

- 고용계약해지란 기간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연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1-3 (2) 참조)
- 고용계약해지는 계약기간 도중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 다음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회사가 고용계약을 해지하려면 30 일 전까지 예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① 3 회 이상 계약이 연장된 사람
 - ②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예를 들어 다음 경우와 같이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사회통념상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고용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 ① 여러 번 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으로 미루어, 실직적으로 해고와 동일시 되는 경우
 - ② 근로자가 고용의 계속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
- 고용계약해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고용계약해지 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의 기간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이 연장되게 됩니다.

원 포인트:

정리해고

- 정리해고란 회사가 불황이나 경영부진 등의 이유로 인원삭감을 실시하는 경우의 해고를 말합니다.
- 정리해고가 유효한지 무효한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인원삭감의 필요성
불황이나 경영부진 등으로 인해 인원을 줄이는 것이 회사 경영상 충분히 필요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
 - ② 해고를 회피하는 노력
해고 이외의 수단으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
(예: 배치전환, 희망퇴직자 모집 등)



③ 정리해고 대상자 선별의 합리성

정리해고의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이 객관적 · 합리적이고 운용도 공정하다

④ 해고절차의 타당성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해고의 필요성과 기간, 규모, 방법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실시한다

(3) 회사의 도산

회사가 도산하여 급여지급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하여 임금지불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부가 회사의 미지급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대신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동기준감독서에 문의하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고용보험(기본수당)

실직했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으로부터 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

① 실직중인 사람

② 근로할 수 있는 상태이며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

③ 회사를 그만둔 날 이전의 2년간 11일 이상 근무한 달 또는 임금 지불의 기초가 된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달이 12개월 이상인 사람

(단, 그만둔 이유가 도산이나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이거나 기간약정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았기 때문일 경우에는 그만둔 날 이전의 1년 동안 11일 이상 근무한 달 또는 임금 지불의 기초가 된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달이 6개월 이상)

수급 개시 기간

실직사유에 따라 수급 개시일이 달라집니다.

①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와 권고퇴직에 응한 퇴직의 경우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에 구직신청(※ 1)을 하고 이직(퇴사)표가 수리된 날로부터 실직 상태인 날이 통산 7일을 경과한 후.

② 개인사유로 인한 퇴직의 경우

헬로워크에 구직신청(※ 1)을 하고 이직표가 수리된 날 이후, 실직 상태인 날이 통산 7일 경과한 날로부터 다시 2개월(개인사유로 인한 퇴직은 5년 중 2회까지)(※ 2)이 경과한 후.

(※ 1) 거주지의 헬로워크나 구직 신청 후의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5) 구직활동'을 확인하십시오.

(※ 2) 개인사유로 인한 퇴직이 5년 중 3회 이후라면 3개월

③본인 책임에 따른 중대한 이유로 해고된 경우

헬로워크에 구직 신청을 하고 이직표가 수리된 날 이후, 실직 상태인 날이 통산 7 일간 경과한 날로부터 다시 3 개월이 경과한 후

퇴직이 실제로는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 권고퇴직에 응한 퇴직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사유로 인한 퇴직 등으로 처리되면, 기본수당 수급시 불리해지므로 회사에서 이직표를 받으면 이직이유란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기간

퇴직사유와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90 일에서 330 일까지입니다.

(5) 구직활동

다음 일을 찾기 위해 헬로워크 등에서 구직활동을 합니다.

헬로워크의 직업상담 창구에서는 다음의 서비스를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①취업 상담

구직이나 취업에 관한 다양한 상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일단 창구에서 상담해 보십시오.



②근무하고 싶은 회사를 찾는다

헬로워크에는 많은 회사의 구인 정보가 있습니다. 구인 정보는 헬로워크의 컴퓨터나 당신의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③근무하고 싶은 회사 소개

근무하고 싶은 회사를 찾았다면 헬로워크의 창구로 갑시다. 직원이 회사나 구인의 포인트에 대해 조언을 해 줍니다. 또, 채용 전형의 면접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④구직 지원

헬로워크는 이력서나 직무경력서와 같은 응모서류의 첨삭 지도나 면접 매너, 마음가짐에 대한 조언, 모의 면접, 각종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의 헬로워크는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www.mhlw.go.jp/content/000637894.pdf>



통역이 가능한 헬로워크도 있습니다.

<https://www.mhlw.go.jp/content/000592865.pdf>



헬로워크에 갈 수 없을 때는 외국어로 헬로워크에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mhlw.go.jp/content/000673000.pdf>



2-5에 기재된 내용을 '외국인용 헬로워크 이용 체크리스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www.mhlw.go.jp/content/000678121.pdf>



임금, 해고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한 상담은 다음 홈페이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heck-roudou.mhlw.go.jp/soudan/foreigner.html>



노동이나 사회보험에 관한 용어의 의미를 모를 때에는 “고용 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언어용어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koyou/jigyounushi/
tagengoyougosyu/index.html](https://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koyou/jigyounushi/tagengoyougosyu/index.html)



3

건강과 안전

3-1

안전 · 쾌적한 직장환경

노동안전위생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률은 업무가 원인으로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병이 생기지 않도록 회사가 필요한 대책을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 노동안전위생법의 내용

회사는 다음의 의무가 있습니다.

- 기계, 기구 기타 설비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근로자를 고용할 때와 고용한 후에는 연 1회 빈도로 의사에 의한 건강검진을 시행할 것(근로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에 대하여 스트레스 체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작업 전환이나 필요한 업무상의 조치를 취할 것(근로자 수 50 명 미만의 작업장은 노력의무)
- 건강관리 측면에서 근로자의 근로시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것
- 장시간에 달하는 업무에 의해 피로가 누적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사의 면접지도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작업 전환이나 필요한 업무상의 조치를 취할 것 등

(2) 건강검진 등

노동안전위생법에 의거해 건강검진 및 스트레스 체크는 정사원 외에 다음 두 요건을 충족시키는 파견사원, 계약사원, 파트타임 근로자나 아르바이트도 대상이 됩니다.

- 기간약정이 없는 계약에 의해 고용된 경우
(기간약정이 있는 계약에 의해 고용된 사람은 1년 이상의 고용이 예정된 경우이거나 갱신에 의해 1년 이상 고용된 경우)
- 1 주간 근로시간수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 주간 소정 노동시간수의 4 분의 3 이상일 경우

(3) 의사의 면접지도

노동안전위생법에 따라 장시간 근로자에 대한 의사의 면접지도는 정사원뿐만 아니라 파견사원, 계약사원, 파트타임 근로자나 아르바이트도 다음 요건을 갖출 때에는 대상이 됩니다.

- 시간외 · 휴일근로시간이 1 개월 당 80 시간을 초과하며 동시에 피로의 축적이 인정되는 사람(본인의 신청에 의함)

단, 다음의 사람은 본인의 신청이 없어도 의사의 면접지도 대상이 됩니다.

- ① 1 개월 당 시간외휴일근로시간이 100 시간을 초과하는 연구개발업종사자
 - ② 1 주 당 건강관리시간 (사업장 내의 시간과 사업장 외에서의 근로시간 합계) 이 40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이 1 개월 당 100 시간을 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대상자

직장에서의 건강이나 안전에 관한 상담은 다음 홈페이지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상담 및 지원반)

<https://jsite.mhlw.go.jp/tokyo-roudoukyoku/fresc.html>



3-2 업무중 부상 · 병 등의 보상(노재보험(산재보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업무상 질병 등에 해당할 때에는 산재보험에 의해 보상됩니다.

(1) 산재보험 적용 절차

- 산재보험 지정 병원일 경우에는 치료비가 원칙적으로 무료가 됩니다(지정병원 외의 경우 비용은 일단 본인이 부담하지만 노동기준감독서에 청구하면 부담한 비용이 지급됩니다).
- 일을 쉬어야 될 경우에는 휴업보상(휴직 3 일까지는 사업주가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고, 휴직 4 일째부터는 산재보험에 의해 평균임금의 80%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유족(보상) 등 급부금이 지급됩니다.
- 업무상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일을 쉬는 기간과 그 후 30 일 동안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그 외의 유의사항

- 업무 중의 부상이나 질병 외에 출퇴근 중의 부상 등도 대상이 됩니다.
- 장시간 근무 등 일이 원인으로 발병한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도 산재의 대상이 됩니다.
- 귀국 후 일본에서의 일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경우에도 산재의 대상이 됩니다.
- 일이 원인이 되어 생긴 부상이나 질병에는 건강보험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업무 중이나 출퇴근 중의 부상 등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는 노동기준감독서로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보험은 정사원뿐 아니라, 파견사원, 계약사원, 파트타임 근로자, 아르바이트도 대상이 됩니다.

-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1 명이라도 고용하는 회사는 산재보험제도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보험료는 전액 회사가 부담합니다.

산재보험 급부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roudoukijun/gousei/rousai/gaikoku-pamphlet.html



3-3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

(1) 구직시

- 근로자의 모집채용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입사 후

- 다음 사항에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① 배치, 승진, 강등, 교육훈련
- ② 일정범위의 복리후생
- ③ 직종고용형태의 변경
- ④ 권고사직, 정년, 해고, 근로계약의 연장

- 여성임을 이유로 임금을 남성보다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도부현 노동국 고용환경·균등부(실)에 문의하십시오.

**• 청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실 경우, 13 개 언어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상담을 받으실 경우, 일본어로만 대응합니다.)**

<https://www.mhlw.go.jp/content/000177581.pdf>



3-4 허래스먼트(직장내 괴롭힘) 방지조치

다음과 같은 허래스먼트 행위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환경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의 상담에 응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위해 회사는 필요한 체제 정비와 같은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① 섹슈얼 허래스먼트 (성희롱)
- ② 임신·출산 등에 관한 허래스먼트
- ③ 육아·개호 휴직 등에 관한 허래스먼트
- ④ 파워 허래스먼트 (※)



(※) 우월적인 관계를 배경으로 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언동에 의해 근무환경을 침해하는 것

상담은 도도부현 노동국 고용환경 · 균등부(실) 또는 종합노동상담창구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 청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실 경우, 13 개 언어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상담을 받으실 경우, 일본어로만 대응합니다.)

(도도부현 노동국 고용환경 · 균등부(실))

<https://www.mhlw.go.jp/content/000177581.pdf>



(종합노동상담 코너)

<https://www.mhlw.go.jp/general/seido/chihou/kaiketu/soudan.html>



하래스먼트 대책에 대한 소책자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13 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koyoukintou/seisaku06/index.html



3-5 외국인 고용관리 지침

- 현재 일본에서 취업중인 전문 · 기술분야의 외국인 근로자나, 일본에서의 취업을 생각하는 외국인에게는 일본에서의 취업과 관련하여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하여 사업주가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한 지침’ (외국인 고용관리 지침이라고 합니다)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이나 재취업지원에 관하여, 사업주가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 헬로워크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소 등을 방문할 시 이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언이나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관리 지침

<https://www.mhlw.go.jp/content/000601382.pdf>



외국인 고용 규칙에 관한 팸플릿

<https://www.mhlw.go.jp/content/001261967.pdf>



근로 문제에 관한 상담은 종합노동상담코너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1에서 3의 내용에 대하여 문의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상담해 주십시오.

방문 상담 시에는 13 개 언어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일본어로만 가능합니다.)

<https://www.mhlw.go.jp/general/seido/chihou/kaiketu/soudan.html>



4

사회보험 · 노동보험

사회보험 · 노동보험은 인생의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하여 근로자와 회사 또는 쌍방이 공적으로 돈(보험료)을 모아서 실업, 부상, 사망 등을 당한 사람들이 수급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4-1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제 6 장 2 2-1, 2-2 참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의료급여나 수당금을 지급합니다.

- ① 부상이나 병이 난 경우
- ② 출산한 경우
- ③ 사망한 경우 등



4-2

국민연금후생연금보험

국민연금후생연금보험(제 7 장 1 1-1, 1-2 참조)은 고령, 장애, 또는 사망에 의해 연금을 생애에 걸쳐 수급하는 것입니다.

4-3

간병(개호)보험

간병보험은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 등을 사회 전체에서 지원하는 방식의 보험제도입니다.

→ 제 7 장 2 간병보험을 참조해 주십시오.

4-4

고용보험

고용보험(2-5 (4) 참조)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생활의 안정과 취직 촉진을 위해 실업급여 등을 실시하는 보험제도입니다.

(1) 적용대상

① 다음 모두에 해당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됩니다.

- 1 주간의 소정노동시간이 20 시간 이상인 사람
- 31 일 이상의 고용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

② ①의 적용대상이 된 사람은 근무처의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적용받습니다.

③ ①의 적용대상이 된 사람은 파견사원, 계약사원, 파트타임 근로자나 아르바이트도 적용 받습니다.

(2) 보험료 부담

- ① 고용보험제도 가입은 회사의 책무입니다.
- ②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 양측이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https://www.hellowork.mhlw.go.jp/insurance/insurance_summary.html



4-5 산재(노재)보험

산재보험(3-2 참조)은 다음의 경우에 국가가 필요한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공적인 제도입니다.

- 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부상, 병, 사망 (업무재해)의 경우
- ② 복수 회사 등에 고용되는 사람의 복수 업무에 기인하는 부상, 질병, 사망 (복수 업무 요인 재해)의 경우
- ③ 출퇴근 중의 사고 등 (통근재해)



1

임신의 신고 절차

1-1

임신의 신고와 모자건강수첩의 발급 등

- 임신확인이 되면 거주지 관할 시구정촌에 바로 임신 신고를 하십시오.
- 시구정촌에서는 임신 신고를 한 사람에게 다음을 제공합니다.

- ① 모자건강수첩 (산모수첩) 의 발급
- ② 임부건강검사를 공적비용보조로 받을 수 있는 진찰권 또는 보조권 배부
- ③ 보건사 등에 의한 상담
- ④ 부모 학교 (엄마 학교 · 아빠 학교) 소개

※ 모자건강수첩(산모수첩)은 모친의 임신기부터 출산 후까지와 자녀의 신생아기부터 영유아기까지의 건강상태를 일관되게 기록한 것이며 또한 영유아 보호자의 육아에 관한 지도서이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 보호자가 직접 기록 · 관리할 수 있으며 의료관계자도 기록 · 참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2023년 1월에 육아 및 관련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자건강수첩 정보 및 지원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모자건강수첩 정보 및 지원 사이트) <https://mchbook.cfa.go.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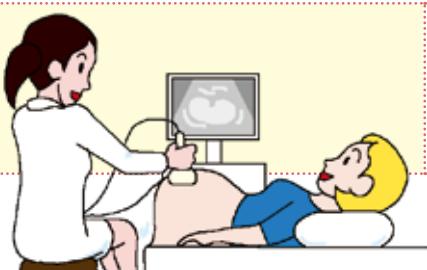


1-2

임부건강검진

- 임신중에는 평소보다 한층 더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임부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 의사나 조산사 등의 어드바이스를 들으면서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부건강검진은 대략 다음과 같은 빈도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 ① 임신 초기부터 임신 23 주까지는 4 주에 1 회
- ② 임신 24 주부터 임신 35 주까지는 2 주에 1 회
- ③ 임신 36 주부터 출산까지는 주 1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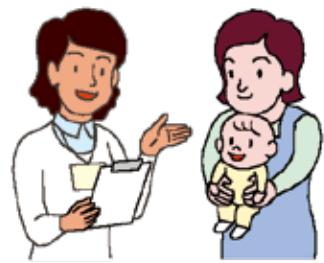
1-3

보건사·조산사 등에 의한 방문 지도

각 가정으로 보건사나 조산사 등이 방문하여 다음의 같은 상담·지도를 실시합니다.

- ① 가정에서의 생활과 식사 등의 지도
- ② 임신, 출산에 있어서 불안이나 걱정 상담
- ③ 신생아 및 영유아의 육아상담

※ 이러한 방문지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시구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부모 학교(엄마 학교·아빠 학교)

시구정촌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 영양 등에 관한 교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나 아빠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2

출산 후 절차

2-1

출생신고서

일본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 부친 또는 모친이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아이가 태어난 장소 또는 신고인의 소재지가 있는 시구정촌에서 출생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출생신고에 필요한 것

- 출생증명서
- 이 외의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시구정촌에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수속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60 일을 경과할 때까지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주민표가 삭제되어 국민건강보험과 아동수당 등과 같은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1 장 2-4 체류자격의 취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출생한 아이의 본국으로의 신고

부친과 모친이 모두 외국 국적인 경우에는 자녀가 일본에서 태어났어도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본국에 아이의 출생신고수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친 또는 모친의 국적국의 재일대사관·(총)영사관에 문의하십시오.

그리고 태어난 자녀의 여권도 함께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출산비용과 각종 수당

임신과 출산은 병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제왕절개와 같은 수술비 등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3-1

출산육아일시금

건강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출산을 하면 출산비용으로 50 만엔 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단, 임신주수가 22 주에 못 미치는 등 산과의료보상제도 대상 출산이 아닌 경우에는 48 만 8 천엔이 지급됩니다.

다음의 두 가지 지급제도가 있습니다.

① 직접지급제도

출산육아일시금 청구와 수취를 임부를 대신하여 의료기관 등이 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육아일시금이 의료기관 등으로 직접 지급되므로 퇴원시에 창구에서 출산비용을 전액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수취대리제도

임부 등이 가입한 건강보험조합 등에 출산육아일시금을 청구할 때 출산하는 의료기관 등에 수취를 맡김으로써 의료기관으로 직접 출산육아일시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3-2

출산수당금

건강보험 가입자인 본인이 출산을 위해 회사를 쉬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출산(예정)일 이전 42 일(다태임신의 경우 98 일)부터 출산일 후 56 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회사를 쉬는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출산수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수당금은 출산 전후 휴업 기간 중,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으로부터 1 일당 임금의 3 분의 2 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를 쉬는 동안에도 급여가 지급되고 출산수당금보다도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출산수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진 경우에는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도 출산수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

육아휴업급부금(육아휴직급여)

(1) 육아휴업급부금

고용보험 가입자가 만 1세(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만 1세 2개월). 그 다음 요건을 갖출 경우 만 1세 6개월 또는 만 2세)가 안 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받은 사람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시키면 원칙적으로 헬로워크에 지급신청을 하면 육아휴업급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처음 180일은 휴직 시작일 전 급여의 67% 상당액, 그 후부터는 50% 상당액입니다).

• 급부금(급여)을 수급하기 위한 요건

- ① 휴직 개시일 전 2년간 11일 이상 근무한 달 또는 임금 지불의 기초가 된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달이 12개월 이상임
- ② 육아휴직중의 급여가 휴직개시 때의 급여와 비교하여 80% 미만으로 낮아지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춤
- ③ 휴직 기간 동안의 1개월당 근무 일수가 10일 이하여야 함(또는 10일을 초과할 경우 근무 시간이 80시간 이하여야 함)

휴직을 분할해서 취득한 경우에도 원칙 2회째까지는 육아휴업급부금의 대상이 됩니다.

※ 기간제고용자(기한약정근로자)의 경우

기간제고용자(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는 상기 조건과 더불어 휴직을 개시할 때, 자녀가 만 1세 6개월이 되기까지(어린이집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등으로 만 1세 6개월 이후의 휴직을 개시할 때에는 만 2세까지) 그 고용 계약이 만료된다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조건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2) 출생시육아휴업급부금

고용보험 가입자가 자녀가 태어난 지 8주가 경과하기 전에, 4주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산후아빠육아휴직)를 취득하여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헬로워크에 지급 신청을 함으로써 출생시육아휴업 급부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휴직 개시 전 임금의 67% 상당액. 출생시육아 휴업급부금이 지급된 일수는 3-3(1) 육아휴업급부금의 급부율이 67%가 되는 일수인 180일에 통산됩니다.)

• 급부금을 수급하기 위한 요건

- ① 휴직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전 2년간에 11일 이상 일한 달 또는 임금 지불의 기초가 된 근로 시간수가 80시간 이상 되는 달이 12개월 이상 되는 것
- ② 휴업 중 임금이 휴직을 개시할 때의 임금에 비해 80% 미만으로 저하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
- ③ 휴직 기간 중 취업일수가 최대 10일(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시간수가 80시간) 이하인 것(단, 휴직 기간이 28일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일수에 비례하여 취업 가능한 일수·시간수도 짧아짐)

또한, 산후아빠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2회째까지는 출생시 육아휴업급부금의 대상이 됩니다.

또, 다음의 ①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휴직에 대해서는 해당 휴직에 대하여 급부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① 동일한 자녀에 대해 3회째부터 취득한 출생시육아휴업
- ② 동일한 자녀에 대해 취득한 출생시육아휴업의 통산일수가 28일을 넘은 부분

※ 기간제 고용자(기한약정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고용자(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는 자녀가 태어나고 나서 8주를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까지의 사이에 그 고용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3-4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가정에서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목적으로 한 수당입니다.
아동과 양육자가 모두 일본 국내에 살고 있는 경우에 아동 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수급할 수 있는 사람

만 18세 생일 후 처음 맞는 3월 31일까지의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2) 수급방법

- 먼저 거주지 관할 시구정촌에 수급신청을 하십시오.
-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의 익월분부터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새로 태어나거나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했을 때에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3) 수급가능 금액

대상 아동 연령 (※)		1 명당 월액
첫째 자녀·둘째 자녀	3세미만	1만 5,000 엔
	3세부터 18세에 도달한 후 첫번째 회계연도 말까지	1만엔
셋째 자녀 이후	0세부터 18세에 도달한 후 첫번째 회계연도 말까지	3만엔

※ 22세에 도달한 후 첫 번째 회계연도 말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는 자녀에 대해, 출생 순서에 따라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라고 합니다.

(4) 수급시기

원칙적으로 매년 4월, 6월, 8월, 10월, 12월, 2월에 각각 전월분까지의 2개월분을 한꺼번에 수급합니다.

4

육아

4-1 산후 케어 사업

출산 후 퇴원 직후의 산모와 영아에게 신체적·정신적 케어 및 육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실시 방법, 실시 장소

- ① 숙박형 : 병원이나 산부인과 병원 등에 숙박하며 케어 및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데이 서비스형 : 시설에 낮 동안 방문하여 당일 귀가하며 케어 및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아웃리치형 : 담당자가 방문하여 가정에서 케어 및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구정촌에 따라 실시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시구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2 영유아 건강검진

시구정촌에서는 다음의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만 1 세 6 개월 아기 건강검진
 - 만 3 세 어린이 건강검진
 - 시구정촌에 따라서는 이 외의 월령의 영유아라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 ※ 건강검진의 내용은 발육·발달의 진찰, 신장·체중의 측정, 육아상담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시구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3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관할 시구정촌이 장려하는 예방접종

시구정촌이 장려하는 예방접종은 무료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살고 있는 시구정촌으로 문의하십시오.

② 자유의사에 의해 접종하는 예방접종

본인의 희망에 의한 예방접종은 본인이 접종비를 지불합니다.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의사와 상담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4-4

어린이의 의료비

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6 세 이하의 미취학(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는 자기부담 비율이 20%입니다.

살고 있는 시구정촌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의료비가 무료인 곳도 있으며, 추가로 지원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4-5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설

- 만 6 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는 보육소(어린이집), 유치원, 인정 어린이원과 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 만 3 세부터 만 5 세까지 아동의 보육소(어린이집), 유치원, 인정 어린이원 등의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1) 보육소(어린이집)

- 직장이나 일 등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보육하는 시설입니다.
- 일반적인 보육시간은 1 일 8 시간입니다.
야간이나 휴일같은 시간외 보육을 실시하는 보육소도 있습니다.

- 급한 사정이나 단기 파트타임 취업 등으로 인해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어린 이를 맡아주는 일시보육을 실시하는 보육소도 있습니다.

원 포인트:

인가외 보육시설

어린이 보육시설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시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 무인가 보육원
- 백화점에서 손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시설
- 탁아소
- 베이비호텔
- 베이비시터
- 등이 있습니다.



(2) 유치원

- 만 3 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입니다.
- 표준교육시간은 1 일 4 시간입니다. 단, 일을 하는 등의 보호자 사정에 따라 저녁이나 밤까지 혹은 이른 아침부터 보육을 해 주는 유치원도 있습니다.
- 어린이가 자율적인 놀이를 통하여 배우는 것을 중시합니다.
- 또한 지역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육아상담점수나 원내 정원 개방 등을 실시하고 있는 유치원도 있습니다.

(3) 인정 어린이원

- 인정 어린이원은 보육원과 유치원 둘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인정 어린이원은 일을 하는 보호자가 아니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모든 육아가정을 대상으로 육아불안에 대한 상담활동이나 부모와 자녀의 모임의 장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4-6

방과후 아동 클럽(학동보육)

-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 인해 낮동안 가정에 없을 경우에는 방과후 아동클럽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방과후 아동클럽에서는 방과후 아동돌보미 등을 배치하여 수업을 마친 후에 놀이와 생활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 밖에도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습과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방과후 어린이 교실’을 실시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4-7

패밀리 서포트 센터

- 다음과 같은 사람이 회원이 되고 패밀리 서포트 센터가 중개하여 회원간에 서로 돋는 조직이 있습니다.

- ① 영유아와 초등학생과 같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 자녀를 맡기고 싶은 사람
- ② ①의 보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

-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보육시설 등으로의 송영
- ② 보육시설의 시간외나 방과후 등의 어린이 위탁
- ③ 보호자가 장보기 등으로 외출시의 위탁

-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사는 지역에서 가까운 패밀리 서포트 센터에 회원등록을 한다.
- ② 이용 신청을 한다.
- ③ 패밀리 서포트 센터의 어드바이저에게서 지원하는 사람을 중개·소개받는다.
- ④ 이용 후에 지원보육인에게 요금을 지불한다.

5

임신, 출산 및 육아 관련 상담 창구

5-1

어린이 가정센터 등

시구정촌에는 임산부, 육아 중인 보호자, 어린이 등이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불안, 가정 및 학교에 관한 고민 등을 상담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어린이 가정 센터 등)가 있습니다. 출산 전후의 일이나 영유아의 성장 및 발달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보건사, 육아 상담에 응하는 상담원 등이 다양한 상담에 친절하게 대응하여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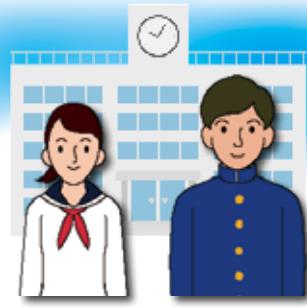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는 시구정촌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2

지역 육아 지원 센터

시구정촌에서는 공공시설이나 보육원, 아동관 등 지역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지역 육아 지원 거점)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소를 개설하고 육아 상담 및 육아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는 시구정촌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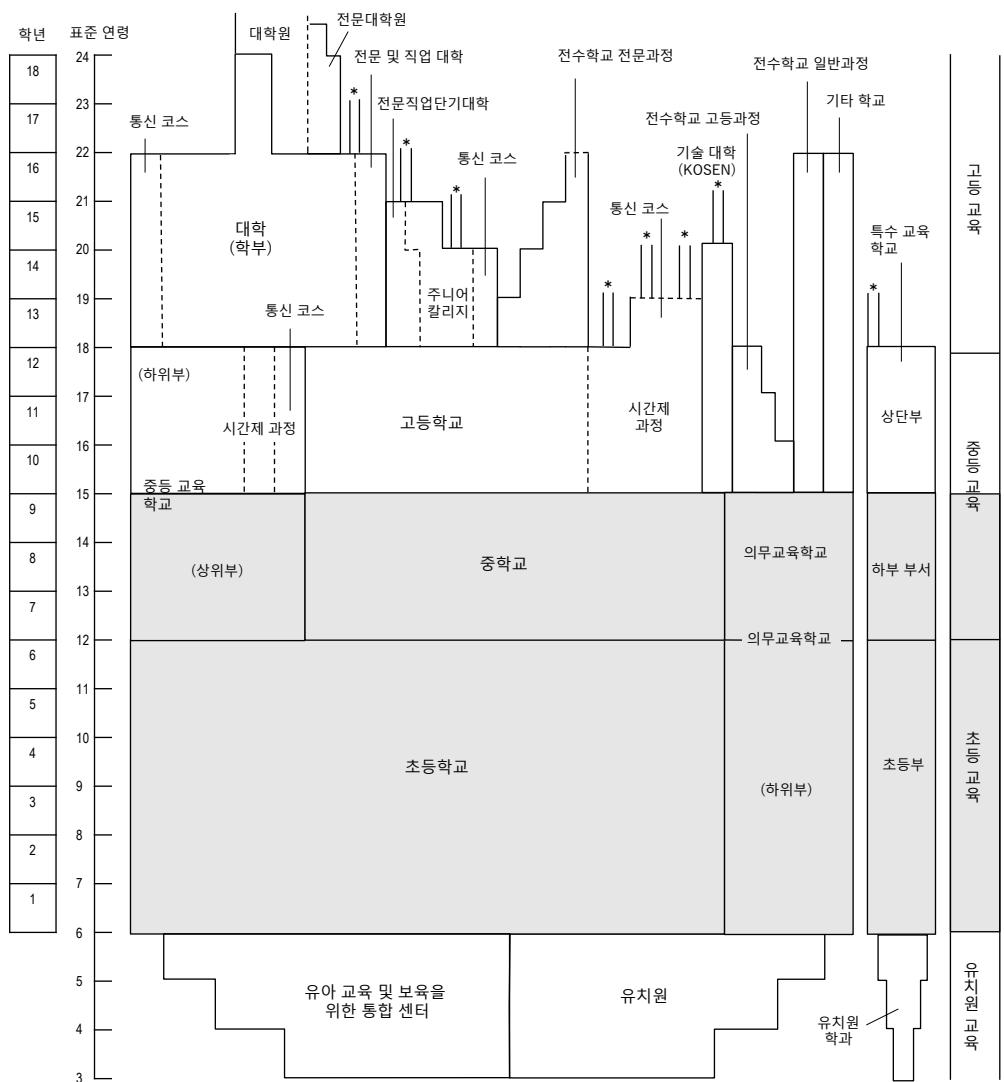


1

일본의 교육제도

현재 일본의 교육제도는 일반적으로 6 – 3 – 3 – 4 제라 하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간의 교육제도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등에서 취학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학교 제도의 조직



- (주) (1) 부분은 의무교육이다.
- (2) *는 고급 과정을 나타냅니다.
- (3) 고등학교, 종등교육기관의 상위계열, 대학, 전문대학 및 특별지원학교의 상위계열은 1년 이상의 과정으로 별도의 과정을 둘 수 있다.
- (4) 유아교육원은 학교와 아동복지기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의 아동이 다닐 수 있습니다.
- (5) 전수학교 일반과정 및 기타학교의 연령 및 입학요건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1

초등학교·중학교

공립 초·중학교 입학

- 일본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만 6 세부터 만 15 세까지의 어린이가 있는 보호자는 어린이를 초등학교 와 중학교 등에 취학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에도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으로의 취학을 희망하는 경우무상(수업료, 교과서)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시구정촌에 자녀를 일본의 공립학교에 입학시키고 싶다는 진학의사를 전달하십시오.
- 시구정촌에서 발급받은 ‘외국인 아동 학생 입학허가서’ 등을 가지고 지정된 학교로 가십시오.
- 별도로 일본에서는 초등학교·중학교 외에 9년의 의무교육을 일관해서 실시하는 의무교육 학교나 장애가 있는 어린이가 다니는 특별지원학교가 있습니다.
(‘야간 중학’에 대해서는 1-4를 참조해 주십시오)

문부과학성 ‘취학 가이드북’

https://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3/1320860.htm



문부과학성 ‘외국인 아동 · 보호자용 동영상’

<https://casta-net.mext.go.jp/multilingual-contents/videos-for-learners>

문부과학성 외국과 관련이 있는 아동 및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정보 검색 사이트
‘카스타넷’

<https://casta-net.mext.go.jp/>



1-2

고등학교

- 고등학교는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등이 다니는 학교로 입학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입학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 고등학교는 교육 형태에 따라 전일제, 정시제, 통신제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대학 등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1-3

외국인 학교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외에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시설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주로 외국인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한 시설은 외국인 학교라고 부릅니다.
- 각기 다른 문화적 · 민족적 배경과 언어, 교육내용, 진학과 취직실적 등을 가지고 있어 자녀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하여 취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일본에 있는 외국인 학교 졸업자의 대학입학자격에 대해서는 ‘1-7 고등교육기관(대학 등)’을 참조).

외국인 학교 관계자용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mext.go.jp/a_menu/kokusai/gaikoku/index.htm



1-4 야간 중학

- 일본에는 본국이나 일본에서 의무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이나 여러 사정으로 충분한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학교 교육 연령을 초과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야간 중학’이 있습니다.
- 야간 중학은 전국 32 도도부현 및 지정도시에 53 개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4년 10 월 현재)
- 야간 중학에 입학하려면 우선 살고 있는 시구정촌의 교육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으십시오.

문부과학성 ‘야간 중학에서 배우고 싶은 분에게’

https://www.mext.go.jp/a_menu/shotou/yakan/index_00005.htm



문부과학성의 ‘야간 중학 홍보 자료’에서는 야간 중학교에 대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mext.go.jp/a_menu/shotou/yakan/index_00004.htm



1-5 중학교 졸업정도 인정시험(중학교 검정고시)

- 일본의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치를 수 있습니다.
- 시험은 연 1회 실시합니다.
- 합격하면 일본의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1-6 고등학교 졸업정도 인정시험(고등학교 검정고시)

- 일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치를 수 있습니다.
- 시험은 연 2회 실시합니다.
- 합격하면 다음과 같은 자격이 주어집니다.

- ① 일본의 대학이나 단기대학, 전문학교 등의 입학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 ②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직시험이나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개요(영어)

https://www.mext.go.jp/a_menu/koutou/shiken/mext_01319.html



1-7 고등교육기관(대학 등)

대학 등의 입학 자격

- 일본에서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또는 지정 외국인 학교(http://www.mext.go.jp/a_menu/koutou/shikaku/07111314/003.htm)를 졸업한 자는 다음과 같은 학교의 입학자격이 주어집니다.

- ① 대학
- ② 전문직대학
- ③ 단기대학
- ④ 전문직단기대학
- ⑤ 전문학교(전수학교 전문과정) 등



- 다음과 같은 자격취득자도 상기 학교 입학자격이 주어집니다.

- ①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 ② 아비투어(Abitur)
- ③ 바칼로레아(Baccalaureate)
- ④ GCEA레벨(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Advanced-Level)
- ⑤ 국제A레벨 (International A Level)
- ⑥ 유럽 바칼로레아 (European Baccalaureate)
(일본 국내의 국제 바칼로레아 인정 학교 일람:
<https://ibconsortium.mext.go.jp/about-ib/school/>)



- 이하의 단체에서 인정받은 교육시설(12년의 과정)을 졸업해도 상기 학교 입학 자격이 인정됩니다.

- ① WASC(The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 ② CIS(Council of International Schools)
- ③ ACSI(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 ④ NEASC(New England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 ⑤ Cognia
- ⑥ COBIS (Council of British International Schools)

그 밖의 고등교육기관

- 그 밖의 일본 고등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기관은 입학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 ① 주로 대학 졸업 후 진학하는 대학원
- ② 주로 대학 졸업 후 진학하는 전문직대학원
- ③ 주로 중학교 졸업 후 진학하는 고등전문학교

1-8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시험

-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려면 각 고등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시험과 서류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각 기관의 판단 하에 외국인 대상 특별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유학생에 대해서는 일본학생지원기구가 실시하는 일본유학시험(EJU)이 많은 대학 등에서 특별 입학전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용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jasso.go.jp/en/ryugaku/eju/index.html>



2

교육비의 경제적 지원

2-1 취학 지원

-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학용품(교복, 랜도셀, 학용품)이나 급식비 같은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자녀가 있는 보호자로 저소득 세대가 대상입니다.
- 관할 시구정촌에 따라 지급 조건이나 금액이 다릅니다.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ext.go.jp/a_menu/shotou/career/05010502/017.htm



2-2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

- 보호자의 연수입이 약 910 만엔 미만인 세대는 고등학교의 수업료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공립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수업료와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립고등학교 등에 다니는 학생은 보호자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니는 학교에서 고지합니다.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ext.go.jp/a_menu/shotou/mushouka/1342674.htm



영어로 읽고 싶으신 분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ext.go.jp/a_menu/shotou/mushouka/20220329-mxt_kouhou02-2.pdf



2-3 고등학생 등 장학금부금

- 고등학생의 보호자로 저소득세대는 교과서와 학용품비 등 수업료 이외의 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액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종류 등에 따라 다릅니다.
-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학교 또는 관할 도도부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ext.go.jp/a_menu/shotou/mushouka/1344089.htm



영어로 읽고 싶으신 분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ext.go.jp/a_menu/shotou/mushouka/20240326-mxt_kouhou02-2.pdf



2-4 고등교육 단계의 장학금

- 장학금은 국가, 지방공공단체, 민간단체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 국가의 장학금제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① 금부형(일반적 장학금): 반환할 필요가 없는 제도
- ② 대여형(학자금대출): 빌리는 것으로 반환해야 하는 제도



* 대여형 장학금에는 무이자와 이자가 붙는 유이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체류자격 소지자는 장학금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 ① 특별영주자
- ② 영주자
- ③ 일본인 배우자 등
- ④ 영주자의 배우자 등
- ⑤ 정주자(영주할 의사가 있는 사람)
- ⑥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체류 (일본의 초등학교 등 ~ 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고, 대학 등을 졸업한 후에도 일본에서 취업 및 정착할 의사가 있는 사람)



- 그 외 성적 등의 요건을 갖춘 체류자격 '유학'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금부형 장학금(반환하지 않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외국인용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jasso.go.jp/en/ryugaku/scholarship_j/shoreihi/index.html



3

일본어에 대하여

일본말을 할 수 있으면 일본생활이 편해집니다. 지인이나 친구들이 생겨서 일본생활에 도움을 줄 수도 있으며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것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일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일본어 습득을 해 나갑시다.



3-1 일본어 학습의 개요

- 일본어에서 사용하는 문자는 5 종류가 있습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로마자,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각각 46 자와 작게 쓰는 문자(히라가나는 4 자, 가타카나는 9 자)가 있고, ‘、’ , ‘。’ , ‘—’ 도 사용합니다.
- 한자는 어려운 글자도 있지만 외워두면 편리합니다. 많이 쓰는 한자부터 조금씩 즐기면서 공부해 봅시다.
- 로마자는 메일이나 SNS 등의 문자를 입력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 일본에서 생활할 때에는 사는 지역의 장소나 길 이름(발음이나 표기 한자 등의 문자) 등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지방에서 사용하는 ‘사투리’도 많은데 지역 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언어들은 각 지역의 일본어 교실이나 지역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익혀가면 좋겠지요.
- 그 밖에 일본어에는 경어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따라 정중한 일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유용할 것입니다.

3-2 일본어 학습 기준

- 여러분이 일본어를 더 쉽게 학습할 수 있게 2021년에 새로 CEFR(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sment: 유럽 언어 공통 기준)을 참고로 해서 "일본어 교육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 이것은 일본어 6개 레벨(A1 ~C2)과 일본어 능력("듣기""읽기""말하기(주고받기)" "말하기(발표)" "쓰기")별 학습 내용이나 행동 목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 자신의 일본어 레벨을 확인하시고 다음 목표를 세워서 학습하기 위한 참고로 사용하십시오.
- 저희가 제작해서 제공하는 자료로는, 참조용 프레임워크 가이드인 '생활 Can Do' 와 일본어 레벨 자기 평가 도구인 '니혼고 체크!' 가 있습니다.

일본어 교육 참조 프레임워크, 가이드, '생활 Can Do' 및 기타

https://www.nihongo-ews.mext.go.jp/information/framework_of_reference



C2	듣거나 읽거나 한 거의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정확하게 자기표현을 할 수 있고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도 세세한 의미의 차이, 구별을 표현할 수 있다.
C1	여러 종류의 수준이 높은 내용의 상당히 긴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고 함의를 이해할 수 있다. 말을 찾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유창하게, 자연스럽게 자기표현을 할 수 있다. 사회적, 학문적, 직업상의 목적에 따른 유연하고 효과적인 말을 사용할 수 있다.
B2	자신의 전문분야에 관한 기술적인 의론을 포함해 추상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화제의 복잡한 텍스트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서로 긴장하지 않고 숙달된 일본어 화자와 대화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창하고 자연스럽다.
B1	일, 학교, 오락을 통해 평소에 만나는 듯한 친숙한 화제에 대해 공통어라면 요점을 이해 할 수 있다. 일상적인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화제에 대해 단순한 방법으로 연결된 맥락이 있는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
A2	대단히 기본적인 개인 정보나 가족 정보, 쇼핑, 근처, 일 등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영역에 관한 자주 사용되는 문장이나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 간단하고 일상적인 범위라면 친숙한 일상적인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A1	구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주 사용되는 일상적인 표현과 기본적인 표현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상대방이 천천히 명확하게 말하고 도와준다면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다.

3-3 일본어 학습 장소

일본어 교실과 같은 곳은 일본어를 배우면서 생활정보를 얻거나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어 교실을 찾아봅시다.

최근에는 SNS를 활용한 온라인교육이나 e 러닝 등으로 일본어를 공부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학습방법을 찾아봅시다.

(1) 일본어 학교

- 진학이나 취직, 시험대책 등 목적별 코스가 있습니다.
- 입문부터 상급까지 레벨 별로 일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 클래스나 그룹 레슨, 개인 레슨 등 수업형태를 고를 수 있습니다.
- 수업료가 듭니다.

(2) 지역 일본어 교실

- 지자체나 국제교류협회,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일본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민관이나 학교의 빙 교실, 교회, 불란티어(봉사활동)센터 등에서 개최합니다.
- 불란티어(봉사활동)에 의한 지도가 많습니다.
-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교실도 있습니다. 일본어학교보다 저렴합니다.
- 클래스는 주 1, 2 회로, 1 회 1 시간~2 시간입니다.

각 지역의 일본어 교실 담당부서 및 지역 내 일본어 교실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bunka.go.jp/seisaku/kokugo_nihongo/kyoiku/nihongokyoiku_tanto/pdf/93036701_01.pdf



※일본어교실을 찾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①교실명 ②주최자 ③장소 ④연락처 ⑤연락방법 ⑥지원 언어 ⑦기간
- ⑧회수 ⑨요일과 시간대 ⑩참가자격 ⑪비용 ⑫클래스 형식 (그룹 / 일대일 등)
- ⑬인원수 ⑭레벨 ⑮강사 ⑯내용 ⑰주차장이나 택아서비스의 유무 등

(3) 통신·온라인교육

업무나 육아 등의 바쁜 일상으로 일본어 교실에 다닐 수 없다면 SNS를 활용한 통신이나 e러닝 등으로 일본어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요금이나 서비스의 형태도 다양하므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3-4

일본어 학습 웹사이트 '이어지고 넓어지는 일본어 생활' (통칭: 쓰나히로)

일본어 학습 사이트 '이어지고 넓어지는 일본어 생활'은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이 일본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일본어를 학습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자신에 맞는 일본어 레벨이나 학습하고 싶은 장면, 키워드에 따라 동영상이나 스크립트에 관한 학습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를 공부하고 실제로 사용함으로써 사회와 연결되고 생활의 폭을 넓혀보세요.

○**대응 언어:** 일본어 · 중국어(간체자) · 중국어(번체자) · 영어 · 필리핀어 · 프랑스어 · 인도네시아어 · 캄보디아어(크메르어) · 한국어 · 몽골어 · 미얀마어 · 네덜란드어 · 포르투갈어 · 러시아어 · 스페인어 · 태국어 · 우크라이나어 · 베트남어

○**학습 장면:** 인사, 쇼핑, 은행, 열차, 관공서, 방재, 육아 등 생활 장면

'이어지고 넓어지는 일본어 생활'

<https://tsunagarujp.mext.go.jp>



3-5

일본어 교육 참조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일본어 능력 자기 평가 도구 ‘일본어 체크!’에 대해

이 온라인 시스템은 일본 국내외의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자기 평가 도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Can do’ 섹션에서 질문에 답함으로써 일본어 능력을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학습을 장려하고 일본어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본어 교육 참조 프레임워크에는 A1~C2 까지 6 개의 레벨이 있으며, 듣기, 읽기, 말하기(주고받기와 발표), 쓰기 등 5 개의 언어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학습자는 언어 능력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다음의 4 단계로 자신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1. 할 수 없다”, “2. 거의 할 수 없다”, “3. 어렵지만 간신히 할 수 있다”, 그리고 “4. 할 수 있다”

- 지원 언어: 일본어를 포함한 14 개 언어 지원.
중국어, 영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한국어, 몽골어,
미얀마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태국어, 베트남어 및 일본어
(후리가나 표기 있음).

다음 페이지에서 당신의 레벨을 확인하십시오.

<https://www.nihongo-check.bunka.go.jp/>



일본어 능력 자가평가 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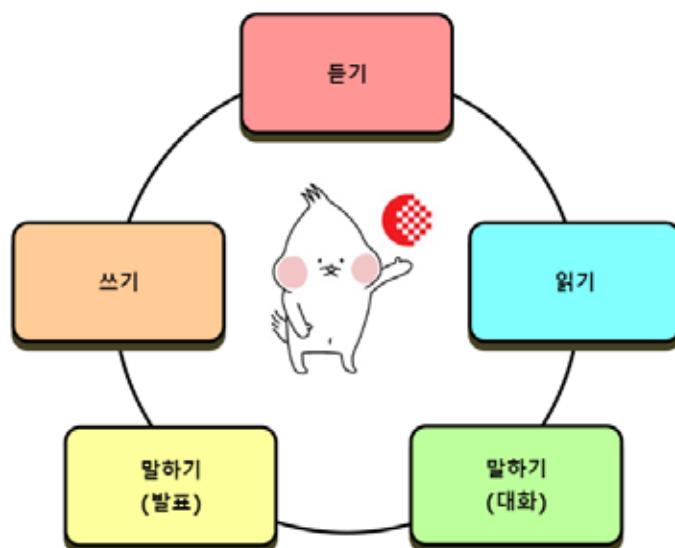
일본어 체크!

지금, 일본어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자

LANGUAGE

한국어 韓国語

체크!하기 전에





1

의료기관

1-1

의료기관의 종류

- 일본에는 많은 의료기관이 있으며 각기 그 역할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증상이 가벼운 질병과 부상은 가까운 진료소로 가십시오.

- ① 진료소와 클리닉: 일상적인 질병과 상처를 치료할 경우
- ② 중소규모의 병원: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응급치료를 해야 할 경우
- ③ 대형병원(종합병원): 중증의 응급환자나 고도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경우

- 병원과 진료소에 갈 때는 건강보험증을 챙겨갑니다. 건강보험증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의료비가 전액 본인부담이 됩니다.
- 질병과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료과목이 정해집니다. 다음 표는 진료과목별로 진찰받을 수 있는 질병과 부상의 내용입니다.

내과	소화기, 호흡기, 순환기, 비뇨기, 혈액, 내분비, 신경 등 내장기관 질환의 진단과 주로 수술없이 약제를 사용한 치료를 합니다. 감기를 비롯한 일반적인 질병의 진단과 치료도 합니다.
외과	암이나 외상에 의한 내장 질병을 수술을 중심으로 치료합니다.
소아과	소아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정형외과	뼈, 관절, 근육, 힘줄 등의 운동에 관련된 기관과 그와 관련된 신경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안과	눈과 관련된 질병을 치료합니다.
치과	치아에 관련된 질병 치료와 교정 및 가공을 합니다.
산부인과	임신, 분만, 신생아 등 출산과 관련된 질병을 치료합니다.

1-2 의료기관 찾기

- 의료기관을 찾을 때에는 다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① 거주지 관할 지역의 시구정촌이 발행하는 홍보지
- ② 인터넷
- ③ 전국 의료기관을 검색할 수 있는 의료정보사이트(내비이)

※ 의료정보넷(내비이)

<https://www.iryou.teikyouseido.mhlw.go.jp/znk-web/juminkanja/S2300/initialize>



※ 이 밖에 방일 외국인 여행자용 일본 정부 관광국 (JNTO) 사이트에서도 외국어로 의료기관(도도부현 이 지정하는 외국인 수용 거점 의료기관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jnto.go.jp/emergency/jpn/mi_guide.html



- 상담이 가능한 장소.

- ① 거주지 관할 지역 시구정촌
- ② 의료안전지원센터(※)

(※) 도도부현, 보건소가 설치된 시와 특별구에 약 400 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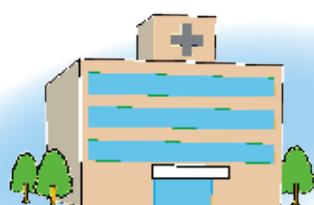
자세한 사항은 다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nzen-shien.jp/center/>



- 다음은 일본어로 의사소통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상담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 ① 관할지역의 시구정촌
- ② 관할지역의 국제교류 협회
- ③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NPO 법인)(외국어로 상담에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의료보험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은 국적과 상관없이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회 전체가 부담을 분담함으로써 의료비의 본인부담분을 줄이고 양질의 고도 의료를 받을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2-1

건강보험

(1) 가입요건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회사(사업소)에 근무하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필요한 사람

- ① 정사원, 법인 대표자, 임원
- ②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같은 회사(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근무하는 사람
- ③ 다음의 5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 1 주일에 정해진 근무시간이 20 시간 이상
 - 2 개월을 초과해서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것
 - 월급이 8.8 만엔 이상
 - 학생이 아닌 자
 - 종업원 51 명이상의 회사에서 근무



(2) 보험료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회사와 피보험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수급내용

의료비의 본인부담

보험을 이용한 의료비의 일부부담(본인부담) 비율은

- 만 6 세(초등학교 취학 전) 미만 20%
- 만 70 세 미만 30%
- 만 70 세부터 만 74 세까지 20%(현역에 준하는 소득자는 30%)

요양비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직후로 보험증이 아직 없는 경우
 - 김스 등의 치료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마, 침, 뜸, 맷사지 등을 받은 경우
 - 해외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등
- 진료에 든 비용은 일단 전액 본인이 부담한 후 신청하여 인정되면 일부 본인부담을 제외하고 요양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요양비

의료기관과 약국의 창구에서 지불한 금액(입원시의 식사부담이나 차액 침대요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 한 달에 일정액을 넘는 경우에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종적인 본인부담액인 매월의 ‘부담 상한액’은 가입자가 만 70 세 이상인지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송비

병이나 부상으로 이동이 어려운 환자가 의사의 지시로 일시적이고 긴급적인 필요로 인해 이송될 경우에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갖추면 이송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송에 의해 적절한 진료를 받았을 경우
- 이송의 원인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이동하는 것이 몹시 곤란했을 경우
- 긴급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상병 수당금

피보험자(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의 이유로 근무가 불가능하여 업무를 연속 3일간 쉰 후, 4 일째 이후의 근무를 쉰 일수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지급기간은 지급개시일로부터 통산하여 1년 6개월입니다.

출산육아일시금

피보험자(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지급액은 출산아 1명당 원칙적으로 50 만엔입니다.

출산수당금

피보험자(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지급액은 출산아 1명당 원칙적으로 42 만엔(2023년 4월 이후는 50 만엔)입니다.

가족요양비

피부양자가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에는 가족 요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범위, 수급방법, 수급기간 등은 피보험자(가입자)에 대한 요양비 급여와 동일합니다.

2-2 국민건강보험

(1) 가입요건

- 주민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직장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만 75 세 미만의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 외국인은 다음의 한 항목이라도 해당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① 체류기간이 3 개월 이하(※)
- ② 체류자격 ‘단기체재’
- ③ 체류자격 ‘특정활동’ 중 ‘의료를 받는 활동’ 또는 ‘그 사람의 일상 보조 활동’을 하는 사람
- ④ 체류자격 ‘특정활동’ 중 ‘관광, 휴양 및 그 외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사람
- ⑤ 체류자격 ‘외교’
- ⑥ 불법체류 등으로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
- ⑦ 일본과 의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의 국민으로 본국 정부로부터 사회보험가입증명서(적용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 체류기간이 3 개월 이하여도 체류자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자료에 의하여 3 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체류자격 ‘통행’
- 체류자격 ‘기능실습’
- 체류자격 ‘가족체재’
- 체류자격 ‘특정활동(상기 ③ 또는 ④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가입 및 탈퇴 수속

국민건강보험의 가입과 탈퇴 수속(※)은 거주지 관할 시구정촌에서 실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시구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 탈퇴 수속을 해야 합니다.

- ① 현재 살고 있는 시구정촌에서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한 사람
- ②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등

(3) 보험료

보험료는 세대단위로 산정되며 가입자의 소득이나 인원수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세대주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 소득이나 생활상황 등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시구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수급내용

의료비의 본인부담

보험을 이용한 의료비의 일부부담(본인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 세(초등학교 취학 전) 미만 20%
- 만 70 세 미만 30%
- 만 70 세부터 만 74 세까지 20%(현역에 준하는 소득자는 30%)

요양비

- 취국민건강보험에 가입 직후로 보험증이 아직 없는 경우
- 김스 등의 치료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마, 침, 뜸, 맛사지 등을 받은 경우
- 해외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등



진료에 든 비용을 일단 전액 본인이 부담한 후 신청하여 인정되면 일부부담(본인부담)을 제외하고 요양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요양비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창구에서 지불한 금액(입원시의 식사부담이나 차액 침대 요금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이 한 달 일정액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종적인 자기부담액이 되는 매월 ‘부담 상한액’은 가입자가 만 70 세 이상인지 아닌지 또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송비

병이나 부상으로 이동이 어려운 환자가 의사의 지시로 일시적이고 긴급적인 필요로 인해 이송될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송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송에 의해 적절한 진료를 받았을 경우
- 이송의 원인인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해 이동하는 것이 몹시 곤란했을 경우
- 긴급 또는 그 외 부득이한 경우

출산육아일시금

피보험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지급액은 아이 1 명당 원칙적으로 50 만엔입니다.

2-3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1) 가입요건

만 75 세가 되면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만 75 세 이상인 사람은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하게 됩니다.
- 만 65 세부터 만 74 세까지의 사람으로 일정한 장애가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그때까지 가입해 있던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조합, 협회건강보험, 공제 조합 등)은 탈퇴하게 됩니다.
- 만 75 세 이상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한 항목이라도 해당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해야 합니다.



- ① 체류기간이 3 개월 이하(※)
- ② 체류자격 ‘단기체재’
- ③ 체류자격 ‘특정활동’ 중 ‘의료를 받는 활동’ 또는 ‘그 사람의 일상 생활을 돌보는 활동’을 하는 사람
- ④ 체류자격 ‘특정활동’ 중 ‘관광, 휴양 및 그 외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사람
- ⑤ 체류자격 ‘외교’
- ⑥ 불법체류 등으로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
- ⑦ 일본과 의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의 국민으로 본국 정부로부터 사회보험가입증명서(적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 체류기간이 3 개월 이하라도 체류자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자료에 의해 3 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 ‘통행’
- 체류자격 ‘기능실습’
- 체류자격 ‘가족체재’
- 체류자격 ‘특정활동(위의 ③ 또는 ④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가입 및 탈퇴 수속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가입과 탈퇴 수속은 거주지 관할 시구정촌에서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살고 있는 시구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시구정촌에서 도도부현을 넘어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은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탈퇴 수속을 해야 합니다.

(3) 보험료

보험료는 가입자 전원이 동일금액을 부담하는 균등할액과 피보험자의 소득에 따라 부담하는 소득할액을 합친 합계액입니다.

회사의 건강보험 등의 피부양자였던 사람의 보험료가 경감되는 경우도 있으며 소득과 생활상황에 따라서 보험료가 경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시구 정촌 또는 후기고령자 의료광역연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수급내용

의료비 본인부담

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를 받을 경우, 일부부담(자기부담)비율은 의료비의 10% 됩니다. 단, 현역에 준하는 수준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30% 부담, 그 이외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20%부담이 됩니다.

요양비

- 가입 직후로 보험증이 없는 경우
- 김스 등의 의료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마, 침, 뜸, 맷사지 등을 받은 경우
- 해외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등



일단 진료에 든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그후에, 신청하여 인정받으면 일부부담(본인부담)을 초과한 부분을 요양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요양비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창구에서 지불한 금액(임원시의 식사비부담이나 차액 침대요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 한 달 일정액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종적인 본인부담액이 되는 매월 ‘부담 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송비

병이나 부상으로 이동이 어려운 환자가 의사의 지시로 이송됐을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송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송에 의해 적절한 진료를 받았을 경우
- 이송의 원인인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해 이동하는 것이 몹시 곤란했을 경우
- 긴급 또는 그 외 부득이한 경우

3**약**

- 약은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질병이나 부상 치료에 약을 쓸 경우가 있지만 약에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 약에 대한 문의사항은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 있는 약제사나 등록판매자에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등록판매자는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OTC의약품)의 일부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3-1**약국**

약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조제하며 복약 지도하에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OTC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3-2**드럭스토어**

OTC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과 마찬가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단, 드럭스토어에서는 처방전을 받지 않습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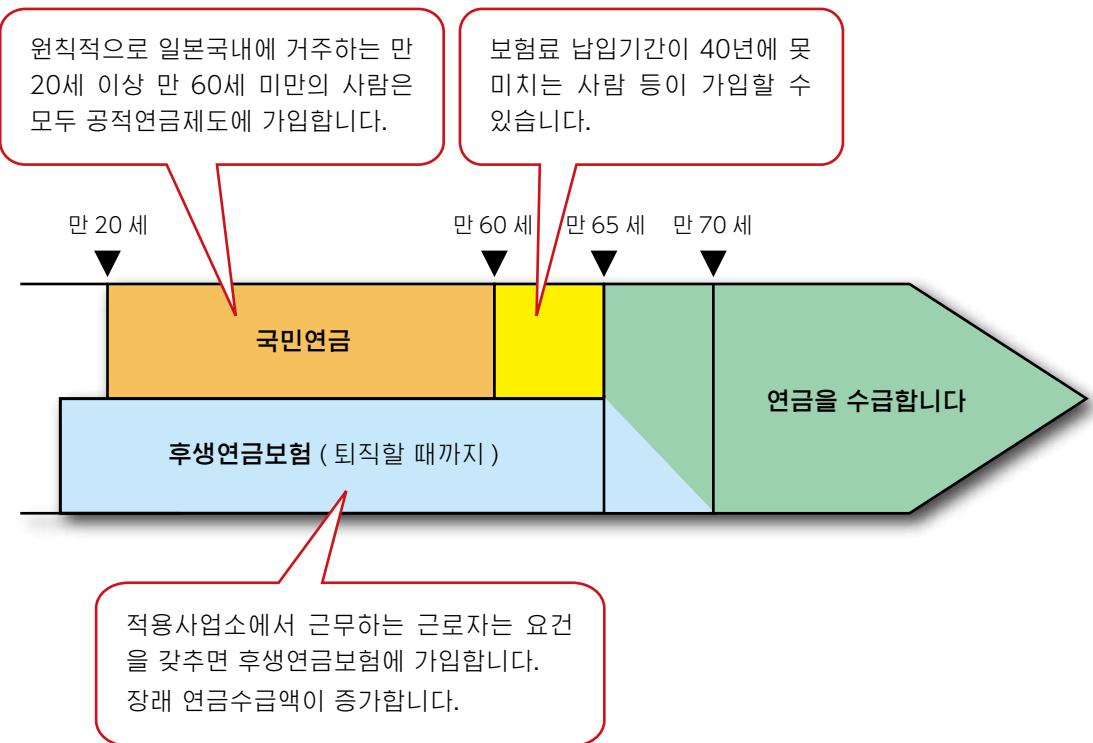
연금

일본의 연금제도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세대를 넘어 사회 전체가 서로 협력하여 평생의 보장을 실현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세대가 납입한 보험료를 고령자 등의 연금 급여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외에 장애연금, 유족연금도 있습니다.

[노령기초연금·노령후생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의 이미지도]



1-1

국민연금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본국내에 거주하는 만 20 세 이상 만 60 세 미만의 사람은 모두 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합니다.

(1) 피보험자(가입자) 및 가입수속

국민연금의 피보험자(가입자)에는 제 1 호~제 3 호의 3 가지 종별이 있습니다.

① 제 1 호 피보험자

- 자영업자나 학생 등 제 2 호 피보험자, 제 3 호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국민연금 제 1 호 피보험자로 분류됩니다.
- 가입수속은 본인의 거주지 관할 시구정촌에서 담당합니다.

② 제 2 호 피보험자

-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국민연금 제 2 호 피보험자로 분류됩니다.
- 가입수속은 회사 등(사업주)이 담당합니다.

③ 제 3 호 피보험자

-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국민연금 제 2 호 피보험자)에 의해 부양되는 배우자는 국민연금 제 3 호 피보험자로 분류됩니다.
- 가입수속은 배우자(국민연금 제 2 호 피보험자)가 근무하는 회사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제 1 호 피보험자에게 부양되는 배우자는 제 3 호 피보험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한 만 65 세 이상의 연금 수급권자에게 부양되는 배우자도 제 3 호 피보험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 ①에서 ③의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으면서 일본에 사는 60 세 이상 70 세 미만의 사람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에 의해 국민연금의 피보험자(임의 가입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입 수속은 본인이 살고 있는 시구정촌에서 실시합니다.

※ 65 세 이상 70 세 미만인 사람은 1965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났거나 10년의 수급 자격 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등 몇 가지 요건에 해당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보험료

- 제 1 호 피보험자 및 임의 가입 피보험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일률적입니다. 또 신청에 의해 일반 보험료에 추가하여 보험료(부가보험료: 월 400 엔)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제 2 호 피보험자, 제 3 호 피보험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보험료는 납부서(금융기관 창구, 편의점 등에서 납부),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입할 경우 할인 적용이 됩니다.

- 제 1 호 피보험자는 수입의 감소나 실업 등에 의해 보험료를 납입하기 힘들 경우 보험료 면제 또는 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시구정촌 또는 연금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의 미납이 계속되면,

- 미납 1년당 '노령기초연금'이 연간 약 2만엔 적어집니다.
-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망하게 되었을 때 유족 분이 '유족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급부

노령기초연금

- 수급자격기간(보험료를 납입한 기간과 보험료가 면제된 기간 등)이 10년 이상인 경우 만 65세부터 노령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노령기초연금의 금액은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 만 20세부터 만 60세까지 40년간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은 노령기초연금의 전액을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 보험료를 납부한 분은 '200엔 × 부가 보험료 납부 월수'의 부가 연금액(연액)을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미납기간은 수급자격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가 면제된 기간이 있는 노령기초연금 금액에 대해서는 면제의 종류와 기초연금의 국고부담비율에 따라 산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장애기초연금

- 다음의 모든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장애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①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중에 초진일(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처음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료를 받은 날)이 있다
- ② 질병이나 부상이 원인으로 일정 이상의 장애가 남았다
- ③ 진일 전날시점에서 보험료의 납부요건을 갖추고 있다

- 장애기초연금의 장애등급에는 1급, 2급이 있습니다.
- 장애기초연금의 금액은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 ① 장애등급 1급 → 노령기초연금 만기액의 1.25 배의 금액
- ② 장애등급 2급 → 노령기초연금 만기액과 동등한 금액

- 1급, 2급 모두 '자녀'가 있으면 금액이 가산됩니다.

유족기초연금

- 다음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는 유족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① 또는 ②에 해당

- ① 국민연금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60 세 이상 65 세 미만인 사람이 사망한 시점에, 그 사람이 국민 연금의 보험료 납부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 ② 노령기초연금의 수급자격기간이 25 년 이상 남아있는 사람이 사망했다

⇒사망한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 유족기초연금 금액은 노령기초연금의 만기액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자녀’ 가 있는 경우에 는 가산됩니다.

원 포인트: ‘자녀’란

‘자녀’란 혼인하지 않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 만 18 세가 된 연도의 3 월 31 일까지의 자녀
- 만 20 세 미만으로 장애등급이 1 급 또는 2 급의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

사망일시금

- 제 1 호 피보험자로서의 보험료 납부를 끝낸 기간이 36 개월 이상인 사람이 노령기초연금, 장애기초연금 중 어느 하나도 수급하지 않은 상태로 사망하여 유족이 유족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을 경우 유족은 사망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사망일시금의 금액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보험료가 면제된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미망인연금

- 미망인연금은 국민연금 제 1 호 피보험자로 보험료 납부가 끝난 기간 등이 10 년 이상인 남편이 사망한 경우, 남편의 사망 당시 남편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혼인관계가 10 년 이상 계속된 부인은 만 60 세부터 만 65 세가 될 때까지 미망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미망인연금 수급액은 남편의 제 1 호 피보험자 기간만을 근거로 산정한 노령기초연금액의 4 분의 3 입니다.

1-2

후생연금보험

적용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합니다(적용사업소의 요건과 가입을 위한 요건은 건강보험과 동일합니다).

후생연금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1) 피보험자(가입자)

- 적용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만 70 세 미만의 갖추면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가입자)가 됩니다.
- 70 세 이상의 사람도 노령연금의 수급 자격을 가지지 않는 등 일정한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 신청에 의해 피보험자(고령임의가입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용사업소의 요건

다음과 같은 사업소는 적용사업소가 됩니다.

- ① 주식회사 등의 법인
- ② 농림수산업,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개인사업소(5인 이상)
- ③ 노사 합의로 임의로 적용되는 사업소

피보험자가 되는 요건

적용사업소에 사용되는 (가)~(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보험자가 됩니다.

- (가) 정사원이나 법인의 대표자, 임원
- (나) 1 주일의 소정 노동시간 및 1 개월의 소정 노동일수가 같은 사업소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정사원의 4분의 3 이상인 사람(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등)
- (다) 정사원의 4분의 3 미만이어도 ①한 주의 소정 노동시간이 20 시간 이상, ②월액 임금이 8.8 만엔 이상, ③학생 이외, ④종업원 51명 이상의 기업에 근무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사람

(주 1) 국가·지방공공단체에 속하는 적용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① ~ ③의 요건만으로 피보험자가 됩니다.

(주 2) 고용 기간의 예정이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사람으로, 그 기간을 넘어 근무하는 것이 예상되지 않는 사람은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당초 고용기간이 2개월 이내라도 간신의 가능성이 있으면 계약 당초부터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보험료

- 본인부담분의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text{매월의 금여} (\text{표준보수월액}) \text{와 상여금} (\text{표준상여액}) \times \text{보험료율} \div 2$$

※ 후생연금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피보험자(가입자)가 반씩 부담합니다.

(3) 보험 급부

노령후생연금

- 노령기초연금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자 연금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노령 근로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후생연금액은 후생연금의 피보험자(가입자)였던 시기의 매월의 금여(표준보수월액) 등과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일정한 생년구분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납부요건을 갖춘 사람은 만 65 세가 되기 전에 노령후생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후생연금

- 다음의 모든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장애후생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①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에 초진일(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처음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료를 받은 날)이 있다
- ② 질병이나 부상이 원인으로 일정 이상의 장애가 남았다
- ③ 초진일 전날시점에서 보험료 납부요건을 갖추고 있다

- 장애후생연금의 장애등급에는 1 급, 2 급, 3 급이 있습니다.

- 장애후생연금액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① 장애등급 1 급 → 노령후생연금의 1.25 배의 금액
- ② 장애등급 2, 3 급 → 노령후생연금과 동일한 금액

※ 장애등급 3 급의 장애후생연금에는 최저보장액이 있습니다.

최저보장액 = 2 급 장애기초연금액 × 3 / 4

장애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 수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일시금으로 장애수당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족후생연금

- 다음의 어느 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라면 유족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보험료 납부요건을 갖추고 피보험자(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② 보험료 납부요건을 갖추고 피보험자(가입자)가 기간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초진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 ③ 피보험자이거나 피보험자였던 사람으로, 노령기초연금 수급자격기간이 25 년 이상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
- ④ 1 급, 2 급의 장애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유족후생연금의 수급액은 사망한 사람의 노령후생연금의 금액의 4 분의 3 입니다.

원 포인트:**유족이란**

유족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배우자 (남편은 만 55 세 이상, 만 60 세부터 지급)
 - ② 자녀 (국민연금에서의 자녀와 같은 의미)
 - ③ 부모 (만 55 세 이상, 만 60 세부터 지급)
 - ④ 손자 (자녀와 동일한 요건 있음)
 - ⑤ 조부모 (만 55 세 이상, 만 60 세부터 지급)
- ※ 남편에게 유족기초연금 수급권리가 있을 때에는 유족후생연금을 만 55 세부터 수급할 수 있습니다.
- ※ 부모, 손자, 조부모는 본인보다 순서가 먼저인 사람들이 수급할 때에는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1-3 탈퇴 일시금

청구 요건

다음의 모든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본을 출국할 경우 탈퇴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 ②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가입자)였던 기간 또는 국민연금 제 1 호 피보험자로서의 보험료 납부완료기간 등이 6 개월 이상이 된다
- ③ 노령연금 수급 자격기간(통산 10 년간)을 채우지 않았다
- ④ 일본에서의 주소가 없다
- ⑤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이 없다
- ⑥ 장애연금 등의 수급권을 가진 적이 없다
- ⑦ 일본을 출국한 후 2 년 이내

청구 시 유의 사항

다음은 탈퇴 일시금 청구 시의 유의사항입니다.

- ① 탈퇴 일시금을 수급하게 되면 청구전의 일본의 연금제도에 가입했던 기록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따라서 장래, 일본의 노령연금을 수급할 가능성을 고려해서 탈퇴 일시금을 청구할지에 대해서 주의깊은 판단이 필요합니다.
※ 탈퇴 일시금 청구서는 일본연금기구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서의 주의사항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② 일본 연금기구가 청구서를 수리한 날에 여러분의 주소가 아직 일본에 있을 때에는 탈퇴 일시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주지 시구정촌에 전출신고서를 제출하신 후 탈퇴 일시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③ 일본을 출국하기 전에 일본국내에서 청구서를 우송 등으로 제출할 때에는 청구서가 출국일 이후에 일본연금기구에 도착하도록 송부해 주십시오.
- ④ 탈퇴 일시금 지급액은 일본의 연금제도 가입기간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5년(60개월)을 상한으로 산정됩니다.

청구서, 송부처, 탈퇴 일시금의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일본연금기구

Japan Pension Service의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enkin.go.jp/shinsei/jukyu/sonota-kyufu/20150406.html>



원 포인트:

사회보장협정

일본은 현재 여러 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에 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은, 각 나라에서의 연금 가입기간이 짧더라도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통산하여 일본이나 협정을 체결한 상대국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이 어느 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 웹사이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nenkin/nenkin/shakaihoshou.html>



2

간병(개호)보험

일본에는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 등을 사회 전체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간병(개호)보험제도가 있습니다. 간병보험제도 가입자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간병이 필요해졌을 때 비용의 일부를 내고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1 ➤ 가입대상자

만 40 세 이상으로 3 개월 이상 일본에서 생활할 경우에는 간병보험의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2-2 ➤ 보험료

간병보험 가입대상자는 전년 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보험료는 소득 외에도 다음의 연령구분이나 살고 있는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① 만 65 세 이상(제 1 호 피보험자)
연금에서의 공제징수가 원칙입니다(일부는 납부서 등에 의해 징수).
- ② 만 40 세 이상 만 65 세 미만 (제 2 호 피보험자)
의료보험의 보험료에 추가되어 징수됩니다.

간병보험제도(제 2 호 피보험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hlw.go.jp/stf/newpage_10548.html



2-3 ➤ 간병서비스의 이용

간병서비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시구정촌에 '요간병(요지원)인정' 신청을 하여 인정허가를 받는다.
※ 간병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요간병(요지원)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을 하게 되면 심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며, 원칙적으로 30 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 ② 케어매니저나 지역포괄지원센터에 간병서비스 계획(케어플랜) 작성을 의뢰한다.
※ 시설에 입소할 때에는 시설에 직접 신청해 주십시오.
- ③ 케어 플랜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받는다.
※ 그 밖에 '요간병(요지원)인정'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간병예방, 생활지원서비스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살고 있는 시구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동복지

3-1

아동수당

제 4 장 3-4 아동수당을 참조해 주십시오.



3-2

아동부양수당

- 한부모가정 등에서 양육되는 아동(※)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을 보살피고 있을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 ① 부모가 혼인을 해소한 아동
- ②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아동
- ③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일정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
- ④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 등

(※) 아동이란, 만 18 세가 된 연도의 3월 31 일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이나 만 20 세 미만으로서 일정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칭합니다.

월지급액

2023년도의 금액 (물가에 따라 매년 변동합니다)

- 아동 1 인의 경우
전액지급: 45,500 엔 일부지급 : 45,490 엔부터 10,740 엔까지
- 아동 2 인 이상의 가산액
전액지급: 10,750 엔 일부지급 : 10,740 엔부터 5,380 엔까지

※ 지급액은 물가에 따라 매년 변동되며, 전년도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적연금 등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수당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시구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 → 특별아동부양수당

정신 또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자녀(만 20 세 미만)를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부모 등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등의 전년도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구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가능액

2024년도 수급액(물가에 따라 매년 변동합니다)

- 특히 중증(장애기초연금 1급 해당)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
1인당 5 만 5,350 엔/월
- 중증(장애기초연금 2급 해당)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
1인당 3 만 6,860 엔/월

3-4 → 장애아복지수당

정신 또는 신체의 중증 장애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지속적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아동(만 20 세 미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등의 전년도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구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가능액

2024년도의 금액(물가에 따라 매년 변동합니다)

1 만 5,690 엔/월

4

장애복지

4-1

수첩

심신에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인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첩을 발급받으면 세금감면이나 교통요금 할인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수첩의 종류

- 신체장애인 수첩: 신체에 영구적 장애가 있는 사람
- 요육(療育)수첩: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
-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 정신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
shougaishahukushi/techou.html](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shougaishahukushi/techou.html)



※ 상담은 거주하는 자치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2

장애인·장애아에 대한 행정 서비스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에는 간병이나 발달재활훈련 지원 등이 있습니다.

장애아에 대한 행정지원으로는 장애아의 발달지원이나 간병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장애아를 위한 행정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구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생활보호**

5-1과 같은 내용을 실시하여도 세대별 수입이 최저생활비에 미치지 않을 경우, 최저생활비에서 수입을 제한 차액을 보호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생활비는 후생노동성 장관이 결정합니다.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생활보호에 준하는 보호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영주자, 일본인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등의 활동에 제한이 없는 사람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구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1 생활보호 수급 요건 등**(1) 자산의 활용**

예금, 적금, 생활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 가옥 등이 있을 때에는 매각 등을 통하여 생활비에 충당하십시오.

(2) 능력의 활용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능력에 맞게 일을 하십시오.

(3) 기타 급여 등의 활용

연금이나 수당 등 다른 제도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면 우선 그것을 활용하십시오.

(4)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

친족 등에게서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도움을 받으십시오.

5-2 보호의 종류와 내용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맞추어 지급이 결정됩니다.

생활에 필요한 비용	보조의 종류	지급내용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 (식비, 의류, 광열비 등)	생활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비 등의 개인적인 비용 광열수도비 등의 세대 공통비용을 합하여 기준액을 산출
아파트 등의 집세	주택보조	정해진 범위내에서 실비 지급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학용품 등의 비용	교육보조	정해진 기준금액을 지급 (일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실비)
의료서비스 비용	의료보조	비용은 직접 의료기관에 지불 (본인 부담 없음)
간병서비스의 비용	간병보조	비용은 직접 간병 사업자에 지불 (본인부담 없음)
출산비용	출산보조	정해진 범위내에서 실비 지급
취업에 필요한 기능 습득 등에 드는 비용	생업보조	정해진 범위내에서 실비 (고등학교 등에 진학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는 정해진 기준 금액) 지급
상제 비용	상제보조	정해진 범위내에서 실비 지급

6

생활곤란자 자립지원제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상담창구(자립 상담 지원 기관)가 있습니다. 상담내용에 따라 취업이나 가계상담, 주거 등의 측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지역 내 자립 상담 지원 기관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 상담 지원 기관 목록

<https://minna-tunagaru.jp/ichiran/>





외국인과 세금

외국인이라도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국내에서 일을 하여 발생한 수입이 있는 사람
→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 1 월 1 일 현재 일본에 주소가 있는 사람
→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년도 소득에 따라 과세됩니다).
또한 외국인이라도 여행 등으로 호텔에 머물거나 식사를 하면 소비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원 포인트:

‘국세’와 ‘지방세’

일본의 세금은 어디에 납부하느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국세’라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소득세’가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도도부현이나 시구정촌에 납부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주민세’가 있습니다.

1

소득세

소득세는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 1 년간에 발생한 개인 소득에 관련된 세금입니다.

소득세 산출은

- ① 수입 - 경비 등 = 소득금액(A)
- ② 소득금액(A) - 각종 공제(1-3 참조) = 과세소득금액(B)
- ③ 과세소득금액(B) × 세율
로 계산됩니다.

세율은 과세소득금액(B)가 많아질수록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1-1

납세의무자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

다음의 거주 형태 구분에 따라 소득세 대상이 되는 소득 범위가 달라집니다.

(1) 거주자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현재까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소’를 둔 사람((2)비영주자는 제외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 국외원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이 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원 포인트:

‘주소’와 ‘거소’

- ‘주소’란 개인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하며 생활의 근거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일본에서 취업중인지, 배우자나 그 외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일본에 살고 있는지 등)에 따라 판정합니다.
- ‘거소’란 사람이 상당 기간 계속해서 거주하는 장소이지만 생활의 근거라고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장소를 말합니다.

(2) 비영주자

‘거주자’ 중 일본 국적이 없고 또한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었던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사람

해당되는 사람을 ‘비영주자’라고 합니다.

→ ①국외원천소득 외의 소득과 ②국외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지급된 것 또는 국외에서 송금된 것이 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3) 비거주자

‘거주자’와 ‘비영주자’ 이외(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 등)의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 일본 국내에서 근무한 급여나 일본 국내에서의 인적 서비스 제공으로 생긴 보수 등의 국내 원천소득만 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1-2 소득세 확정신고와 납세

소득세는 그 해에 발생한 소득 금액과 그에 따른 소득세액을 본인이 계산하여 신고기간 내에 세무서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1-4 참조)된 소득세 등과의 과부족을 정산합니다. 이 수속을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1) 확정신고가 필요한 사람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소득세가 원천징수(1-4 참조)된 후 연말정산(1-4 참조)에 의해 정산되므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급여를 1 곳에서 받으며 급여소득이나 퇴직소득 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 만엔을 넘는 사람
- 2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으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급여의 수입금액과 급여소득이나 퇴직 소득 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 만엔을 넘는 사람
- 급여 외의 사업이나 주식거래 등에 의해 소득을 취하여 소득세 계산 결과 세금이 발생하는 사람 등

또한, 확정신고에 의해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는 사람은 기한 내에 납세자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세무서에서 납부에 관한 통지 등은 없습니다).

다음은 납부방법입니다.

납부 방법	개요
입금 납세	사전 신고한 예금 계좌에서 국세청이 지정한 날짜에 자동으로 계좌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는 방법
직접 납부 (e-Tax 를 통한 계좌 이체)	e-Tax 를 이용하여 사전에 신고한 예금 계좌에서, 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
인터넷뱅킹등을 통한 전자 납세	인터넷뱅킹이나 ATM에서 납부하는 방법
신용카드 납부	전용 사이트 '국세 신용카드 납부 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납부하는 방법
스마트폰 앱을 통한 납부	전용 사이트 '국세스마트폰결제전용사이트'를 통해 'OOPay' 와 같은 스마트폰 결제 앱을 사용하여 납부
편의점 납부 (QR 코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스스로 납부 정보 QR 코드를 생성하여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편의점 납부 (바코드)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바코드 부착 납부서를 사용하여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창구납부	금융 기관이나 세무서 창구에서 현금이나 수표로 납부하는 방법

(2) 확정신고를 하면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람

- 소득공제(1-3 참조)가 있는 등의 이유로 원천징수(1-4 참조)된 소득세 등이 초과 납부된 경우에는 확정신고에 의해 소득세가 환급됩니다. 우체국이나 은행계좌로의 송금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등에 의해 초과 납부된 소득세가 없다면 환급되는 소득세는 없습니다.

(3) 확정신고 및 납세 기한

각 연도분의 소득세에 관한 확정신고의 상담 및 신고서 접수기간은 다음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 세무서의 휴무일(토요일, 일요일, 경축일 등)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의 상담 및 신고서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분의 납세 기한은 3월 15일입니다.

※ 이 기간(3월 15일)이 토요일, 일요일, 경축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일 이후의 평일이 기한이 됩니다.

(4) 일본에서 출국하는 경우

- 일본에 주소 및 거소가 소멸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국 전에 그 해의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받습니다.
- (1)과 같이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국 전에 확정신고 및 납세를 해야 합니다.
- 출국한 후에 확정신고나 납세 등의 수속이 필요할 경우에는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납세 관리인을 세워 ‘납세관리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십시오. 출국 후에 납세 관리인이 본인 대리인으로 수속을 하게 됩니다.

1-3

주된 소득공제

각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1의 계산식을 참조).

단, 비거주자(1-1 (3) 참조)는 적용되는 공제 종류가 한정됩니다.

(1) 친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친족을 부양하는 경우로 부양되는 사람의 합계 소득금액이 40만엔 이하(2019년 이전은 38만엔 이하) 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하고 있는 친족이 비거주자(1-1 (3) 참조)인 경우에는 ‘친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호적사본 등) 및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금융기관에서 송금한 송금내역서와 같은 서류’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하거나 확정신고서 제출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23년 이후는, 부양하고 있는 친족이 연령 30세 이상 70세 미만의 비거주자인 경우로 이하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① 그 친족이 유학에 의해 일본에 주소 및 거소가 없어진 친족이다.
- ② 그 친족이 장애인이다.
- ③ 그 해에 있어서 자신이 그 친족에게 생활비 또는 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한 38만엔 이상 지불을 하고 있다.

(2)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정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비거주자(1-1 (3) 참조)인 경우에는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호적 사본 등) 및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금융기관에서 송금한 송금내역서와 같은 서류 등)’을 확정신고서에 첨부하거나 확정신고서 제출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본인이나 생계를 함께 하는 배우자 또는 그 외 친족의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후생연금 등)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생명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

본인이 일정 금액의 생명보험료, 간호의료보험료 및 개인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

본인이나 생계를 함께 하는 배우자 또는 그 외 친족의 의료비가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의료비 금액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 급여를 받고 있는 외국인은 고용주에게서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가 공제(원천징수)됩니다.
- 그 해 마지막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가 정산(연말정산)됩니다.
- 급여 지급자는 지급금액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표’를 급여수여자에게 발급합니다.

1-5

조세조약에 따른 특례

출신국과 일본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소득세가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주민세



2-1

주민세란

- 1월 1일 현재 주소가 있는(있었던) 도도부현과 시구정촌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지난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사에서 받은 급여 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는 ‘소득할’과 받은 급여 등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납부하는 ‘균등할’이 있습니다.
- 도도부현에 납부하는 주민세는 시구정촌에 납부하는 주민세와 함께 시구정촌에서 납부합니다.

2-2

주민세의 납부

- 주민세 납부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특별징수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에서 미리 공제하고 시구정촌에 납부합니다. 회사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시구정촌에 주민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보통징수

시구정촌에서 ‘주민세를 납부하십시오’라는 서면이 오면 본인이 이 서면과 서면에 쓰여진 세액분의 금액을 가지고 시구정촌(※)에 가서 납부합니다.

(※)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시구정촌에서 우송된 서면에 적혀 있습니다.

2-3

기타

- 주민세에 관한 유의점

- ① 1월 1일 현재 주소를 두고 있는(있었던) 시구정촌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1월 2일 이후 일본에서 출국한 경우에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② 특별징수(2-2 ① 참조)로 주민세를 납부해 온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에 납부하지 않은 주민세를 보통징수(2-2 ② 참조)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미납분의 주민세 전액을 지급될 예정인 급여나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시구정촌에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③ 일본을 출국할 때까지 주민세를 납부하지 못할 때에는 출국 전에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세금 수속을 진행해 줄 대리인(납세 관리인)을 세워 관할 시구정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3

소비세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소비세 10 퍼센트가 부과되지만, 주류와 외식을 제외한 식료품을 구입했을 때의 세율은 경감세율 8 퍼센트가 적용됩니다.



4

자동차 소유자가 납부하는 세금

4-1

자동차세/경자동차세



(1) 자동차세/경자동차세 환경성능할

자동차나 경자동차를 구입하면

자동차나 경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자동차세/경자동차세 환경성능할을 납부합니다.

(환경성능할의 세율은 자동차 및 경자동차의 연비성능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자동차세/경자동차세종별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4월 1일 현재 자동차(배기량이 660cc를 넘는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세종별할을 납부합니다(※).

(세액은 배기량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납부금액이나 납부방법 등에 관한 내용은 도도부현에서 송부되는 서면에 적혀 있습니다.

경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4월 1일 현재 경자동차(배기량이 660cc 이하인 차)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경자동차세종별할을 납부합니다(※).

(세액은 배기량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납부금액이나 납부방법 등에 관한 내용은 시구정촌에서 송부되는 서면에 적혀 있습니다.

4-2

자동차 중량세

자동차나 경자동차의 차량검사 등을 받을 때

차량검사 등을 받을 때 자동차나 경자동차의 중량 등에 따라 자동차 중량세를 납부합니다.

5

고정자산세

- 1월 1일 현재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세금을 납부합니다.

①토지 ②가옥 ③상각자산

- 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 세액은 자산의 가격을 토대로 시구정촌이 산출합니다.
- 세금은 자산 소재지의 시구정촌에 납세합니다.

6

세금에 관한 문의처

6-1

국세에 관한 문의

국세에 관한 문의는 다음을 이용해 주십시오.



(1) 전화상담센터

국세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에 관해서는 다음의 '전화상담센터'에서 영어 상담을 집중적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 | | |
|-----------------|---------------------|
| • 도쿄국세국 전화상담센터 | 03-3821-9070 |
| • 오사카국세국 전화상담센터 | 06-4965-8298 |
| • 나고야국세국 전화상담센터 | 052-971-2059 |

(2) 택스앤서(tax answer)(자주 있는 세금에 대한 질문)

자주 있는 세금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일반적인 답변을 세금의 종류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nta.go.jp/english/taxes/index.htm>



(3) 국세청 홈페이지의 안내

국세에 관한 신고, 납세 등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www.nta.go.jp/english/index.htm>



6-2 지방세에 관한 문의

국세에 관한 문의는 다음을 이용해 주십시오.

- ① 총무성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

외국인의 개인주민세에 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
czaisei_seido/individual-inhabitant-tax.html](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individual-inhabitant-tax.html)



- ②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는 각 도도부현이나 각 시구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교통규칙

도로는 많은 사람과 차량이 통행합니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규칙을 잘 지키고 교통매너를 실천하는 것이 사회인의 의무입니다.

1-1

보행시 유의할 점

(1) 통행시

사람은 오른쪽, 차량은 왼쪽의 대면통행이 기본

- 도로의 오른쪽 끝을 통행합니다.
- 보도나 보행자 통행을 위한 길 가장자리 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곳을 통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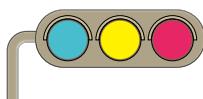


(2) 횡단 방법

안전한 장소를 횡단

- 신호기가 있는 장소나 횡단보도, 육교, 횡단용 지하도가 가까이 있을 때에는 그 곳을 횡단합니다.
- ‘보행자 횡단금지’의 표지가 있는 곳은 절대로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 횡단보도에서는 손을 들거나 운전자를 향해 얼굴을 돌리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횡단합니다.
- 횡단 중에도 차가 오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신호등의 의미



- 녹색신호: 전진합니다.
- 노란신호, 녹색신호의 점멸: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횡단중이라면 신속하게 횡단하거나 횡단을 멈추고 되돌아갑니다.
- 빨간신호: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 누름단추식 신호기의 경우: 버튼을 누르고 푸른 신호로 바뀐 것을 확인한 후에 횡단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장소를 횡단할 경우

- 좌, 우가 모두 잘 보이는 곳에서 횡단합니다.
- 건너기 전에 일단 멈춰서서 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가 오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자동차가 접근하고 있을 때에는 자동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 횡단중에도 차가 오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면서 곧장 걸어갑니다.

철길 건널목의 통행방법

- 철길 건널목 바로 앞에선 반드시 멈춰서서 좌측과 우측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 경보기가 울릴 때나 차단기가 내려오기 시작하면 절대로 철길 건널목에 들어서서는 안 됩니다.

(3) 야간에 도로를 걸을 경우

밝은 색 복장과 반사재의 착용

야간에 도로를 걸을 때에는 흰색과 노랑색의 밝은 색 복장을 하고 반사재용품이나 LED라이트를 몸이나 소지품에 장착하여 자동차에서 잘 보이도록 합시다.

1-2 자전거를 탈 때의 유의점

(1) 자전거의 통행 규칙 '자전거 안전이용 5 대 규칙'의 준수



제 1 규칙 차도가 원칙, 좌측을 통행. 보도는 예외, 보행자를 우선

- 자전거는 차량이므로 원칙적으로 차도의 좌측에 붙어 통행합니다.
-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행합니다.
- 도로의 좌측에 있는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할 수 있지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보도통행 가능 표지가 있는 보도에서는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 만 13 세 미만의 어린이나 만 70 세 이상의 고령자, 몸이 불편한 사람은 보도를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차도 쪽을 금방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 통행해야 합니다.
-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제 2 규칙 교차로에서는 신호와 일시정지를 지키며 안전 확인

-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뀌고 나서 안전을 확인하고 횡단합니다.
- 일시정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고 안전을 확인합니다.

제 3 규칙 야간은 라이트를 점등

- 야간은 라이트를 점등해야 합니다.
- 자전거를 타기 전에 조명이 켜지는지 점검합시다.



제 4 규칙 음주운전은 금지

- 술을 마시면 절대로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제 5 규칙 어린이는 헬멧을 착용

- 자전거를 탈 때는 승차용 헬멧을 씁니다.
 - 다른 사람을 자전거에 승차시킬 때는 승차용 헬멧을 써우도록 합시다.
-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유아를 유아용 의자에 태울 때에는 어린이에게 승차용 헬멧을 써우도록 합시다.

기타 규칙

- 2인 승차나 병렬주행은 하지 맙시다.
- 운전 중에 우산을 사용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맙시다.
- 대인손해보험 등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해보상책임이나 자신의 부상에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 특히 손해보상책임을 보상하는 "자전거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은 도쿄도나 오사카부 등 많은 지역에서 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lit.go.jp/road/bicycleuse/promotion/index.html>



(2) 교차로 통행법

우회전할 경우

- 신호등이 있을 때
녹색신호에서 교차로의 좌측을 따라 건너편의 모퉁이까지 직진한 후, 멈춰서 방향을 바꿉니다. 대면하는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면 전후좌우의 안전을 확인하고 직진합니다.
- 신호등이 없을 때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도로의 좌측 가장자리를 따라 건너편까지 직진한 후, 안전을 확인한 후에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어 직진합니다.

좌회전할 경우

좌회전했을 때 횡단보도를 횡단중인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시다.

자전거 횡단대가 있는 장소

교차로나 그 근처에 자전거 횡단대(횡단용 자전거도로)가 있을 때에는 그곳을 통행합니다.



1-3

특정 소형 원동기 자전거(전동 스쿠터/킥보드 등)를 운전하는 경우

-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는 데 운전면허는 필요하지 않지만, 16 세 미만은 운전이 금지됩니다.
- 차량이 ‘특정 소형 원동기 자전거’의 지정 크기 및 구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운전에는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 번호판을 부착하고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전동 스쿠터는 원칙적으로 도로의 좌측을 주행해야 합니다. 우측으로 주행하지 마십시오.
- 모든 신호등과 표지판을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 음주를 한 후에는 절대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음주를 한 사람에게 전동 스쿠터를 빌려주거나 음주 후 전동 스쿠터를 탈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술을 권하지 마십시오.
- 두 명이 함께 타거나 나란히 주행하지 마십시오.
- 운전 중에 우산을 사용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주행을 멈추고 부상자가 있으면 도와주며,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십시오.
- 전동 스쿠터를 탈 때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pa.go.jp/english/bureau/traffic/index.html>



1-4

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를 운전할 경우

-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위반행위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관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도로의 좌측을 통행해야 합니다.
- 보행자나 자전거의 측면을 지날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거나 서행해야 합니다.
- 음주를 한 후에는 절대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음주를 한 사람에게 자동차를 빌려주는 행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술을 권하는 행위, 술을 마신 사람에게 운전을 부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동승자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 만 6 세 미만의 어린이는 차일드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오토바이를 탈 때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pa.go.jp/english/bureau/traffic/index.html>



2

운전면허

일본에서 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나 일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방법은 다음의 3 가지가 있습니다.

- ① 일본의 운전면허를 취득
- ②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
(제네바 조약 체결국이 발급한 것으로 정해진 양식에 일치하는 것)
- ③ 대사관 등에서 작성하여 일본어번역문을 첨부한 외국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
(스위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모나코, 대만의 6 개 나라와 지역)

※ 모페드는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므로 ①~③ 중 한가지 방법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 ②와 ③의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최장 1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pa.go.jp/english/bureau/traffic/index.html>



2-1

일본의 운전면허 취득

일본의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① 일본의 운전면허시험을 치러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 운전면허센터 등에서 기능시험, 학과시험, 적성시험(시력 등)을 치러 합격해야 합니다.
 - 자동차학교(지정자동차교습소)를 졸업하면 기능시험이 면제됩니다.
- ② 외국의 운전면허를 일본의 운전면허로 변경하는 방법
 - 외국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운전에 대한 필요한 지식, 기능 등을 확인하여 운전하는 것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이 되면 학과시험 등 기능시험이 면제됩니다.
 - 외국의 운전면허 취득 후 그 나라에 3개월 이상 체재하였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도도부현에 있는 경찰 운전면허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경찰 운전면허센터 등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일본의 운전면허증 간신 등

운전면허 간신



- 일본의 운전면허증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소로 간신수속에 필요한 것들이 쓰여진 엽서가 송부됩니다. 기한 내에 간신신청을 하여 주십시오.
- 간신을 하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운전면허증의 주소 등의 변경

- 운전면허증에 쓰여진 성명이나 주소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 등에서 변경신청을 하여 주십시오.
-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문의하십시오.

2-3 운전면허 점수제도

- 교통위반이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일정 점수가 부여됩니다.
- 과거 3년간의 점수합계에 따라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3

자동차(오토바이 포함)의 보유

3-1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는 등록하지 않으면 그 자동차는 공공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나 사용자 이름, 주소 등에 변경이 있을 때나 일본에서 사용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도 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1) 등록신청이 필요할 때와 등록신청 명의

사용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신청

- 사용하지 않았던 자동차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 신규 등록

사용중인 자동차의 등록신청

- 자동차 소유자나 사용자의 이름,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을 때 → 변경 등록
- 자동차 소유자가 바뀔 때 → 이전 등록
- 자동차를 폐차할 때와 자동차를 수출할 때 → 말소 등록

(2) 등록신청을 받는 장소와 문의처

- 등록신청은 전국 91 개소의 운수지국이나 자동차검사등록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등록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은 자택에서 가까운 운수지국이나 자동차검사등록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운수지국 안내

<https://www.jidoushatouroku-portal.mlit.go.jp/jidousha/kensatoroku/list/index.html>



3-2 차고지증명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주차시킬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어 자동차 등록 신청을 할 때에는 확보한 차고지 위치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자동차 보관장소 증명서(차고지증명서)를 발부받아야 합니다.



또한, 경자동차는 보관장소 위치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고지 신청은 자동차는 시, 정, 일부의 촌, 동경도의 23 구입니다. 그리고 경자동차는 일부의 시, 동경도의 23 구입니다.

자세한 차고(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보관장소(주차장) 위치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3 자동차(일부의 오토바이를 포함) 검사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법률로 정해진 일정 기간마다 자동차 검사(차검)를 받아야 합니다.
- 차검을 받는 방법에는 2 가지가 있습니다.

① 정비공장에 차검을 의뢰하는 경우

일본에서는 현재 약 90%의 사람이 차검을 정비공장에 의뢰하고 있어, 자동차의 정비나 검사를 본인이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검 의뢰에 관해서는 파란색 간판(지정 공장), 노란색 간판 또는 녹색 간판(인정 공장)을 설치한 가까운 정비공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인이 차검을 받는 경우

일본에서는 현재 약 10%의 사람이 본인이 직접 차검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엔 국가 시설인 운수지국 등에 자동차를 가지고 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검을 받을 수 있는 운수지국 등은 전국에 93 개소(경자동차의 경우는 89 개소)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정비 등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받는 차검 절차에 대해서는 가까운 운수지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운수지국 안내

<https://www.jidoushatouroku-portal.mlit.go.jp/jidousha/kensatoroku/list/index.html>



경자동차에 대한 안내

https://www.keikenkyo.or.jp/procedures/procedures_000134.html



- 차검에 합격하면 유효기간이 명시된 차검증과 검사표장(스티커)이 발행되므로 스티커를 자동차의 앞유리창(오토바이는 차량 번호판 왼쪽 위)에 부착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때는 반드시 차검증을 휴대해 주십시오.

3-4 자동차보험

(1)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이란

-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가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입니다.
- 교통사고로 상대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될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법률에 의해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차나 오토바이(전동 스쿠터나 모페트를 포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증명서가 발행되므로, 자동차를 운행할 때는 반드시 증명서를 휴대해 주십시오. 또한 배기량이 250cc 이하인 오토바이에는 보험(공제) 표장(스티커)도 발행되므로, 번호판의 좌상부(원동기 부착 자전거의 경우는 번호판의 보기 쉬운 부분)에 부착해 주십시오.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상대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상대방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거액의 치료비나 위자료를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 자동차 사고로 심각한 영구 장애가 발생한 경우, 나스 바 (National Agency for Automotive Safety & Victims' Aid)로부터 간병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스바(NASVA)에 문의하십시오.

배상책임보험·공제제도에 대하여

<https://www.mlit.go.jp/jidosha/jibaiseki/about/overview/index.html>



나스바 소개

https://www.mlit.go.jp/jidosha/jibaiseki/nini_nasva/index.html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려면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은 다음의 취급점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① 보험회사(공제조합)의 지점, 대리점 등
- ② 차나 오토바이 판매점 등
- ③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오토바이는 우체국(일부 취급하지 않는 우체국도 있습니다), 일부 보험회사(공제조합), 인터넷, 편의점

* 가입절차에 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가까운 취급점에 문의하십시오.

(2) 임의보험(공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에 가입했어도 물손사고(차 등의 물건이 손상된 경우) 등은 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는 ‘임의보험(공제)’이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과 임의보험(공제)의 차이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공제)	임의보험(공제)
가입방법	강제가입	임의가입(민간의 보험회사 (공제조합) 등)
보상대상	대인배상 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인신상해 • 차의 보상 등 <p>계약에 따라 다양함</p>
보상액	상한 있음	상한은 계약에 따라 다양함

4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대응

4-1

차량의 운전을 정지

- 즉시 차량의 운전을 중지하십시오.
-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차량을 갓길이나 공터 등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킵니다.

4-2

구급·경찰에 통보



-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구급차(전화번호: 119 번)를 부릅니다.
- 구급차가 올 때까지는 부상자를 불필요하게 움직이게 하지 말고, 오퍼레이터의 지시에 따라 지혈 등 가능한 범위의 구호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 부상자 유무에 상관없이 경찰(전화번호: 110 번)에 통보해야 합니다.
- 경찰관이 올 때까지 사고현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 경찰관이 도착하면 사고 상황을 보고하고 현장 확인을 받습니다.



4-3

의사의 진단

- 사고 발생시에는 큰 부상이 아닌 경상이라 생각해도 나중에 큰 부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속하게 의사의 진단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pa.go.jp/english/bureau/traffic/index.html>



4-4

교통사고 증명서의 신청

- 교통사고 후의 여러가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 ‘교통사고 증명서’는 자동차 안전운전센터에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사고 신고를 한 경찰서에 문의해 주십시오.
-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고의 ‘교통사고 증명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 했다면 반드시 경찰에 통보해 주십시오.

자동차 안전운전센터

<https://www.jsdc.or.jp/center/tabcid/106/Default.aspx>





1

긴급시의 전화

1-1

응급환자(질병 부상), 화재 등(119 번)

응급환자(질병 부상)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119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 ① 119 번으로 전화를 하면 오퍼레이터가 ‘가지데스카(화재입니까), 규큐데스카(응급입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규큐데스(응급입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 ② 구급차를 부를 장소나 찾기 쉬운 건물 등을 알려주십시오.
- ③ 환자의 증상과 연령을 알려주십시오.
- ④ 당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다음 웹사이트에서 구급차 부르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국어지원).

<https://www.fdma.go.jp/publication/portal/post1.html>



화재발생시

- ① 119 번에 전화하면 오퍼레이터가 ‘가지데스카(화재입니까), 규큐데스카(구급입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가지데스(화재입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 ② 화재가 발생한 장소를 알려주십시오.
- ③ 당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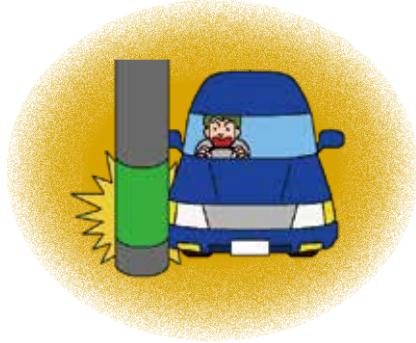
1-2

교통사고·범죄 피해 등(110 번)

- 교통사고, 범죄(사건) 피해 등으로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때에는 110 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 110 번으로 전화하면 오퍼레이터가 다음과 같이 질문할 것입니다. 침착하게, 가능한 한 정확히 답해 주십시오.

- 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 ② 당신의 이름과 연락처 등
- ③ 사고의 상대 또는 범인의 성별, 인원수, 연령, 복장 등
- ④ 다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 본인이 전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원 포인트:

공중전화로 긴급 신고

공중전화로 110(경찰), 118(해경), 119(소방)에 긴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동전이나 전화카드는 필요 없습니다.

- 긴급신고 버튼 (빨간색 버튼)이 있는 공중전화의 경우
수화기를 들고 긴급신고 버튼을 누른 후 110 번 등을 누릅니다.
- 긴급신고 버튼이 없는 공중전화의 경우
수화기를 들고 그대로 110 번 등을 누릅니다.

◆ 긴급신고버튼이 있는 전화기



◆ 긴급신고버튼이 없는 전화기



2

재해

2-1

태풍과 집중호우



- 환절기에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만나 형성된 전선이 일본 상공에 머물어 호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 태풍이나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일본쪽을 통과할 때 넓은 범위에 걸쳐 큰 비가 내립니다.
- 지형의 영향 등으로 강한 상승기류가 일어나 발달한 구름(적란운)이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하여 같은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큰 비(집중호우)가 내립니다.
- 이러한 호우로 인해 토사유출과 홍수가 발생하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1) 하천의 범람

- 큰 비 등으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여 홍수가 발생하면 건물이 물에 잠기거나 사람이 떠내려가는 일이 생깁니다.
- 홍수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미리 대비한다

평소에 해저드맵(재해예측지도) 등을 사용해서 물에 잠길 우려가 있는 장소나 피난장소 자택 등에서 피난장소까지의 안전한 경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 포인트:

해저드맵(재해예측지도)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disaportal.gsi.go.jp/>



큰 비의 경우

- ① 기상청 등이 발표하는 방재기상정보 등을 참조하여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스스로 판단해서 대피합니다.
- ② 시구정촌에서 대피(피난)정보가 발표되면 위험한 장소에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 ③ 대피방법에 대해서는 ‘3 피난’을 참조해 주십시오.

(2) 토사재해

토사재해는 폭우나 지진으로 인해 산사면이나 절벽이 붕괴되거나, 홍수 시 강 주변에서 흙, 돌, 나무가 쓸려 내려올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재해는 건물을 파괴하거나 매몰시키고 도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토사재해로부터 생명을 지키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미리 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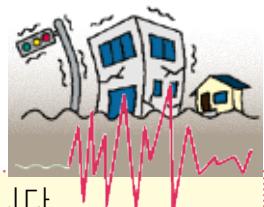
평소에 해저드맵 등을 사용해서 토사재해 우려가 있는 장소나 피난장소, 자택 등에서 피난 장소까지의 안전한 경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비의 경우

- ① 기상청 등이 발표하는 방재기상정보 등을 참조하여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스스로 판단해서 대피합니다.
- ② 시구정촌에서 대피(피난)정보가 발표되면 위험한 장소에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 ③ 대피방법에 대해서는 ‘3 피난’을 참조해 주십시오.

2-2 지진

- 일본 주변에는 다수의 플레이트가 존재하고 있어, 이로 인해 복잡한 힘들이 가해지고 있는 연유로 세계에서도 유수의 지진 다발 지대입니다.
-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자신의 생명은 스스로 지킨다, 지역사람들과 협력하여 생명을 지킨다, 라는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 지진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려면 평소에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미리 대비한다

- ①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할 장소를 미리 가족 모두가 정해 둡니다.
- ② 지역의 방재훈련에 참가하여 지역에서의 대처에 대해 알아둡니다.
- ③ 최저 3 일분(가능하면 1 주일 정도분)의 식량과 마실 물, 부상치료에 사용되는 상비약 등을 준비합니다.
- ④ 가구가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 둡니다. 혹시 넘어지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배치에 신경을 씁니다.

원 포인트:

매그니튜드와 진도

- 매그니튜드는 지진의 크기를 숫자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매그니튜드의 수치가 1 커지면 에너지는 약 32 배가 됩니다.
- 진도란 그 장소에서의 지진에 따른 흔들림의 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진도를 10 단계(0, 1, 2, 3, 4, 5 약, 5 강, 6 약, 6 강, 7)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보는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경우

지진 발생시에는 침착하게 행동하십시오.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지진 발생시에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① 침착한 행동

- 가옥이나 건물 안에 있을 때

흔들림에 의한 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튼튼한 테이블 등에 몸을 숨기고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릴 것.

- 외출했을 때

건물 가까이는 간판이나 건물벽, 유리창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것.

- 차에 타고 있을 때

흔들림을 감지했다면 허둥대지 말고 차를 도로 좌측에 정차시키고 엔진을 끌 것. 자동차키를 꽂은 채로 차에서 내려, 걸어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것.

② 불 관리

지진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더욱 커집니다.

- 흔들림이 진정되면 부엌이나 스토브 등의 불을 끌 것.
- 만약 불이 났을 때에는 소화기 등으로 할 수 있는 한 불을 끌 것.
- 지진발생 후에는 가스가 새어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스에 불을 붙이지 말 것.

③ 안전한 장소로 대피

지진으로 인해 가옥이 무너지거나 화재 발생에 의해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산 근처 등에서는 산사태등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흔들림이 진정되면 신속하게 관찰 시구정촌이 지정하는 대피장소(피난장소)로 대피할 것.
- 지진으로 인한 정전이 복구된 후 전기제품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난하기 전에 전류 차단기를 내릴 것.

④ 마을 주민들과 협력, 서로 돋기

재해 발생시에는 주변 이웃들과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 협력하여 서로 도울 것.

⑤ 정확한 정보의 취득

큰 지진이 발생한 후에는 여러 정보들이 흘러나옵니다.

- TV, 라디오, 휴대단말기(노트북, 휴대전화 등)나 방재행정무선의 정보 등을 통해서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여 냉철하게 행동할 것.

원 포인트:

긴급지진속보(경보)

- 일본 기상청은 강한 흔들림이 예상될 때 긴급지진속보를 발표합니다.
- 긴급지진속보는 TV, 라디오, 휴대단말기, 방재행정무선 등으로 전달됩니다.

지진과 긴급지진속보에 대한 비디오(영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https://www.jma.go.jp/jma/kishou/books/sokuho_dvd/index.html

**긴급지진속보를 보고 들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먼저 신변 안전부터 지켜주세요!**



2-3

지진해일(쓰나미)

- 해저 밑에서 커다란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해저가 솟아 오르거나 가라앉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해수면이 변동하여, 큰 파도가 일어, 사방으로 일렁이는 것이 지진해일입니다.
- ‘지진해일 전에는 반드시 물이 빠진다’라고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미리 대비한다

지진해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해저드맵 등을 이용하여 대피장소를 확인하고 자택 등에서 대피장소까지의 안전한 경로를 확인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진해일이 올 것 같을(왔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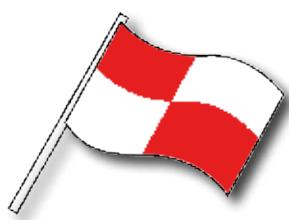
지진해일이 해안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대피를 시작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대피하십시오.

- 바다나 하구 부근에서 강한 흔들림을 느꼈거나 약한 흔들림이라도 긴 시간 천천히 지진을 느꼈을 경우에는 즉시 해안이나 하구에서 벗어나, 높은 지대나 피난빌딩 등 높은 장소로 대피할 것.
- 지진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기상청 지진해일 경보가 발표됐을 때나 시구정촌에서 피난 지시가 나왔을 때는 즉시 해안이나 하구에서 떨어진 높은 곳이나 피난빌딩 등 높은 장소로 대피할 것.
- 정확한 정보를 TV, 라디오, 휴대단말기, 방재행정무선, 영어판 기상청 홈페이지나 Safety tips 등을 통하여 얻을 것.
- 지진해일은 계속해서 밀려오므로 경보,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해안이나 하구에 가까이 가지 말 것.

원 포인트:

지진해일 플래그

- 2020년 6월부터 해수욕장 등에서 적색과 백색의 격자 무늬 깃발 ‘지진해일 플래그’를 이용하여 대규모 지진해일 경보, 지진해일 경보, 지진해일 주의보가 발표되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알리는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 ‘지진해일 플래그’를 이용함으로써 청각 장애인이나 파도소리나 바람 때문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유령 중인 사람, 그리고 외국인에게도 지진해일 경보 등의 발표 등을 알릴 수 있게 됩니다.



‘지진해일 플래그’에 대하여(일본어)

https://www.data.jma.go.jp/svd/eqev/data/tsunami_bosai/tsunami_bosai_p2.html



‘지진해일 플래그’에 대하여(영어)

https://www.data.jma.go.jp/eqev/data/en/tsunami/tsunami_flag.html



2-4

화산 분화

- 일본에는 111 개의 활화산이 있습니다.
- 화산이 분화하면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화산폭발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행동하십시오.

미리 대비한다

- 사전에 해저드맵 등을 통해 화산 현상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둡니다.
- 등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 ① 문화경보나 문화경계레벨, 해저드맵 등의 화산에 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 ② 등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③ 통신기기나 헬멧등을 준비합니다.



원 포인트:

문화경계레벨

- 화산 활동의 상황에 따라 "경계가 필요한 범위"와 "취해야 할 행동"이 바로 알 수 있게 발표되는 정보입니다.
- 일본에 있는 활화산 중 49 개의 화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문화경계레벨에는 다음과 같이 5 단계가 있습니다.

레벨 5피난 (위험한 거주 지역으로부터의 피난 등이 필요함)

레벨 4고령자 등 피난 (경계가 필요한 거주 지역에서 고령자 등 배려가 필요한 사람의 피난, 주민의 피난 준비 등이 필요함)

레벨 3입산 규제 (상황에 따라 고령자 등의 배려가 필요한 사람의 피난 준비 등. 등산 금지 · 입산 규제 등 위험한 지역으로의 입산 규제 등)

레벨 2화구 주변 규제 (화구 주변으로의 입산 규제 등)

레벨 1활동 증가 가능성 (규제 없음)

문화경보, 문화경계레벨에 대하여(영어)

<https://www.data.jma.go.jp/vois/data/tokyo/STOCK/kaisetsu/English/level.html>



화산이 분화할 것 같으면(분화했으면)

- 기상청이 발표하는 문화속보, 문화경보, 문화경계레벨을 듣고 대피할 상황이면 스스로 판단하여 대피합니다.
- 시구정촌에서 피난 지시 등이 발령된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 등산 중에 위와 같은 정보를 입수했거나 분화가 발생했을 때에는 화산재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합시다.

- ① 즉시 화구에서 멀리 도망갑니다.
- ② 산장이나 쉘터, 바위그늘 등으로 대피합니다.
- ③ 헬멧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3

대피(피난)

3-1

피난장소

피난장소는 재해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장소나 시설을 말합니다.

재해가 발생할 것 같을(발생했을) 때

- 피난 정보 등을 참조하여 위험한 장소로부터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 미리 살고 있는 지역의 피난장소를 확인합니다.
- 피난장소는 해저드맵이나 각 시구정촌의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미 홍수가 난 경우 등 피난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다른 안전한 장소로 대피(근처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거나 그것도 힘든 상황이라면 가옥의 2층 이상의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하는 등 조금이라도 목숨을 지킬 수 있는 행동을 취하도록 합시다.

3-2

피난정보

피난정보는 재해가 발생할 것 같은(발생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대피하도록 알리는 지시를 말합니다. 일본의 재해대피를 단계적으로 지시하는 피난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계레벨 3 고령자 등 피난

- 어떤 피난정보인가?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피에 시간이 걸리는 고령자나 어린 아이 등에게 대피를 재촉하는 정보입니다.

- 이 피난정보가 나오면

다음과 같이 위험한 장소로부터 대피를 시작합니다.

- ① 고령자
- ② 장애인
- ③ 어린이
- ④ 그 밖에 혼자 힘으로 피난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대피에 시간이 걸리는 사람(임산부 등)
- ⑤ ①~④의 사람을 돌보는 사람
- ⑥ 신변의 위험을 느끼는 사람

그 외의 사람도 필요에 따라 평소 행동을 보류하거나 대피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경계레벨 4 피난 지시

- 어떤 피난정보인가?
재해가 발생 우려가 높아졌을 때 발표되는 정보입니다.
- 이 피난정보가 나오면
위험한 장소로부터 모두가 다음과 같은 장소로 안전하게 대피합니다.

- ① 피난장소(대피처)
- ② 친척이나 지인의 안전한 집, 호텔, 여관 등

또 해저드맵 등을 확인하고 다음 3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스스로 판단되는 경우 실내에 머무르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① 홍수로 인해 집이 무너지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구역(가옥 도과 등 범람 상정 구역)에 있지 않다
- ② 침수 위험이 없는 높은 건물에서 살고 있다
- ③ 침수가 빠질 때까지 참을 수 있고 물이나 식량 등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

경계레벨 5 긴급안전확보

- 어떤 피난정보인가?
더욱 상황이 악화되어 이미 재해가 발생했거나 재해가 임박한 상황에서 언제 피해가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경우에 발표되는 정보입니다.
- 이 피난정보가 나오면
피난을 하지 않은 경우 생명의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신변 안전을 확보합니다. 피난 장소로 가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조금이라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 즉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해 주십시오.

- ① 가까이에 있는 튼튼한 건물의 높은 곳으로 대피한다
- ② 집의 2 층 이상의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등





‘경계레벨’에 따른 피난정보

~경계레벨이란?~

- 지진해일 이외에 수해나 토사재해가 금방이라도 발생하려 할 때에 취해야 하는 행동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발표되는 정보입니다.
- 2019년부터 피난정보나 방재기상정보와 함께 발표됩니다.
- 경계레벨은 다음과 같은 5 단계가 있습니다.

경계레벨 1 재해에 대한 마음가짐을 높인다 (비나 강에 대한 정보를 TV나 인터넷으로 확인합니다)

경계레벨 2 대피에 대비하여 대피시 취할 행동을 확인 (자신이 있는 장소가 위험한 장소인지, 위험한 경우 어디로 어떻게 대피할지 확인합니다)

경계레벨 3 위험한 장소로부터 고령자 등은 대피 (고령자와 어린이, 대피에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은 대피합니다)

경계레벨 4 위험한 장소로부터 전원 대피 (모두 위험한 장소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경계레벨 5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한 행동을 취한다 (재해가 이미 일어났거나 임박한 상태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3-3

대피방법

실제로 대피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 대피 전에 반드시 불을 끌 것.
- 대피할 때에는 소지품을 가능한 한 적게 하고 등에 메거나 하여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할 것.





재해용 전언 서비스

- 큰 지진이 발생하면 전화 연결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는 재해용 전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총무성 웹사이트에도 개요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https://www.soumu.go.jp/menu_seisaku/ictseisaku/net_anzen/hijyo/dengon.html



재해용 전언 디아얼(171)

일반전화나 휴대전화에서 '171'에 전화하면 음성안내에 따라 간단한 방법으로 전언의 녹음이나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TT東日本 : <https://www.ntt-east.co.jp/saigai/voice171/>

NTT西日本 : <https://www.ntt-west.co.jp/dengon/>

NTT EAST

NTT WEST



재해용 전언판(web171)(영어·중국어·한국어·일본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일반전화나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안부 정보를 등록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 이용하십시오.

<https://www.web171.jp/web171app/topRedirect/>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NTT東日本 : <http://www.ntt-east.co.jp/saigai/web171/>

NTT西日本 : <https://www.ntt-west.co.jp/dengon/web171/>

NTT 東日本

NTT 西日本



재해용 전언판(휴대전화)

휴대전화 회사도 전언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NTT DOCOMO

KDDI (au)



여기를 통해 이용하십시오.

NTT도코모 : <http://dengon.docomo.ne.jp/top.cgi>

KDDI(au) : <http://dengon.ezweb.ne.jp/>

소프트뱅크 /

원모바일 : <http://dengon.softbank.ne.jp/>

라쿠톤 모바일 : <https://public-safety.mobile.rakuten.co.jp/?lang=ja>

SoftBank /
Y!mobile

Rakuten
Mobile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NTT도코모 : https://www.nttdocomo.co.jp/info/disaster/disaster_board/index.html

KDDI(au) : <https://www.au.com/mobile/anti-disaster/saigai-dengon/>

소프트뱅크 : <https://www.softbank.jp/mobile/service/dengon/>

원모바일 : <https://www.ymobile.jp/service/dengon/>

라쿠톤 모바일 : <https://public-safety.mobile.rakuten.co.jp/info/public-safety/ja/service.html>

Rakuten
Mobile

NTT DOCOMO

KDDI (au)

SoftBank

Y!mobile



3-4

재해 발생 시 도움이 되는 기상정보의 수집

기상청은 재해시에 도움이 되는 기상정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상정보는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호우나 지진에 관한 정보(다국어 지원)

<https://www.jma.go.jp/jma/kokusai/multi.html>



방재정보

재해에 대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www.jma.go.jp/jma/en/menu.html>



기키쿠루(위험도분포)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장소를 지도상에서 확인하십시오.

침수(낮은 장소가 물에 잠기는 재해)

https://www.jma.go.jp/bosai/en_risk/#elements:inund



<https://www.jma.go.jp/jma/kokusai/multi.html>



홍수(강물이 넘치는 재해)

https://www.jma.go.jp/bosai/en_risk/#elements:flood



<https://www.jma.go.jp/jma/kokusai/multi.html>



토사재해(산이나 절벽경사지가 무너지는 재해)

https://www.jma.go.jp/bosai/en_risk/#elements:land



<https://www.jma.go.jp/jma/kokusai/multi.html>



분화경계레벨

화산정보

<https://www.jma.go.jp/bosai/map.html#5/34.5/137/&contents=volcano&lang=en>



<https://www.jma.go.jp/jma/kokusai/multi.html>





호우특별경보

- 기상청에서 호우특별경보를 발표할 때가 있습니다.
- 호우특별경보는 수십 년에 한 번의 호우가 예상되며, 종대한 재해의 발생 위험이 아주 높을 때 발 표됩니다.



기키쿠루(위험도분포)

- 기상청은 강우 예보 등을 바탕으로 침수피해, 홍수피해, 토사재해가 곧일어날 법한 위험한 장소를 지도상에 표시한 '기키쿠루(위험도분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키쿠루(위험도분포)는 기상청 웹사이트에서 10 분 단위로 제공합니다.
- 스마트폰 등으로 본인이 있는 지역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 높은지 정보를 확인하여 신속히 대피합 시다.



재해시 유익한 정보가 제공되는 앱 'Safety tips'

- 일본에는 외국인 여행자에게 재해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 있습니다.
- 이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하면 자신의 주변에서 다음과 같은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통 지해 줍니다.
 - ① 긴급지진속보 (곧 강한 지진이 오므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라는 경계의 메시지)
 - ② 지진해일경보 (지진해일이 오므로 높은 곳으로 대피하라는 경계의 메시지)
 - ③ 기상 등에 관한 특별경보 (수십 년에 한 번 있을 법한 호우나 폭풍 등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최대급의 경계 메시지)
 - ④ 문화속보 (문화하였으니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라는 경계의 메시지)
 - ⑤ 태풍 정보 (태풍이 접근하고 있으므로 몸을 보호하라는 경계 요망)
 - ⑥ 열사병 정보 (열사병 발생 위험이 있으니 몸을 보호하라는 주의 환기)
- 재해 발생시에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① 재해시 어떠한 행동이 올바른지 판단할 수 있는 플로차트
 - ② 주변의 일본인과 대화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카드
- 재해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링크

Android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jp.co.rcsc.safetyTips.android>

iPhone : <https://itunes.apple.com/jp/app/safety-tips/id858357174?mt=8>

Safety tips



Android



iPhone





1

일본의 주거에 대하여

1-1

소유 주택

소유권이 있는 주택을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유 주택’이라고 합니다. ‘소유 주택’에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같은 형태가 있는데 주택을 짓거나 구입할 경우 여러 가지 절차와 계약 등이 필요합니다.

1-2

공영 주택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지방공공단체가 저가의 집세로 빌려주는 임대주택입니다. 도도부현이나 시구정촌별로 수입기준 등의 입주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1-3

UR임대주택

UR도시기구가 관리하는 주택으로 임주시 UR이 정한 기준 월수입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이 있지만 일정한 체류자격(2-2 참조)이 있으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1-4

민간 임대주택

일반적인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임대료 등을 지불하면 누구나 주택을 빌려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은 주택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입주에 관하여

2-1 공영 주택

- 공영 주택은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저소득자가 대상이므로 관리자인 도도부현이나 시구정촌별로 수입기준 등의 입주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외국인은 이러한 입주요건 외에도 1년 이상의 체류자격이나 체류실적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공영 주택에 입주하려면 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도도부현이나 시구정촌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입주요건이나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을 관리하는 도도부현이나 시구정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 UR임대주택

- 수입이 UR도시기구가 규정하는 기준 월수입액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체류자격이 외교, 공용, 특별영주자, 중장기체류자(영주자를 포함)인 사람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신청방법이나 모집상황 확인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UR영업센터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 민간 임대주택

- 일본에서 민간 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외국인을 위해 “주택임대 가이드북”,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 매뉴얼”을 작성하였습니다.
- “주택임대 가이드북”에서는 다음과 같이 방을 구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가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일본에서의 임대주택 구하기와 계약의 흐름
- ② 필요한 서류와 비용
- ③ 입주 절차
- ④ 일본에서의 주택 사용과 규칙
- ⑤ 퇴거 절차
- ⑥ 임대시 알아두면 유용한 부동산 용어 등



-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 매뉴얼”에서는 일본에서 주택임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와 외국어로 대응할 수 있는 부동산 점포의 웹사이트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성 웹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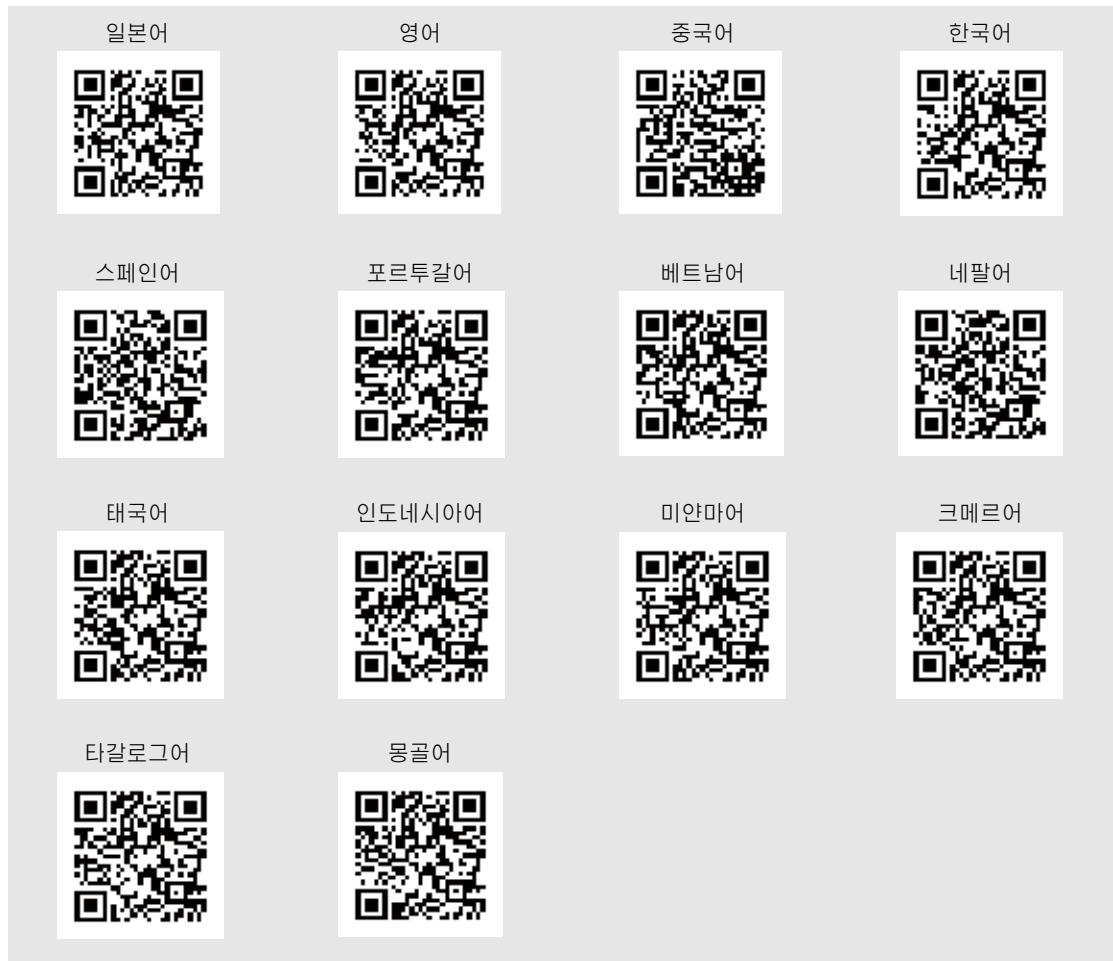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lit.go.jp/jutakukentiku/house/jutakukentiku_house_tk3_000017.html



“주택임대 가이드북”

일본어	JAPANESE	http://www.mlit.go.jp/common/001317843.pdf
영어	ENGLISH	http://www.mlit.go.jp/common/001317844.pdf
중국어	CHINESE	http://www.mlit.go.jp/common/001317845.pdf
한국어	KOREAN	http://www.mlit.go.jp/common/001317846.pdf
스페인어	SPANISH	http://www.mlit.go.jp/common/001317847.pdf
포르투갈어	PORTUGUESE	http://www.mlit.go.jp/common/001317848.pdf
베트남어	VIETNAMESE	http://www.mlit.go.jp/common/001316936.pdf
네팔어	NEPALI	http://www.mlit.go.jp/common/001316937.pdf
태국어	THAI	http://www.mlit.go.jp/common/001312581.pdf
인도네시아어	INDNESIAN	http://www.mlit.go.jp/common/001312584.pdf
미얀마어	MYANMAR	http://www.mlit.go.jp/common/001312587.pdf
크메르어	KHMER	http://www.mlit.go.jp/common/001312589.pdf
타갈로그어	TAGALOG	http://www.mlit.go.jp/common/001312590.pdf
몽골어	MONGOLIAN	http://www.mlit.go.jp/common/001312591.pdf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 매뉴얼”

<https://www.mlit.go.jp/common/001334734.pdf>



외국인 임대 가능 주택 정보 (일본어)

<https://safetynet-jutaku.mlit.go.jp/guest/index.php>



일상생활 속의 규칙 · 습관



1 생활의 규칙

1-1 쓰레기



(1) 쓰레기 배출시 기본 규칙

쓰레기를 배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종류별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장소와 날짜(요일)를 지킬 것.
- 어디에 어떤 종류의 쓰레기를 배출해야 하는지는 거주지 관할 시구정촌의 규칙에 따를 것.

- ※ 일반적으로 쓰레기는 수거일 아침에 배출합니다.
- ※ 정해진 종류 외의 쓰레기를 버리거나 정해진 장소 외에 쓰레기를 버리면 수거되지 않습니다.
- ※ 살고 있는 시구정촌에 따라서는 시구정촌이 지정한 유료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종류별 쓰레기 분리수거의 예(거주하는 시구정촌의 규칙에 따를 것)



가연쓰레기 (타는 쓰레기)	부엌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종이 쓰레기 등
불연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깨진 그릇, 컵, 금속, 유리 등
자원 쓰레기(재활용)	병, 캔, 페트병, 신문, 책, 플라스틱 용기, 골판지 상자 등
대형 쓰레기(폐기물) <small>처분비용이나 재활용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small>	테이블, 의자 등의 가구, 자전거, 이불 등
가전 쓰레기 <small>재활용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small>	에어컨, TV,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의류 건조기 등

원 포인트:

요리에 사용한 기름

기름은 싱크대 하수구에 버리지 않습니다. 냄비에 키친 타월을 넣고 기름을 흡수하거나 응고제로 기름을 굳힌 다음 버리는 등 살고 있는 시구정촌의 규칙에 따라 버리도록 해 주십시오.

원 포인트:

가전 쓰레기

다음과 같은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하거나 버릴 때에는 그 가전제품의 재활용요금이나 수거운반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에어컨
- TV
- 냉장고, 냉동고
- 세탁기, 의류 건조기



또 버릴 때에는 수거 운반 허가를 받은 업자에게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업자에게 의뢰하면 좋은지 모를 때에는 거주하는 시구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요금 지불처, 처분 제품 수거처

①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구입하는 경우

-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는 점포
점포별로 수거방법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점포에 문의하십시오.

② 교환구입이 아닌 폐기처분일 경우

- 처분할 제품의 구입처
구입한 곳을 모를 때에는 살고 있는 시구정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불법 무단 투기 등(위법적인 쓰레기 배출)

어떤 장소를 막론하고 정해진 장소 외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정해진 장소 외에 쓰레기를 버릴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시구정촌의 정해진 규칙대로 쓰레기를 버려 주십시오.

또한 대다수의 시구정촌에서 빈 캔이나 담배꽁초 등을 길가에 버리는 ‘무단투기’ 금지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벌, 형사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무단투기는 삼가십시오.

1-2

소음

일본 사람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거나 큰 목소리로 떠드는 일은 타인에게 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큰소리로 이야기하는 행위, 파티나 TV, 음악 소리 등은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므로 조심합시다.
- 이른 아침에 세탁기나 청소기를 돌리거나 샤워를 하는 등의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 특히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집합주택에서는 소음을 내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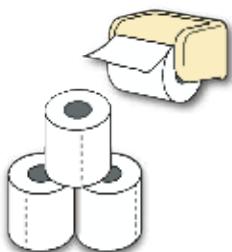


1-3

화장실

일본의 수세식 화장실

- 화장실에서는 반드시 비치된 휴지를 사용하십시오.
- 사용한 휴지는 반드시 변기에 넣은 후 변기물을 내리십시오.
→ 사용한 휴지를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리는 나라가 있는데 일본 수세식 화장실은 비치된 휴지를 사용하면 막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 백화점이나 역 화장실에는 버튼이 많이 있습니다. 물을 내리는 버튼은 **流す (FLUSH)**라고 쓰여 있는 곳이 많습니다.



1-4

휴대전화의 사용



- 통행인과 부딪쳐 부상을 입하거나 본인이 다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보행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자동차나 자전거 운전시에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1-5

전철이나 버스 안

전철이나 버스와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공공예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큰 소리로 이야기 하는 것은 공공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 전철 안이나 버스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것은 일본 공공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 큰 소리로 음악을 듣는 것도 폐가 됩니다. 이어폰 틈새로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차내 혼잡시 배낭을 등에 멘 채 서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부딪쳐 폐가 됩니다.

1-6 온천과 대중 목욕탕

온천이나 대중 목욕탕과 같은 공중 목욕탕은 불특정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므로 다음과 같은 규칙들을 지킵시다.

- 몸을 씻은 후 탕(욕조)에 들어갑니다.
- 탕 안에 수건을 넣지 않습니다.
- 탕 안에서 비누나 샴푸 등으로 몸이나 머리를 씻어서는 안 됩니다.
- 문신(타투)이 있는 사람은 입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1-7 금지를 알리는 표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리는 다양한 표지가 있습니다.



금지 표지가 있을 때에는 금지 사항을 지킵시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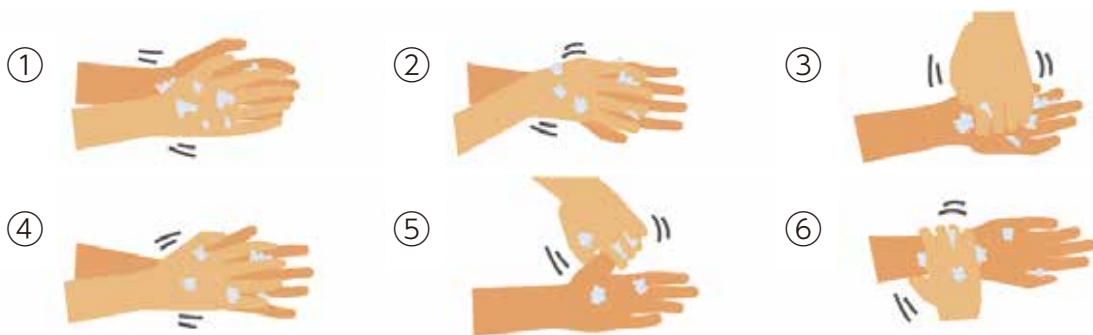
감염증 예방

일본에서는 특히 공기가 건조한 겨울철에 감기나 유행성 독감 등의 감염증이 유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 새로운 바이러스 등에 의해 전에 없던 감염증이 유행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감염증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한 기본적인 예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염증이 유행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래 사항에 주의합시다.

2-1

손 씻기

비누를 사용해서 흐르는 물에 손을 씻는 것은 손가락 등에 붙은 바이러스 등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오거나 조리 전후, 식사 전 등 자주 손을 씻읍시다. 손 씻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흐르는 물로 손을 적신 후 비누질을 해서 손바닥을 잘 비벼 줍니다.
- ② 손등을 펴듯이 비벼 줍니다.
- ③ 손가락 끝과 손톱 사이를 꼼꼼하게 비벼 줍니다.
- ④ 손가락 사이를 씻어 줍니다.
- ⑤ 엄지와 손바닥을 돌려서 씻어 줍니다.
- ⑥ 손목도 잊지 말고 씻어 줍니다.

※ 비누로 씻은 후에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고 깨끗한 수건이나 페이퍼 타월로 잘 닦고 말립니다.

2-2 기침 에티켓

기침 에티켓이란 감염증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마스크나 티슈, 손수건, 소매, 팔꿈치 안쪽 등을 이용해서 입이나 코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올 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합시다.

-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과 코를 가린다.
- 마스크가 없을 때는 티슈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린다.
- 갑작스러울 때는 소매나 팔꿈치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린다.

또, 마스크를 할 때는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스크는 아래의 순서로 착용합시다.

- ① 코와 입의 양쪽 모두 확실하게 가린다
- ② 고무끈을 귀에 건다
- ③ 틈이 없도록 코까지 가린다

2-3 습도

공기가 건조하면 기도 점막의 방어 기능이 저하되어 감염증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특히, 건조하기 쉬운 실내에서는 가습기 등을 사용해서 적절한 습도(50~60%)를 유지하면 효과적입니다.

2-4 휴양과 영양 섭취

몸의 저항력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휴양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하도록 평소부터 노력합시다.

2-5 외출

비말 등으로 감염되는 감염증이 유행할 때는 마스크 착용이 예방에 효과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암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임산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 등은 예방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감염병 유행 시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실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합시다.



3

생활에 필요한 사항

3-1 지역 생활

(1) 커뮤니티 단체(자치회·마을 자치회)

일본에서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주적으로 단체를 결성해,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하여 살기 좋고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마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주된 활동내용

- 지진이나 화재 대비 방재훈련
- 등하교시 어린이 보호관찰 활동
-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복지활동
- 관할 관청 등으로부터의 안내문 전달
- 회원간 친목도모를 위한 축제나 운동회 등의 이벤트 개최 등
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시구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웃간 주민 교류

- 이웃 주민들과 평소 인사를 나누거나 행사에 참여하는 등 지역 주민들과 교류를 해 가면, 주민간 트러블을 예방하고 그 지역에서 생활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같은 정보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 재해 등이 일어났을 때에는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2 방범

도난이나 치한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다음 사항들을 주의합시다.

- 외출시 반드시 집 창문이나 현관문을 잠금시다.
-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를 세워 둘 때에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합시다.
- 가방이나 지갑 등 귀중품을 지니고 다닐 때에는 금방 찾을 수 있도록 지니고 다닙시다.
- 밤에는 어두운 길이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는 가급적 다니지 맙시다.
- 방범에 대해 잘 모르는 사항이나 불안한 점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 등에 상담합시다.

3-3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1) 전기

전기 사용 신청

전기를 사용하려면 다음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① 전기 사용 개시일을 정한다.
- ② 전력회사에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한다.
- ③ 전기 사용 개시일에 차단기 스위치를 올린다.



다만 계약 내용이나 주거설비에 따라서는 전력회사 사람이 방문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전력회사에서 연락이 갑니다.

전기요금 납입방법

- 사용자의 원하는 패턴에 맞는 전기공급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전기 사용패턴에 맞는 계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전기 사용량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지만 '기본요금' 부분은 전기 사용량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전기요금 납입방법은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 편의점이나 은행에서 지로납입, 신용카드 납부 등이 있습니다.
- ※ 사용한 전기량은 매월 1회, 전력회사에서 각 집의 외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의 수치를 원격 또는 현지에서 확인합니다.
- ※ 전기의 사용량과요금은 매월 전력회사가 사용량 고지서(web등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 전기사용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계약 전후에 전력회사가 전달하는 서류(web등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용 계약해지

전기사용 계약을 해지하려면 다음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① 전기 사용 종료일을 정한다.
- ② 전력회사에 인터넷이나 전화로 해약신청을 한다.

전기사용 종료일에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입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 외부에서 전기 계량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회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경우 전력회사에서 연락이 갑니다.

다음 입주자 분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퇴거 시 필요한 계약 해지 절차는 반드시 여유를 두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회사의 영업 행위나 계약 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상담 청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emsc.meti.go.jp/general/consult.html>



※ 전력회사와의 개별 계약 내용이나 청구 내역 등에 대해서는 이 상담창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직접 계약 한 전력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담자와 사업자와의 조정·중재는 하지 않습니다.

(2) 가스

가스의 종류

-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스로는 13A의 도시가스와 LP가스 등 성분이나 연소특성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스기기는 가스의 종류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 ※ 가스 종류에 맞지 않는 가스기기를 사용하면 화재나 불완전연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험합니다. 가스 사용 시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 등을 실시하십시오.
 - 가스 기기 사용 중 가스 냄새가 나면 즉시 가스 사용을 중단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라이터 등 화기 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기 스위치도 만지지 마십시오. 즉시 가스회사에 연락해 주십시오.



가스 사용 신청

가스를 사용하려면 다음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① 가스 사용 개시일을 정한다.
- ② 거주지의 가스회사에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한다.

※ 사용 개시일이 되면 가스회사에서 방문하여 설비점검을 마친 후에 가스 공급을 시작하고 가스기기의 사용 법도 알려줍니다.

가스요금과 납입방법

- 거주지의 가스회사가 가스 사용패턴에 맞춘 가스요금 메뉴를 소개해 줄 것입니다.
 - 가스요금은 기본적으로 고정된 기본요금과 가스 사용에 따라 증감하는 종량요금을 합쳐 매월 산정되어 청구됩니다.
 - 가스요금 납입방법은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 편의점이나 은행에서 지로납입, 신용카드 납부 등이 있습니다.
- ※ 가스 계약 내용은 계약 전후에 가스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류(웹 등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도 있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스사용 계약해지

가스 사용 해지절차.

- ① 가스 사용 종료일을 정한다.
- ② 가스 회사에 인터넷이나 전화로 해약 신청을 한다.

※ 가스회사에서 매달 배달되는 사용량 안내표 (웹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에 적혀있는 '고객번호'를 가스회사에 전달하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가스 사용 종료일에 작업원이 가스 계량기를 정지시킵니다. 작업원이 가스 계량기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가스 사용자나 대리인의 입회가 필요합니다.

다음 입주자 분들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퇴거 시 필요한 계약 해지 절차는 반드시 여유를 두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회사의 영업 행위나 계약 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상담 청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emsc.meti.go.jp/general/consult.html>



※ 가스회사와의 개별 계약 내용이나 청구 내역 등에 대해서는 상담창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직접 계약한 가스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담자와 사업자와의 조정·중재는 하지 않습니다.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제 11 장

제 12 장

(3) 수도

수도 사용

이사 등의 이유로 새로이 수도 사용 계약을 하려면 거주지 관할 시구정촌의 수도 담당부국이나 수도 사업자에게 사전에 수도 사용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시구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 요금

다음은 수도 요금 납입 청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 ① 수도 요금은 거주지 관할 시구정촌의 수도 사업자에 의해 책정됩니다. 수도 사업자는 이용자의 수도 사용량을 계량기로 확인하여 사용량에 따라 이용자에게 요금을 청구합니다.
- ② 수도 요금은 ‘기본요금’과 ‘종량요금’을 합한 금액이 청구됩니다. ‘기본요금’은 수도 계량기의 구경 크기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구경이 클수록 요금이 비싸집니다. 한편, ‘종량요금’은 사용한 수돗물의 양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며, 사용한 수돗물의 양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집니다.
- ③ 수도 요금의 납입 방법은 수도 사업자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좌이체나 은행과 편의점의 지로납입 등의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4

휴대전화



(1) 휴대전화의 계약

-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계약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인확인에는 다음 방법이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현주소가 기재된 공적서류(본인확인서류)를.

- ① 휴대전화 사업자에게 제시한다
- ② 휴대전화 사업자에게 우송 또는 웹사이트로 사본을 제출한다

-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서류를 본인확인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① 체류카드
- ② 운전면허증
- ③ 마이너스카드
- ④ 여권(현주소 기재가 있는 것에 한함)

-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 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 ① 본인확인서류
- ② 친권자 동의서

- 요금납입 수속에는 다음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① 신용카드
- ② 일본 국내은행 현금카드
- ③ 일본 국내은행 예금통장

- 휴대전화 통신사에 따라서는 웹사이트나 점포 등에서 외국어로 대응하는 곳도 있습니다.
-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서비스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과 이용시 주의점

- '휴대전화를 대신 계약해 주겠다'면서 접근하여 당신의 본인확인서류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범죄에 악용하는 악질 브로커가 있습니다.
- 계약을 타인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도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계약한 휴대전화를 통신사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법률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귀국 등으로 인해 휴대전화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면, 통신사에 연락하여 서비스 해지 또는 양도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3-5 은행계좌



(1) 은행계좌 개설하기

- 은행을 방문하면 은행계좌 개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서는 우송이나 스마트 폰앱, 컴퓨터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현금인출카드는 신청 후 자택으로 우송됩니다.
-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참하시고 은행으로 가십시오.

- ① 본인확인서류(예: 체류카드)
- ② 인감(사인으로 가능한 은행도 있습니다)
- ③ 사원증이나 학생증(없으면 회사나 학교에 부탁하여 함께 가십시오)

- 일본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은 당신을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소속한 직장이나 학교 사람)에게 통역을 부탁하십시오.

(2) 주소나 체류기간이 변경되면 즉시 은행에 신고하기

- 주소나 체류기간, 체류자격, 직장 등의 정보가 변경되면 계좌를 만든 은행에 즉시 연락하십시오. 또 당신의 정보에 변경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이 연락할 때도 있습니다.
- 주소나 체류기간, 체류자격, 직업 등이 변경되었을 때 연락하지 않거나 은행이 요구하는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사용하지 않는 은행계좌를 해지하기

- 귀국 등의 이유로 은행계좌를 이용하지 않게 되면 은행계좌를 해지해 주십시오. 은행에서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은행계좌(현금인출카드·통장·로그인 ID 및 비밀번호 등)의 매매, 양도, 양수는 범죄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불법 은행을 사용하지 않는다

- 은행업을 하려면 국가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불법 은행이나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사람 등에게 금전을 지불하고 외국에 송금하는 등을 의뢰할 수 없습니다.
- 불법 은행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당해 업체를 이용하지 말고 직장이나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5) 기타

- 금융청에서는 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예적금 계좌와 송금의 이용에 대해 알 아두면 좋을 사항을 정리한 팜플렛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한 은행 계좌와 송금의 사용법'을 작성(영어, 중국어를 포함한 15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s://www.fsa.go.jp/news/30/20190411/20190411.html> (일본어)



<https://www.fsa.go.jp/news/r1/20191004/20190411.html> (영어)



3-6 우체국

- 일본 우체국과 우체통 마크는 ‘〒’로 블랙 색을 기본으로 합니다.
- 다음은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① 국내외로 편지나 엽서 또는 소포를 부칠 수 있습니다.(※ 1)
- ② 저금(※ 2), 송금, 공공요금 등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③ 생명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1 편지, 엽서 및 소포 발송에 관한 문의에 대해서는 우체국에서는 '고객 서비스 상담센터(영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 우편 웹사이트(영어):

https://www.post.japanpost.jp/index_en.html



※ 2 계좌개설과 관련하여 우체국에서는 '다국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EL: 0570-023170)

대응 언어: 영어·중국어·한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콜센터 안내 웹사이트:

<https://www.post.japanpost.jp/bank/account/multilanguage-callcenter.html>



4

대중교통

4-1

IC카드

(1) 기본적인 기능

교통계의 IC카드는 여러 회사의 전철이나 버스 운임 지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교통계 IC카드의 기능을 설명하겠습니다.

- IC카드에 돈을 미리 입금(충전)해 두면 발매기에서 표를 구입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 역 발권기나 창구, 버스 영업소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현금지불보다 운임이 저렴할 때가 있습니다.

(2) 기명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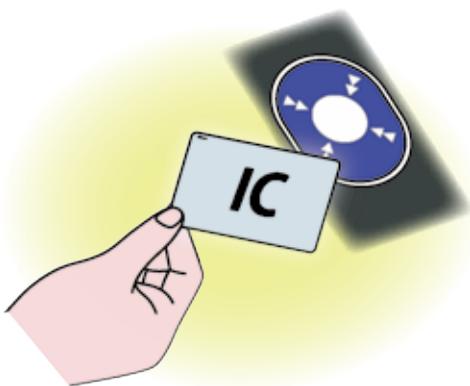
- 사용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재된 카드입니다.
- 이름, 전화번호, 생일, 성별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 카드를 분실해도 재발행 할 수 있습니다.

(3) 무기명카드

- 사용하는 사람의 이름은 쓰여있지 않습니다.
- 카드를 분실해도 재발행이 안 됩니다.

(4) 예치금(보증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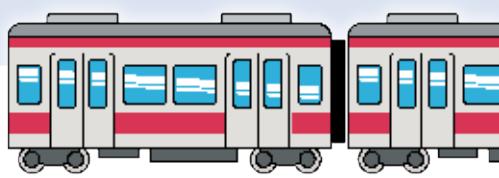
- 카드를 구입할 때에 보통 예치금을 지불합니다.
- IC카드를 반납할 때 돌려받는 돈입니다.



4-2

철도

일본은 철도가 발달되어 출퇴근이나 통학을 비롯한 생활의 이동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 철도의 이용

철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노선도에서 목적지를 확인한다.
- ② 역에서 목적지까지의 승차권을 구입하여 개찰구로 들어간다(교통계 IC카드가 사용 가능할 때는 자동개찰기에 카드를 대면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 ③ 역내의 안내게시판(전광판) 표시를 확인한 후 자신의 행선지 열차를 탈 수 있는 번호의 승강장으로 간다.
- ④ 승강장에서는 흰 선이나 노란 선 안쪽에서 열차를 기다린다.
- ⑤ 목적지에 도착하면 구입한 승차권을 사용하여 개찰구를 나간다(교통계 IC카드를 사용할 경우 자동개찰기에 카드를 대면 충전된 카드금액에서 운임이 지불됩니다).

(2) 승차권의 종류

① 보통승차권	열차를 탈 때 필요한 표.
② 정기권	통근 또는 통학으로 일정 구간을 월 단위로 반복하여 승차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보통승차권으로 같은 구간을 승차하는 경우보다 저렴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등의 기간 설정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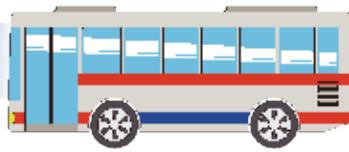
(3) 그 밖의 표

- 특급열차를 탈 경우나 차량의 특별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승차권 외에 다음과 같은 표(요금권)를 구입해야 합니다.

① 특급권	신칸센이나 특급열차를 탈 때에 필요한 표.
② 지정석권	지정석을 이용할 때에 필요한 표. 특급권과 세트로 된 것도 있습니다.
③ 그린권	일반 차량보다 등급이 높은 차량을 이용할 때에 필요한 표.

4-3

버스

**(1) 장거리를 이동하는 버스(장거리버스)**

- 보통은 승차 전에 승차권을 미리 구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살고 있는 지역의 정해진 경로를 이동하는 버스(노선버스)**① 거리와 상관없이 동일한 운임일 때**

- 버스 승차시 운임함에 교통비를 넣는다.
- 교통계 IC카드 등으로 지불할 때에는 운임함에 카드를 댄다.

② 거리에 따라 운임이 달라지는 경우

- 버스 승차시 번호가 찍혀 있는 정리권을 뽑고 내릴 때에 운전수 위쪽 전광판에 표시된 정리권 번호를 확인한 후 그 번호 밑에 적힌 운임을 지불한다.
- 교통계 IC카드 등으로 지불할 때에는 버스 승차시와 하차시 두 번 카드를 댄다.